

연구보고서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 고숙자 · 손창균 · 이진혜
이용갑 · 서남규 · 태윤희 · 김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연구보고서 2008-22-2

발행일	2008년 12월
저자	정영호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8,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ISBN 978-89-8187-521-3 93510

머리말

2007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자료의 생산을 위하여 『한국의료패널』이라는 전국규모의 가구조사를 기획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기초 연구를 수행하여 설문내용과 통계생산방안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의 수정 및 보완과, 본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에 1차년도 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는 입원, 외래, 응급, 치과진료, 한방, 처방약, 일반의약품 등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내용과, 민간의료보험, 재원의 출처(급여-비급여, 공적보험-민간보험 등),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커다란 전기를 맞이하였다. 각 기관이 지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및 본 조사 등의 수행과정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본 보고서에는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및 목적, 추진체계, 수행절차, 진행과정, 패널관리 등과 같은 진행 상황이 설명되어 있고,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등이 논의되어 있어 『한국의료패널』에 대한 이해도와 조사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본 원의 정영호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고숙자 선임연구원, 손창균박사, 이진혜 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용갑박사, 서남규 책

임연구원, 태윤희 주임연구원, 김영숙박사가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진은 조사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행자부, 각 시·도 및 읍·면·동 조사구지역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들의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가들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방대한 조사내용, 빽빽한 조사일정, 악화되고 있는 조사환경, 부족한 지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조사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다음의 조사원들께 특히 감사하고 있다. 김인숙, 김계영, 이인화, 김정숙, 남길녀, 정은선, 김인자, 송춘금, 도인숙, 전명숙, 김길자, 황원경, 송미숙, 김희선, 우명숙, 송현규, 심용숙, 유소영, 최순덕, 김혜숙, 이미선, 고해숙, 김숙경, 김한옥, 김정옥, 유미의, 이정화, 채명숙, 김은자, 김분이, 임유진, 백채우, 신유주, 조영순, 노은영, 김정순, 정종숙, 김춘성, 홍은희, 이은주

한편, 본 과제의 워크숍과 검독과정에서 꼼꼼하게 논평과 제언을 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기초보장연구실장, 최정수 박사, 그리고 워크숍에 참여해 조언을 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영 보건의료연구실장과 문상호 성균관대학교 교수께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료패널』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준 원광대학교의 윤치근교수께 연구진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하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조사 개요	9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12
제3절 표본설계	15
제2장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설계	25
제1절 설문지 설계	25
제2절 건강가계부 설계	34
제3장 예비조사 및 가구유치조사	38
제1절 예비조사	38
제2절 가구유치조사	40
제4장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52
제1절 인지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한 개선사항	52
제2절 2008년 한국의료패널 실사 과정	54
제3절 조사 완료율 및 자료입력	66

제5장 한국의료패널 가구 관리	77
제1절 패널가구 관리의 중요성	77
제2절 패널 관리 및 운영	78
제6장 한국의료패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86
제1절 한국의료패널 향후 계획	86
제2절 기대효과	89
참고문헌	92
부 록	97

표 목차

〈표 1-1〉 표본규모	17
〈표 1-2〉 건강가계부 유치를 위한 표본추출방법	18
〈표 1-3〉 지역별 조사구 분포	19
〈표 1-4〉 지역별 인구분포	20
〈표 1-5〉 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결과	21
〈표 2-1〉 2008년 상반기 조사 구성	32
〈표 2-2〉 건강가계부 수정 이후 장단점 비교	37
〈표 3-1〉 조사불가 지역 사유	43
〈표 3-2〉 패널가구로 유치된 조사지역 및 주택유형별 분포	51
〈표 4-1〉 종합적 검토사항 및 개선사항	52
〈표 4-2〉 문항별 검토사항 및 개선사항	53
〈표 4-3〉 본조사 일정 및 대상가구 수	55
〈표 4-4〉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의 지역별 완료율	67
〈표 4-5〉 지역별 조사불참 사유별 빈도	68
〈표 4-6〉 문항별 조사자료 점검내용	69
〈표 4-7〉 코드북 예시	74

그림 목차

[그림 1-1]	조사추진체계	13
[그림 1-2]	조사수행절차: 2007~2008년	14
[그림 2-1]	한국의료패널의 개념적 틀	26
[그림 2-2]	기본(핵심) 조사의 분석틀	28
[그림 2-3]	가구 유치를 위한 설문 내용	30
[그림 2-4]	2008년 상반기 조사 내용 흐름도	33
[그림 2-5]	예비조사용 건강가계부	35
[그림 2-6]	본 조사용 건강가계부	37
[그림 3-1]	예비조사 진행 과정	39
[그림 3-2]	가구유치조사 진행절차	45
[그림 3-3]	요도 및 가구명부	47
[그림 3-4]	부재 중 스티커	48
[그림 3-5]	게시판 부착용 포스터	49
[그림 4-1]	실사과정 개요	55
[그림 4-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원교육 및 모의조사 일정표	58
[그림 4-3]	패널가구 관리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	60
[그림 4-4]	인포시트 예시	62
[그림 4-5]	방문 안내 엽서	63
[그림 4-6]	조사원 명함 예시	64
[그림 4-7]	원시데이터 자료의 구성	75
[그림 4-8]	원시데이터 입력 구조	76
[그림 5-1]	소식지: 가을호	82
[그림 5-2]	감사의 편지	83

ABSTRACT

A Report on the Procedure of Korea Health Panel Survey

The Korea Healthcare Panel (KHP) is an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that examine dynamic influences on the use and expenditures of healthcare services. The KHP is conducted by consortium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NHIC).

The objectives of KHP are to:

- provide decision makers with timely national estimates of healthcare utilisations and expenditures.
- collect information about factors influencing health outcomes and healthcare use in order to identify, model, and forecast the impact of changes in policy

This survey covered a broad range of topics including healthcare expenditures, private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costs, source of payment, health status, use of prescribed medicines, employment, income, housing, and individual and household demographics. Through pre-contact interview, respondents were required to record the health events diary provided.

7,000~8,000 households were designed by stratified sampling and selected from 2005 Census sample frame, which is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opulation. The response rate of the KHP was 86.2% (i.e 7,768 households).

요 약

1. 조사개요

□ 한국의료패널의 필요성

- 최근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의 보장성 강화, 다양한 진료행위 및 의료기술 발전, 고령화,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보건의료부문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 보건의료 통계생산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 특히, 본인부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실태, 의약품 및 기타 건강관련 지출 등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생산이 미흡한 실정임.

□ 한국의료패널의 목적

- 첫째, 각 가구에서의 의료비 지출 규모 파악
- 둘째, 가구원별 보유질환 및 본인부담액 규모 측정
- 셋째, 민간의료보험 가입·해약 추이 및 지출규모 분석
- 넷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특성별 이용행태 분석
- 다섯째, 본인부담 의약품비 지출 및 장기복용 의약품 복용행태 분석
- 여섯째, 건강수준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 일곱째, 개인 및 환경적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결정요인 분석
- 여덟째,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보건복지관련 지표 생산
- 아홉째, 국제비교 가능한 의료패널데이터 생산

4 2008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진행 보고서

□ 한국의료패널의 추진체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조사진행 및 결과분석

□ 한국의료패널 조사수행 절차

- 표본설계 ⇒ 예비조사 ⇒ 가구유치조사 ⇒ 2008년 상반기조사 ⇒ 2008년 하반기조사

□ 표본추출

-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자료
- 층화변수: 지역(16개 시도), 동부 및 읍면부(2개)
- 표본추출방식: 확률비례 2단계 층화집락추출
- 샘플수: 7,000~8,000가구

2.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설계

□ 주요 조사 내용

가구 단위	가구원 단위	민간의료보험 (가구+가구원 단위)
· 가구원수/세대구성 · 기초보장수급형태 · 주거형태/주택소유여부/자산 규모 · 재산소득, 연금소득, 정부보조금/민간보조금 등 · 생활비지출 · 일반의약품 월평균 구매액 · 보건의료제품의 월평균 구매액	· 성별/생년월일/혼인상태/교육수준 · 가구주와의 관계 · 장애유무 · 의료보장형태 · 경제활동 및 근로소득/부업소득 · 보유 만성질환 · 만성질환에 따른 의약품복용행태 · 3개월이상 의약품 복용 · 응급서비스 이용 및 지출, 재원 · 입원서비스 이용 및 지출, 재원 · 외래서비스 이용 및 지출, 재원 · 임신 및 출산	·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지출 규모 ·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및 수령 규모 · 가입 또는 해약사유 · 가입거부 사유 등

3. 한국의료패널의 예비조사 및 가구유치조사

□ 예비조사 일정 및 조사규모

1차 예비조사	2차 예비조사
【첫방문】 2007.6.14~2007.7.15 서울, 경기, 충청 398가구	【첫방문】 2007.7.18~2007.9.21 강원, 제주 제외한 전국 866가구
↓ 3~4개월후	↓ 3~4개월후
【재방문】 2007.10.2~2007.10.19 259가구	【재방문】 2007.10.29~2007.12.30 722가구

□ 가구유치조사 일정 및 조사규모

- 조사일정: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8년 3월 17일까지
- 조사규모: 약 8,000가구를 대상
- 조사내용: 건강가계부 작성요령 설명, 가구원 일반사항, 소득수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기적 방문 등

4.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 조사진행

□ 조사일정 및 조사지역

- 설문지 인지조사: 2008년 4월 4일 ~ 2008년 4월 5일
- 조사원 교육 및 훈련: 2008년 4월 7일 ~ 2008년 4월 10일
- 실사기간: 2008년 4월 16일 ~ 2008년 10월 15일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면접방식 + 기장방식
- 조사대상지역: 제주도 포함한 전국의 389조사구 9,015가구

□ 조사지역별 완료율

지 역	조사구수	대상가구	조사완료	완료율
서울	68	1,520	1,267	83.4
부산	32	701	616	87.9
대구	24	602	515	85.5
인천	23	561	468	83.4
광주	10	238	203	85.3
대전	14	295	254	86.1
울산	10	226	187	82.7
경기	80	1,924	1,657	86.1
강원	11	275	250	90.9
충북	12	299	260	87.0
충남	15	344	294	85.5
전북	17	375	323	86.1
전남	18	409	380	92.9
경북	20	456	401	87.9
경남	27	582	503	86.4
제주	8	208	190	91.3
전국	389	9,015	7,768	86.2

5. 한국의료패널 가구관리

□ 패널가구의 관리

- 080 수신자부담 전화 개설
- 소식지 배포
- 명절답례품 전달
- 조사원별 감사 메시지 송부 및 안부 전화

□ 향후 패널관리 방안

- 홈페이지 개설
- 축하카드 발송
- 이탈예상가구에 대한 참여 유도

- 이사가구 및 분가가구 특별 관리

6.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

-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 및 신속한 결과 제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급여 자료를 연계, 사용자친화적인 자료구성 및 DB 공개, 가중치 및 imputation 분석, 한국의료패널 리뷰(review) 또는 브리프(brief)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분기별 또는 반기별) 발간
-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한국의료패널 연구진,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 응답가구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 학문적 수요, 정책현안이나 이슈 등에 대한 부가설문을 수행
- 결과보고서 및 User's guide, technical report 등의 발간
- 학문적·정책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관련연구의 활성화를 제고
- 설문지의 영문작업, 영문 code book 및 영문 user's guide를 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국제비교 연구 수행
- 추가표본 및 CAPI 개발

□ 기대효과

- 특정인구집단별(연령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등), 질환별, 자원별(공적보험, 민간보험 등)로 외래, 입원, 응급, 의약품 등에 관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생산
- 의료비 재원조달의 변화와 재원조달의 특성(공적보험, 민간보험 등)에 따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행

전후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

- 의료이용과 비용에 대한 급여데이터와 비급여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설정하거나 적정보험료 수준을 검토할 때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
- 의약품 사용 및 비용에 대한 자료로서 의약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비급여의약품 비용, 추정 의약품 사용 현황, 의약품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과 의약품의 급여범위 변동, 의약품 가격변화 등과 같은 동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관련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해지, 보험료 및 보험금 등에 관한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자료가 생상
- 의료패널 자료의 구축을 통하여 빈곤이나 상대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기여
- 한국의료패널은 다빈도 상병에서 의료이용패턴 및 의료제공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
- 정책현안에 대한 부가설문을 시의적절하게 개발하여 정책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제1장 조사 개요

제1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의 보장성 강화, 다양한 진료행위 및 의료기술 발전, 고령화,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으로 보건의료부문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의료비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¹⁾ 이에 보건재정에 대한 부담을 적정화하고 보건의료부문의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제고할 수 있는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배분의 정책적 판단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 통계생산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이용실태와 의료비 지출수준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생산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본인부담에 관한 기초 자료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의료의 보장성 및 의료비 적정성 등을 통한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석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실태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의 지출로 인해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의약품 및 기타 건강관련 지출에 관한 데이터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²⁾.

1)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의료비는 2000년 약 59만원(GDP대비 4.8%)에서 2004년 90만원(GDP대비 5.6%)으로 증가하였으며(OECD Health Data 2006), 특히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996년 5.8%(259만명)에서 2006년 8.6%(407만명)로 2.8%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노인진료비점유율은 96년 12.9%(6,716억원)에서 2006년 25.9%(5조 5,989억원)로 2배정도 늘어났고, 액수로는 약 8.3배 증가하였음.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더불어 보건의료부문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행태와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 등에 관한 복잡하고 다양한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비 지출 규모만을 파악하는데 머무를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한계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에는 다양한 복잡성이 존재하므로, 보건의료비 지출에 국한하여 건강문제(health problem)를 살펴볼 경우에는 단편적인 정책적 과제만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을 결정하는 거시적 요인과 더불어 미시적 요인으로 인한 인과경로를 포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인에 대해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추적 조사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부의 정책이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비급여부분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통계와 정책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생산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한 의료비 지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 자료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2) 미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이하 MEP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MEPS는 연구자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2.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목적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의료이용행태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들의 건강 수준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물리·환경적 요인의 상호과정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며 동태적인 순환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분석하고 다학제적이며 보건의료정책의 과학적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데이터 생산이 미흡한 영역인 비급여 부분, 의약품 지출, 민간의료보험지출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목적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가구에서의 의료비 지출 규모 파악
- 둘째, 가구원별 보유질환 및 본인부담액 규모 측정
- 셋째, 민간의료보험 가입·해약 추이 및 지출규모 분석
- 넷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특성별 이용행태 분석
- 다섯째, 본인부담 의약품비 지출 및 장기복용 의약품 복용행태 분석
- 여섯째, 건강수준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 일곱째, 개인 및 환경적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결정요인 분석
- 여덟째,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한 보건복지관련 지표 생산
- 아홉째, 국제비교 가능한 의료패널데이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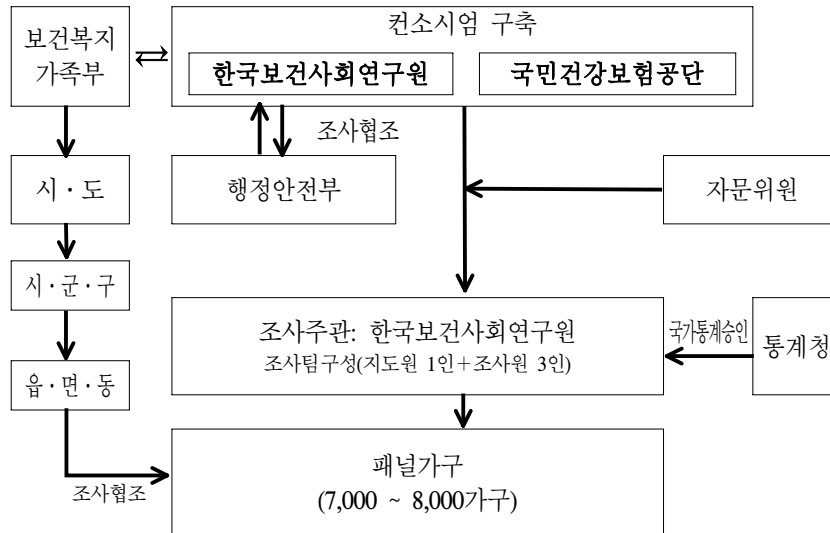
제2절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추진체계 및 수행절차

가. 조사 추진체계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주관하였다. 본 조사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정부승인지정통계조사(승인번호 제 33110호)이며, 조사 수행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기관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해당 시·도에, 그리고 공문을 받은 시·도는 다시 해당 시·군·구에,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 전송하였다. 이에 조사대상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관련 협조를 얻어 해당조사구에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한편, 설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조사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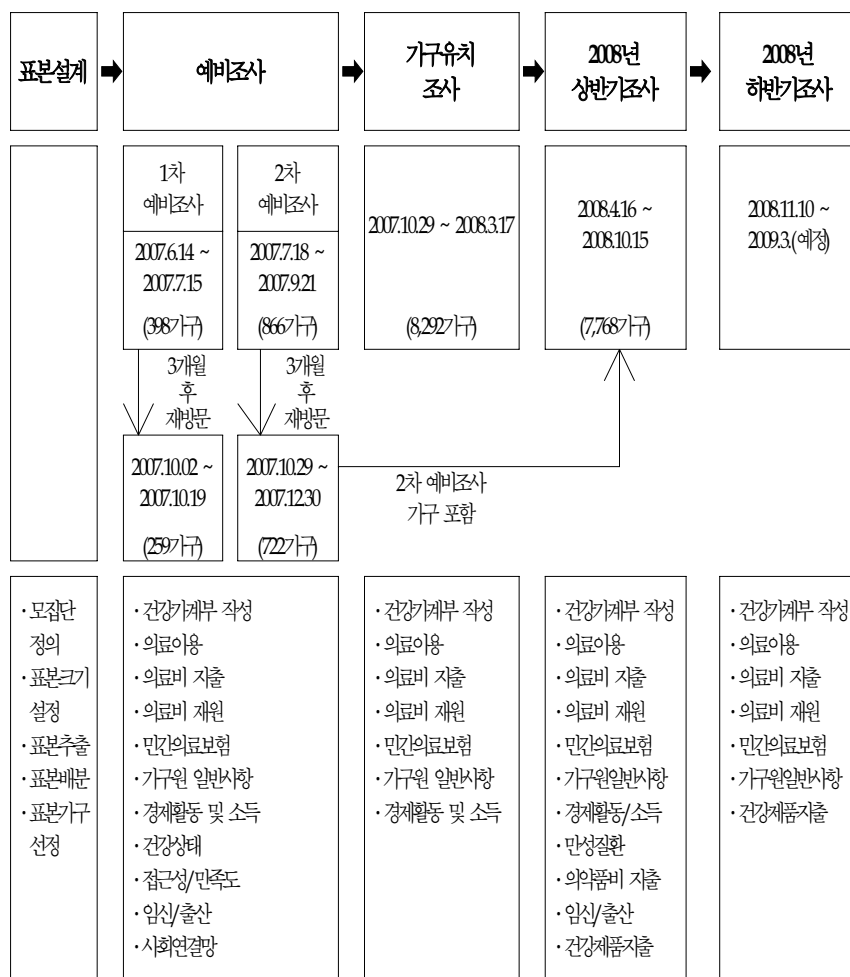
2. 조사 수행절차

한국의료패널의 1차년도 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표본설계를 하고, 두 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에서는 467가구를 대상으로 건강가계부를 전달하고 3개월 후에 다시 방문하여 건강가계부 작성과 관련된 설문을 하였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의료이용, 의료비 지출, 경제활동, 소득, 건강상태, 접근성 및 만족도 등에 대하여 설문하였고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8년 상반기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 시행에 앞서 가구유치조사를 통하여 응답가구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내역을 기록하도록 해서 본 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고오류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였다. 그리고 2008년 조사는 크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약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에 걸쳐 각 가구를 재방

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 내용 및 조사 일정, 대상가구 수 등에 전체적 수행절차를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조사수행절차: 2007~2008년



주: 괄호 안 가구 수는 응답가구 기준임.

제3절 표본설계

1. 모집단

- 목표모집단 -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한다.
- 조사모집단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중 섬조사구, 특수시설, 기숙시설을 제외한 조사구로 한다.

2.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

조사목적상 전국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자료를 추출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모집단 분석에 이용한 변수는 거주유형, 성별, 주택소유형태 등의 분포를 파악하고, 조사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조사구 유형 중에서 섬, 특수시설, 기숙시설 등의 특별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3. 표본의 규모

표본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주어진 예산에서 조사실현 가능한 표본규모를 결정해야한다. 가구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추출틀로 하여 표본조사구를 선정한 다음 해당 표본조사구 내의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 하에서 적절한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본조사구 규모를 결정해야한다. 둘째, 목표오차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의료패널의 경우 각 시도별 추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목표오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표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국의 대규모 조사일 경우 조사일정과 조사원 부담을 감안한 표

본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조사 일정이 길어질수록 시차에 따른 추정치의 오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조사원 부담의 증가로 인한 비표본 오차가 증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일정에 따른 적절한 표본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조사현장에서의 다양한 오류의 원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적의 표본규모를 결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란 매우 힘든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추계가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오차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본규모를 정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의 본 표본 규모는 전국 약 8,000가구를 표본규모로 산정하였다. 이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표본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표본가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 단위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로서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를 약 4.5%정도로 할 경우 16개 시도별 평균 표본크기는 약 494가구가 된다.

$$\text{지역별 평균 표본가구수: } n_h = \frac{1}{0.045^2} = 494$$

$$\text{전체 표본가구: } n = \sum_{h=1}^{16} n_h \doteq 8000$$

〈표 1-1〉 표본규모

조사구분	전국포괄성	표본수	조사구수	조사구당 표본가구수
예비조사	15개 특광역시/도 (제주도 제외)	약 700가구	57 조사구*	12~15가구
본조사를 위한 건강가계부 유치	16개 특광역시/도 (제주도 포함)	약 8,000가구	332 조사구	23~25가구
본조사	16개 특광역시/도 (제주도 포함)	약 9,000가구†	389 조사구	—

주: * 예비조사 조사구 59개 중에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2개 조사구를 제외한 57
조사구를 본조사 표본에 포함하였음

† 본조사에서는 건강가계부 유치가구와 예비조사 가구를 모두 포함하였음.

4. 표본의 대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확정된 조사구를 기반으로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조사시점에서 신도시 개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의한 조사구 변동은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성질이 유사한 해당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예비조사구를 표본추출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5. 표본추출

가.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한국의료패널의 표본설계는 전국 8,000가구에 대한 표본설계를 통해 16개 광역시도별로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독립적인 추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대한 추계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1-2〉 건강가계부 유치를 위한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단계	층화 변수	표본추출방식
건강가계부 유치를 위한 표본추출	지역(16개 시도), 동부 및 읍면부(2개)	확률비례2단계 층화집락추출

본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선정된 표본가구(722가구)와 건강가계부를 각 가구에 전달하기 위해 선정한 8,292가구를 포함하여 총 9,015가구가 선정되었다.

나. 모집단 분석

모집단은 크게 조사모집단과 목표모집단으로 구분된다. 조사모집단이란 실제 조사대상이 되는 단위들의 전체 집합을 의미하며, 목표모집단이란 추정의 대상이 되는 단위들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표본추출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조사가능한 단위들의 집합인 조사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즉, 조사구 특성에 따라 섬, 특수시설, 기숙시설 조사구는 표본추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만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조사자료로부터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237,165개 전체 조사구 중 일반 조사구는 141,619개이며, 아파트조사구는 95,546개로 파악되었다³⁾.

3) 이때, 각종 조사로 인한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게서 수행하는 조사구가 중첩되지 않도록 일부 조사구는 제외하였음.

〈표 1-3〉 지역별 조사구 분포

(단위: 개)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237,165	141,619	95,546	190,895	106,832	84,063	46,270	34,787	11,483
서울	49,330	32,175	17,155	49,330	32,175	17,155	-	-	-
부산	18,122	10,788	7,334	17,718	10,530	7,188	404	258	146
대구	12,098	7,047	5,051	11,386	6,702	4,684	712	345	367
인천	12,683	7,054	5,629	12,422	6,820	5,602	261	234	27
광주	6,777	2,976	3,801	6,777	2,976	3,801	-	-	-
대전	7,251	3,804	3,447	7,251	3,804	3,447	-	-	-
울산	5,039	2,689	2,350	4,238	2,275	1,963	801	414	387
경기	49,712	26,252	23,460	40,714	20,472	20,242	8,998	5,780	3,218
강원	7,853	4,843	3,010	4,780	2,401	2,379	3,073	2,442	631
충북	7,483	4,446	3,037	4,542	2,178	2,364	2,941	2,268	673
충남	9,848	6,490	3,358	3,494	1,628	1,866	6,354	4,862	1,492
전북	9,254	5,529	3,725	6,192	2,743	3,449	3,062	2,786	276
전남	9,221	6,285	2,936	3,994	1,816	2,178	5,227	4,469	758
경북	13,995	9,506	4,489	6,969	3,840	3,129	7,026	5,666	1,360
경남	15,824	9,542	6,282	9,164	5,023	4,141	6,660	4,519	2,141
제주	2,675	2,193	482	1,924	1,449	475	751	744	7

지역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에는 전체인구의 약 82.5%가 거주하며, 읍면부에는 18.5%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여성의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읍면부의 경우 역시 여성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울산의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읍면부지역의 경우 울산과 경기지역에서 남성의 주거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4 참조).

〈표 1-4〉 지역별 인구분포

(단위: 명)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계	동부	읍면부	남	여	남	여
전국	41,196,785	33,969,281	7,227,504	16,703,270	17,266,011	3,533,286	3,694,218
서울	8,667,100	8,667,100	-	4,227,673	4,439,427	-	-
부산	3,106,319	3,042,376	63,943	1,479,160	1,563,216	31,087	32,856
대구	2,179,663	2,048,122	131,541	1,006,178	1,041,944	65,690	65,851
인천	2,222,205	2,178,971	43,234	1,076,665	1,102,306	20,701	22,533
광주	1,241,582	1,241,582	-	605,532	636,050	-	-
대전	1,269,860	1,269,860	-	625,462	644,398	-	-
울산	925,705	781,398	144,307	395,731	385,667	72,427	71,880
경기	9,167,570	7,619,860	1,547,710	3,769,416	3,850,444	774,226	773,484
강원	1,253,121	783,756	469,365	385,688	398,068	232,181	237,184
충북	1,253,728	797,778	455,950	393,511	404,267	225,801	230,149
충남	1,604,522	621,938	982,584	308,169	313,769	488,690	493,894
전북	1,519,141	1,087,347	431,794	530,590	556,757	203,326	228,468
전남	1,463,707	693,958	769,749	343,325	350,633	362,520	407,229
경북	2,209,958	1,175,917	1,034,041	584,795	591,122	498,627	535,414
경남	2,647,449	1,616,118	1,031,331	803,056	813,062	498,697	532,634
제주	465,155	343,200	121,955	168,319	174,881	59,313	62,642

6. 표본배분

한국의료패널의 표본가구 선정은 1단계로 표본조사구(집락)를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조사구 내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즉, 지역별, 동부 읍면부별 조사구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 계통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다음으로 표본조사구 내의 표본가구를 표본조사구의 가구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통추출하는 방식이다. 만일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무응답 할 경우 해당 표본가구의 위 또는 아래에 기재된 가구로 조사하도록 한다.

한편 광주, 대전, 울산,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배분된 조사구 수를 일률적으로 10개가 되도록 배분하여 지역별 통계치가 산출되도록 하였다. 전체 조사구 수는 약 350개 조사구로서 일반 조사구가 207개, 아파트 조사구가 143개로 배분되었으며 이를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보면 동부는 282개 조사구, 읍면부는 68개 조사구가 배분되었다(표 1-5 참조).

〈표 1-5〉 지역별 표본조사구 배분결과

(단위:개)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350	207	143	282	156	126	68	52	16
서울	62	41	21	62	41	21	-	-	-
부산	26	15	11	26	15	11	-	-	-
대구	18	11	7	17	11	6	1	0	1
인천	18	10	8	18	10	8	-	-	-
광주	10	4	6	10	4	6	-	-	-
대전	12	6	6	12	6	6	-	-	-
울산	10	4	6	8	3	5	2	1	1
경기	73	38	35	61	30	31	12	8	4
강원	12	7	5	8	4	4	4	3	1
충북	12	7	5	8	4	4	4	3	1
충남	15	10	5	6	3	3	9	7	2
전북	14	8	6	10	4	6	4	4	0
전남	14	10	4	6	3	3	8	7	1
경북	21	14	7	10	6	4	11	9	2
경남	23	14	9	13	7	6	10	7	3
제주	10	8	2	7	5	2	3	3	0

7. 추정

전국 평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추정 및 각 지역별 주택 유형별, 주택소유 형태별, 가구규모별 추정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르는 분산 추정을 위한 계산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국 단위의 추정

의료비 지출 등의 주요변수에 대한 전국 단위의 추정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본추출과정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bar{y} = \frac{\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quad (1)$$

여기서 h 는 전국 16개 층으로서 지역별 조사구 유형을 나타낸다. $h = 1, 2, \dots, 16$. i 는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i = 1, 2, \dots, n_h$ 이다. 그리고 j 는 표본 조사구 내의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로서 $j = 1, \dots, m_{hi}$ 이다. w_{hij} 는 h 지역의 i 번째 표본조사구내의 j 번째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이다. 또한 $W_{hi} = \sum_j^{m_{hi}} w_{hij}$ 으로 h 층의 i 번째 조사구 내의 가구들의 가중치 합을 나타낸다.

표본평균 $\bar{y}$ 의 분산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hat{v}(\bar{y}) = \frac{\sum_h^L \frac{n_h}{(n_h - 1)} \sum_{i=1}^{n_h} \left[W_{hi}(\bar{y}_{hi} - \bar{y}) - \frac{1}{n_h} \sum_{s=1}^{n_h} W_{hs}(\bar{y}_{hs} - \bar{y}) \right]^2}{\left(\sum_h^L \sum_i^{n_h} W_{hi} \right)^2} \quad (2)$$

여기서 $\bar{y}_{hi} = \frac{\sum_j^{m_{hi}} w_{hij} y_{hij}}{\sum_j^{m_{hi}} w_{hij}}$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의 가구들의 의료

비지출 등의 주요변수들의 평균이다.

나. 지역별(또는 층별) 추정

만일 층별 또는 부차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를 얻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정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관심대상이 되는 h 번째 부차집단의 평균의 추정치는

$$\bar{y}_h = \frac{\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sum_i^{n_h} \sum_j^{m_{hi}} w_{hij}} \quad (3)$$

으로서 만일 h 층의 i 번째 표본조사구의 j 번째 가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면, $y_{hij}=1$, 그 외에는 0이라고 할 때, 모비율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층별 표본평균에 대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at{v}(\bar{y}_h) = \frac{\frac{n_h}{(n_h-1)} \sum_{i=1}^{n_h} \left[W_{hi} (\bar{y}_{hi} - \bar{y}_h) - \frac{1}{n_h} \sum_{s=1}^{n_h} W_{hs} (\bar{y}_{hs} - \bar{y}_h) \right]^2}{\left(\sum_i^{n_h} W_{hi} \right)^2} \quad (4)$$

다. 가구유형별/점유형태별 추정량

특정 층에 속한 의료비 평균을 추정하고자 할 때에는 식(3)을 변형한 다음과 같은 추정산식을 이용하면 된다.

$$\bar{y}_G = \frac{\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I[hij \in G]}{\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I[hij \in G]} \quad (5)$$

여기서 G 는 1인 가구, 2인 가구, 특정계층가구 등이 될 수 있으며, 또한 $I[hij \in G]$ 는 h 층의 i 번째 조사구내의 j 번째 가구가 어떤 특성을 가지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 지시함수이다.

식(6)에 대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hat{v}(\bar{y}_G) = \frac{\sum_h^L \frac{n_h}{(n_h - 1)} \sum_{i=1}^{n_h} \left[W_{hiG} (\bar{y}_{hiG} - \bar{y}_G) - \frac{1}{n_h} \sum_{s=1}^{n_h} W_{hsG} (\bar{y}_{hsG} - \bar{y}_G) \right]^2}{\left(\sum_h^L \sum_i^{n_h} W_{hiG} \right)^2} \quad (6)$$

여기서 가중치의 합은 $W_{hiG} = \sum_j^{m_{hi}} w_{hij} I[hij \in G]$ 이고, 그룹별 평균은 다음과 같다.

$$\bar{y}_{hiG} = \frac{\sum_j^{m_{hi}} w_{hij} y_{hij} I[hij \in G]}{\sum_j^{m_{hi}} w_{hij} I[hij \in G]} \quad (7)$$

제2장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설계

제1절 설문지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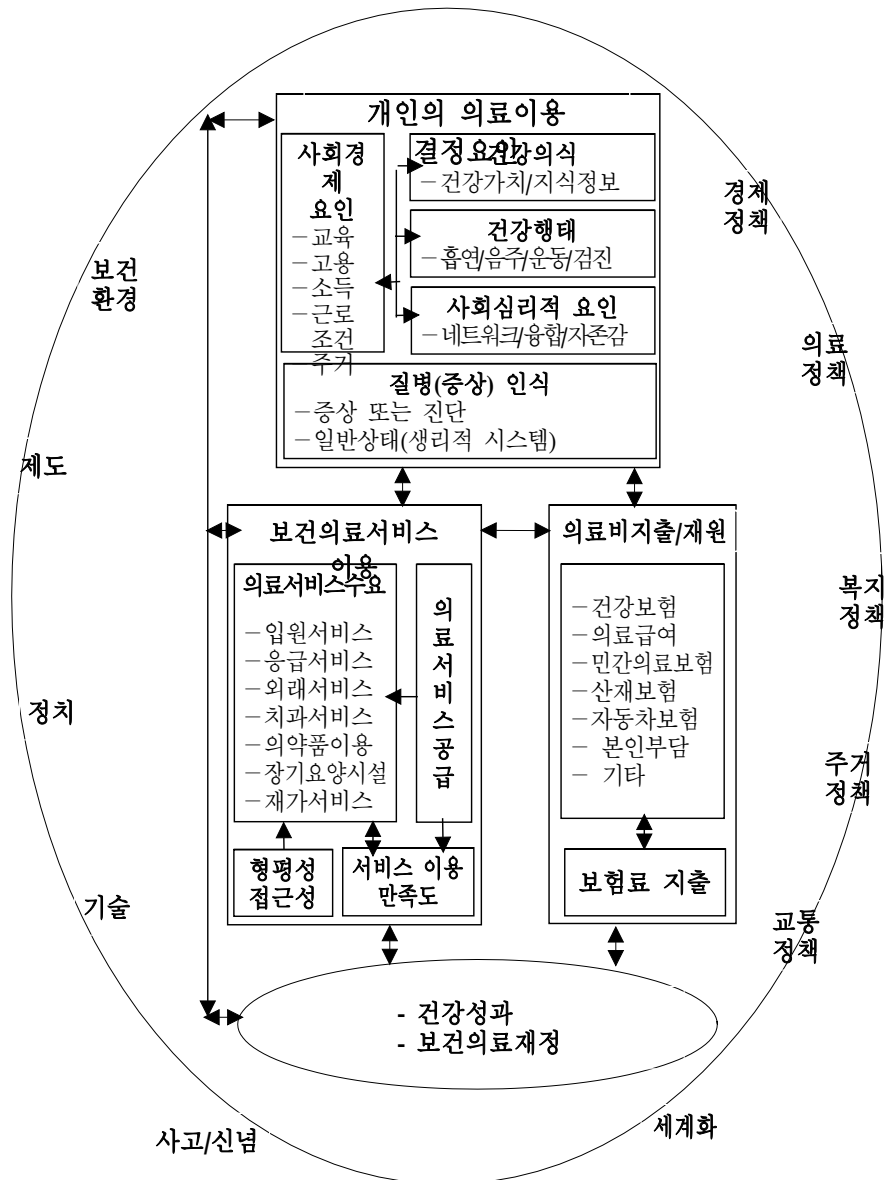
1. 설문지 설계의 기본 방향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건강수준에서 의료비 지출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포괄하는 조사의 개념적 틀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⁴⁾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건강수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경제·복지·보건·주거·교통 등에 관한 정부정책과, 현재의 의료기술, 보건환경, 사회규범 및 제도와 더불어 세계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인구학적 특성, 건강의식 및 행태, 사회·심리적 요인,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의료 요구(needs)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 또는 만족도에 따라 서비스 수요행태가 변하게 된다. 물론 이 때에, 개인들의 의료서비스 수요 이후에 의료비가 지출되며 어떤 재원을 통하여 이를 충당하게 되는지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부터 건강수준이 호전 또는 악화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다시 거시적 요인 또는 미시적 요인에 피드백(feedback)을 주는 동태적 과정들이 발생하게 된다.

4)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영호 외(2007), “한국의료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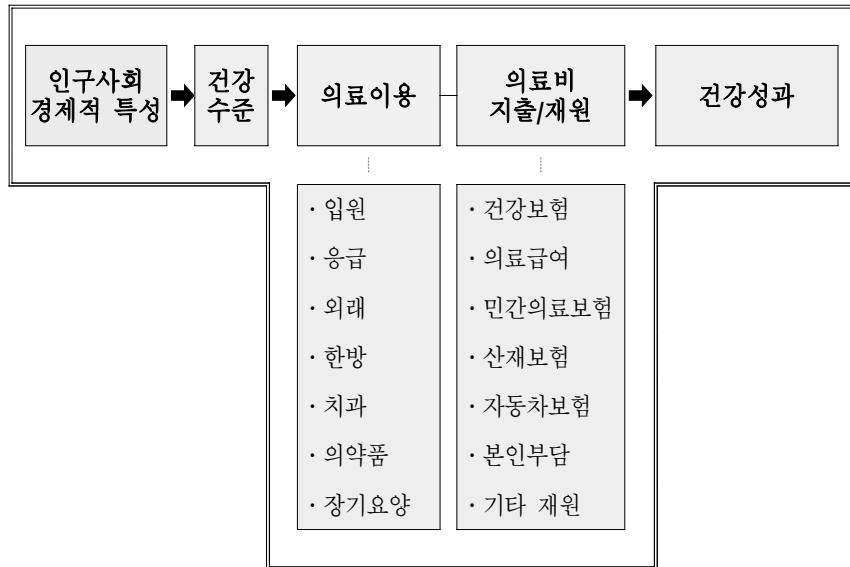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의료패널의 개념적 틀



한국의료패널의 개념적 틀을 토대로 패널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볼 조사주제를 개괄적으로 열거하면 개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및 건강형평성, 건강의식 및 행태, 건강수준 및 활동제한, 사회자본 및 사회적 네트워크, 주거환경,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만족도, 의료비 지출수준, 의료비 재원, 민간의료보험 지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내용도 모두 문항으로 담기에는 조사응답자의 부담, 조사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문항의 성격에 따라 매년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동태적인 의미를 그다지 지니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 매년 실시해야 하는 기본(핵심)조사 영역과 일정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하는 부가조사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반복 횟수를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의 기본조사내용의 모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건강의식에서 의료비 지출로 연결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수평적 구조, 둘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재원에 있어서는 심층적인 내용을 담는 수직적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다음의 [그림 2-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T자형” 모형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은 주제나 영역도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부가설문개발을 통하여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2-2] 기본(핵심) 조사의 분석틀



2. 본조사 이전의 가구 유치를 위한 설문지

한국의료패널 조사에서는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 응답자들이 의료이용에 관한 기억수준을 조사하였는데⁵⁾, 입원 및 응급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을 회귀하여 기억할 수 있었으나, 외래의 경우에는 한달 이전의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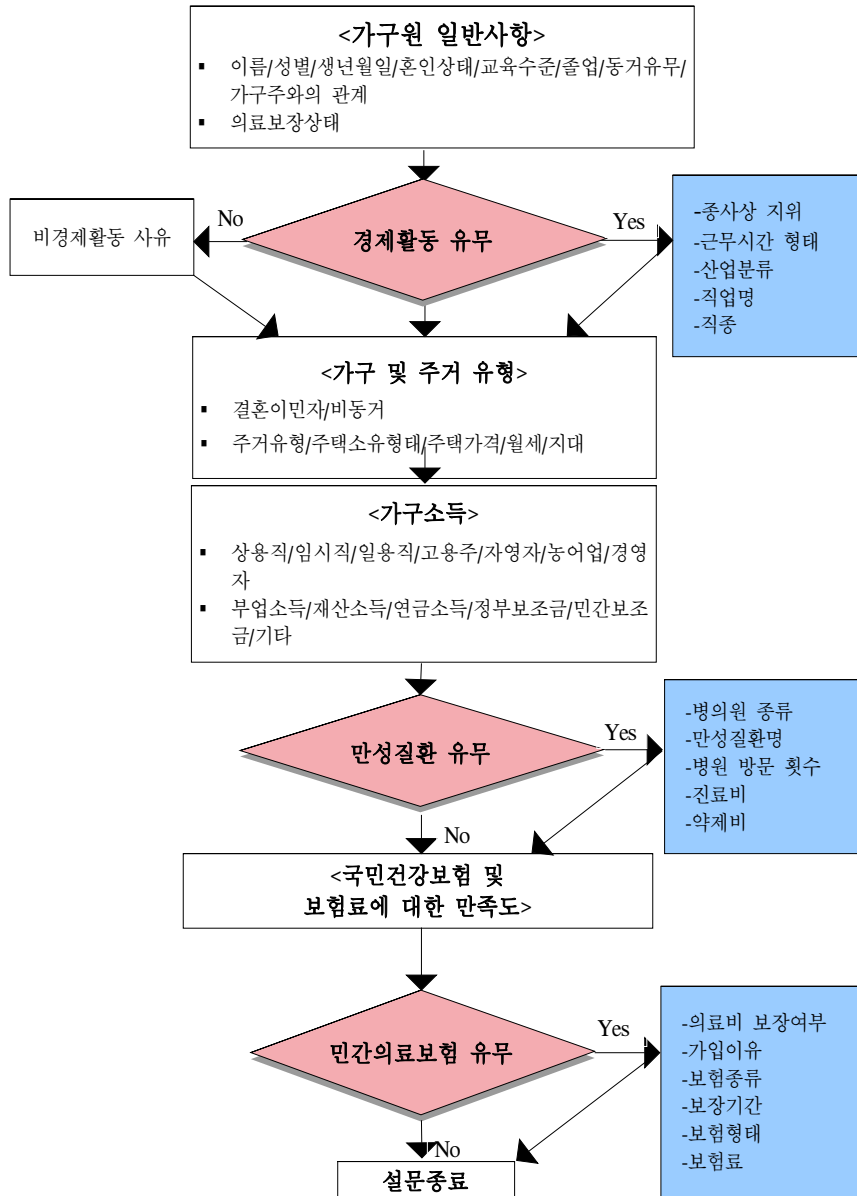
이에 의료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응답자에게 기록하도록 하여 응답자의 기억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패널가구를 사전에 접촉하여 조사의 취지를 알리고 건강가계부 작성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본조사 이전에 가구유치를 위한 조사단계를 기획하였다. 이때에는 다음의 [그림

5) 정영호 외,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3]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의료이용을 질문하기 보다는 조사에 참여하는 가구들의 일반적인 사항들과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이유 등과 같이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 내에서 실제 패널조사에 참여하게 될 가구를 확보하여 한국의료패널의 목적을 알리고 의료이용과 연관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건강가계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본 조사를 실시할 때에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보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통계결과의 품질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설문은 응답자들의 응답거부 또는 누락 수준이 심할 것으로 여겨, 다음 조사에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민간보험 약정서를 확인하는 등의 사전 준비를 부탁하는 데에 가구유치 조사의 주 목적을 두었다.

[그림 2-3] 가구 유치를 위한 설문 내용



3. 2008년 상반기 조사 설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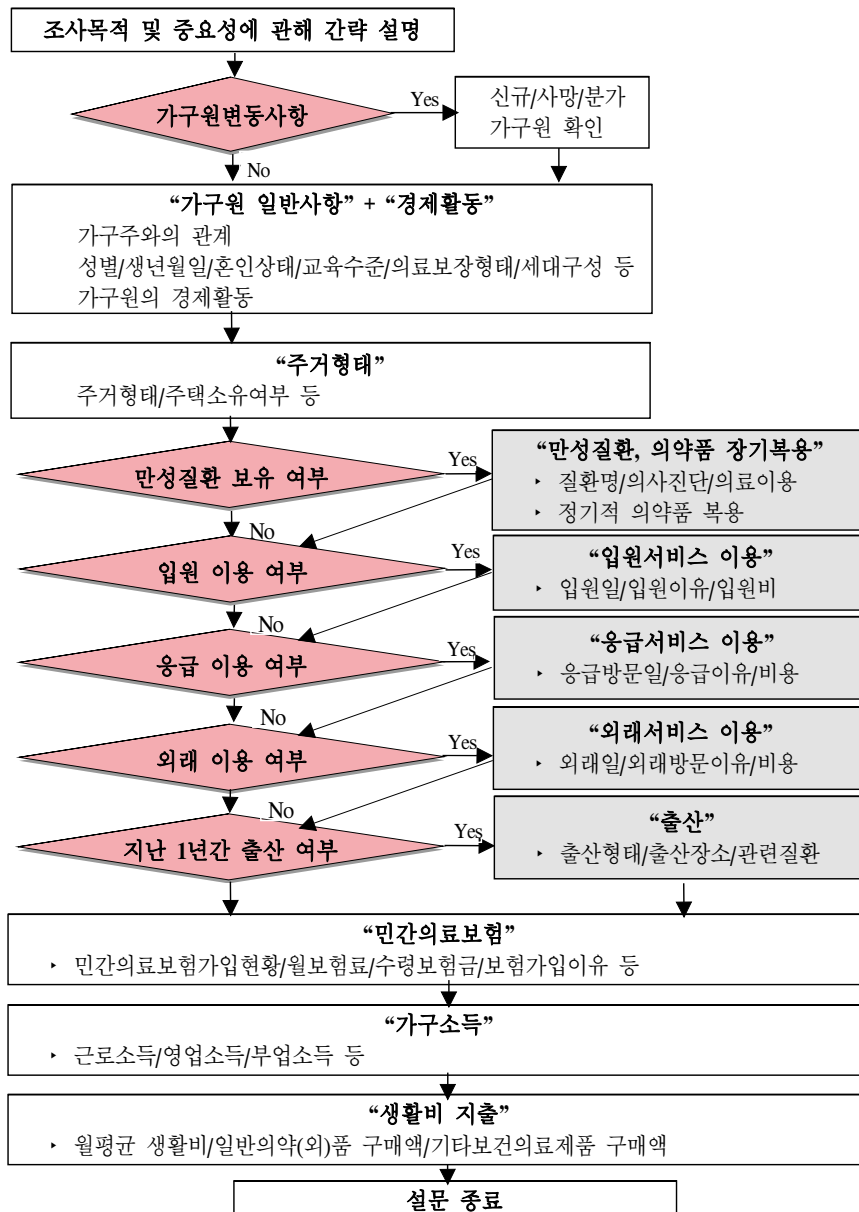
2008년 상반기 설문지 구성은 다음의 <표 2-1>과 같이 크게 가구단위와 가구원단위의 설문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구단위에는 가구원 수, 세대구성, 기초보장수급형태, 주거, 자산 및 소득, 생활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가구원단위에서는 가구원 개개인의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근로소득, 보유 만성질환, 3개월 이상 장기간 의약품 복용여부, 응급/입원/외래 서비스 이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지출 및 재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단,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가구단위의 설문과 가구원단위의 설문이 혼재되어 있다. 최근의 보험형태를 보면 부부가 가입되어 혜택을 받거나, 가구원 모두가 가입되는 가족보험과 같은 형태로 판매되는 상품도 있어 가구단위와 가구원 단위로 엄격히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DB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표 2-1〉 2008년 상반기 조사 구성

구분	주요 조사 내용
가구 단위	· 가구원수/세대구성 · 기초보장수급형태 · 주거형태/주택소유여부/자산규모 · 재산소득, 연금소득, 정부보조금/민간보조금 등 · 생활비지출 · 일반의약품 월평균 구매액 · 견제, 청약,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월평균 구매액
가구원 단위	· 성별/생년월일/혼인상태/교육수준 · 가구주와의 관계 · 장애유무 · 의료보장형태 · 경제활동 · 근로소득/부업소득 · 보유 만성질환 · 만성질환에 따른 의약품 복용 형태 · 3개월이상 의약품 복용 · 응급서비스 이용 및 지출, 재원 · 입원서비스 이용 및 지출, 재원 · 외래서비스 이용 및 지출, 재원
민간의료보험 (가구+가구원 단위)	·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지출 규모 ·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및 수령 규모 · 가입 또는 해약사유 · 가입거부 사유 등

[그림 2-4] 2008년 상반기 조사 내용 흐름도



제2절 건강가계부 설계

1. 예비조사용 건강가계부

건강가계부는 패널가구가 병원 또는 약국을 방문하였을 경우에 방문 이유와 수납금액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조사원이 그 가구를 방문하였을 때 의료이용행태와 의료비에 관한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고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건강가계부를 처음에 기획하였을 때에는 의료이용 내역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실제 진료비 영수증의 형식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작하여 응답자에게 기입하도록 하였다. 패널가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비 영수증을 수거해 올 경우에 패널가구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진료비에 대한 내역을 조사원이 건강가계부에 기재하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의 [그림 2-5]에서와 같이 상단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을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두었고, 그 다음으로 환자성명, 진료일, 병의원이름, 진단명, 이용형태, 방문이유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 방문시 수납금액과 처방약 구매금액을 기입란에 기재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5] 예비조사용 건강가계부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붙이는 곳	
※ 이곳에 영수증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1)환자성명	
(2)진료일(기간)	()월 ()일부터 ~ ()월 ()일까지
(3)병의원이름	
(4)질병진단명	
(5)이용형태	☐ ① 입원 ☐ ② 응급 ☐ ③ 외래 ☐ ④요양병원 ☐ ⑤요양시설
(6)방문이유	☐ ① 갑자기 아파서 첫방문 ☐ ② 급성질환의 재방문 ☐ ③ 기존질환의 갑작스런 악화 ☐ ④ 만성질환 정기방문(재활/물리치료 포함) ☐ ⑤ 사고·중독 ☐ ⑥ 질병예방(건강검진, 예방접종, 교육 등) ☐ ⑦ 미용·성형 ☐ ⑧ 수술전후 방문 ☐ ⑨ 정신적 문제·상담 ☐ ⑩ 기타()

진료비 영수증

진료내역		요양급여 (①+②)	비급여 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 총액															
	입원료			④(①+②+③)															
	식대																		
	투약 및 조제료			환자부담 총액															
	주사료			⑤(①+③)															
	마취료	부분/척수																	
		전신																	
	처치 및 수술료 (시술 및 처치료)			이미 납부한 금액 ⑥															
	검사료			기타()															
	영상진단료(X-레이 등)			⑧															
방사선치료(항암치료)			수납금액⑦																
치료재료대			(⑤-⑥±⑧)	원															
한방물리요법료																			
선택항목	재활및물리치료료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제비 영수증 <table border="1"> <tr> <td>조제일자</td> <td>월 일</td> </tr> <tr> <td>투약일수</td> <td>일분</td> </tr> <tr> <td>약제비 총액 (①+②+③)</td> <td>원</td> </tr> <tr> <td>본인부담금①</td> <td>원</td> </tr> <tr> <td>보험자부담금②</td> <td>원</td> </tr> <tr> <td>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td> <td>원</td> </tr> <tr> <td>수납금액 (①+③)</td> <td>원</td> </tr> </table>		조제일자	월 일	투약일수	일분	약제비 총액 (①+②+③)	원	본인부담금①	원	보험자부담금②	원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원	수납금액 (①+③)	원
	조제일자	월 일																	
	투약일수	일분																	
	약제비 총액 (①+②+③)	원																	
	본인부담금①	원																	
	보험자부담금②	원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③	원																	
	수납금액 (①+③)	원																	
	정신요법료																		
	CT진단료																		
MRI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제증명료 등																			
()																			
()																			
계	①+②	③																	
본인 부담금 ①																			
보험자부담금 ②																			

2. 예비조사용 건강가계부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

위와 같은 건강가계부를 제작하여 배포한 결과, 의료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기입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요구하여 응답자에게 높은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⁶⁾ 또한 건강가계부에 사용된 의료비 관련 용어인 본인부담금·보험자부담금·요양급여·비급여 등과 같이 응답자에게 생소한 용어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본 조사시 배포하는 가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응답자들이 쉽게 기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 기입방식의 단순화
- 영수증 보관의 간편성
- 인쇄된 글자 크기
- 한국의료패널관련 정보 및 수시 연락처
- 휴대용이
- 개인스케줄 관리를 포괄한 활용성

본 조사에서는 요양급여, 비급여, 보험자부담금 등과 같이 세부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병의원을 방문하였을 때 환자가 부담한 수납금액만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이어리 형태를 채택하여 건강가계부가 단순히 조사용이 아니라 응답자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수정·보완된 건강가계부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2-2>와 같다.

6) 정영호 외,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그림 2-6] 본 조사용 건강가계부

진 료 일	2008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가 구 원 이 름	
병 의 원 이 름	
진 단 명	
병원수납금액	원
처방에 의한 약국수납금액	원

※ 뒷장의 플라스틱 백에 다녀오신 병의원/약국에서 받으신
영수증, 처방전, 약봉투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2-2〉 건강가계부 수정 이후 장단점 비교

	건강가계부(수정 전)	건강가계부(수정 후)
기입 내용	- 진료일, 병원이름, 진단명, 방문이유, 요양급여, 비급여, 진료비총액, 환자 부담총액, 수납금액, 진료내역, 본인 부담금, 보험자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치료, 치료재료대, 한방물리요법료 등	- 진료일, 병원이름, 진단명 - 병원수납금액 - 처방에 의한 약국수납금액
형식	- 노트형식 - B5 크기 - 진료비 영수증 형식과 유사하게 편집	- 다이어리 형식 - A6 크기(축소) - 스케줄 관리 달력, 지하철노선도 등 이용자 활용도 증대
장점	- 의료비용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 파악가능	- 세부사항을 제외한 총지출의료비 기입 방식으로 응답자의 작성 용이 - 큰 글씨로 인쇄되어 읽기 쉬움 - 스케줄 다이어리와 겸용가능 - 지퍼백이 있어 영수증 보관 편리함 - 개인적 용도로도 함께 활용 가능하여 응답자 만족도 높임
단점	- 글씨가 작아 노인 응답자들 읽기에 어려움 있음 - 지나치게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여 응답자의 부담감이 커짐 - 용어가 어려워 대답하기 힘들	- 공단부담금, 법정비급여 등에 대한 의료비 세부사항에 대한 상세내역 파악 불가능

제3장 예비조사 및 가구유치조사

제1절 예비조사⁷⁾

1. 예비조사 일정 및 대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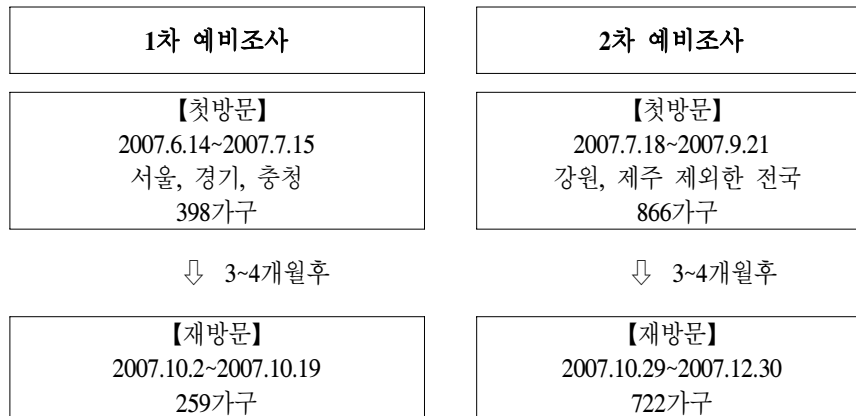
예비조사에서는 기존 패널조사에서 수행한 적이 없는 기장방식을 통한 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본 조사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설문지 내용 검토와 응답자의 건강가계부에 대한 참여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2007년 6월 14일부터 2007년 7월 15일까지 467가구를 샘플로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398가구에 건강가계부를 전달하였고(응답율=85.2%), 3개월 후에 다시 이 가구를 재방문(259가구)하여 건강가계부 작성 정도나 건강가계부 작성할 때의 애로사항, 답례품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차 예비조사는 2007년 7월 18일부터 2007년 9월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866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내역에 대해 조사였다. 또한, 1차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3개월 이후에 다시 방문하여 영수증 보관수준, 의료이용 및 의료비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7) 자세한 내용은 정영호 외(2008),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람.

[그림 3-1] 예비조사 진행 과정



2. 예비조사 자료 점검 및 보완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몇 가지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당 응답시간이 최소 1시간 30분(의료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부터 최대 3시간 반(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까지 소요되어 응답자들 뿐만 아니라 조사원들도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이용 이외에도 가구원 일반사항, 일자리, 소득, 민간보험, 사회연결망, 건강상태, 건강행태, 활동제한, 접근성 및 만족도 등과 같이 설문 분량이 많아 예비조사 초기에 예비조사 목적을 위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문항을 포함하는 한편, 중복되는 느낌을 주는 문항을 삭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셋째, 병원급의 경우에는 처방전 2매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 응답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으나, 의원급에서는 영수증 발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서 응답자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모으

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응답자들이 보관한 영수증을 검토하고 건강가계부에 기재할 경우에, 병의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영수증 형태 또는 세부 항목 등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조사경험이 많지 않은 조사원의 경우에 복잡한 설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누락시키는 문항이 발생하고 설문시간이 길어져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지를 설계할 때와 조사를 진행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제2절 가구유치조사

1. 가구유치조사의 목적

가구유치조사는 패널가구들의 일반사항을 묻고 건강가계부를 전달하고 조사원과 응답자 간에 유대관계를 가져서 본 조사에서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 목적을 두었다. 가구유치조사에서는 가구원 일반사항, 소득, 만성질환의 정기적 방문과 같은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본 조사의 안정적인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가계부를 배포하여 본 조사 시까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조사를 진행할 때 응답자가 기억하기 힘든 의료이용 관련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생성하여 조사 진행이 보다 용이하도록 돕고, 기록해 놓은 관련 자료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료패널의 가구유치조사에서는 비교적 조사 항목이 간단하도록 작성하였으며, 개별 가구의 일반적인 사항과 경제활동,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기적 방문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관해 응답을 거부하거나 민간보험에 관해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 간단히 질문하고 본 조사에서 이에 관해 자세히 물어 볼 것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응답자의 거부감을 줄이도록 하였다.

2. 조사일정 및 조사지역

한국의료패널의 가구유치조사는 2007년 10월 29일부터 2008년 3월 17일까지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실시되었다. 가구유치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자세한 조사구 목록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3. 표본조사구의 지역 경계 및 거처별 가구 확인

조사지도원은 조사원들이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해당 지역 조사구를 방문하여 통계청이 작성한 요도와 조사구의 지역 경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표본 조사구의 경계선 내의 거처를 방문함으로써 조사대상으로는 부적합한 거처(예, 음식점, 교회, 상점 등)를 제외하며 또한 신축건물 또는 빈집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 오피스텔(사무실 겸용 주택)
-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기숙사 및 사택, 집단시설
- 판잣집, 움막,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신축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명부의 거처번호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하였다. 또한 사람이 장기간 살고 있지 않은 집의 경우에는 빈집으로 표기하였다.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몇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순서대로 가구번호를 기입하였다. 이 때에 가구란 혈연 또는 비혈연을 구분하지 않고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같이하는 경우를 1가구로 정의하였다. 다만, 친구들이 모여서 취침, 취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을 공유하지는 않으므로 가구를 대표할 1명만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4. 표본조사구 변경 확인

표본조사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조사구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데, 인구주택총조사는 2005년도에 실시되었으므로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재개발과 같은 조사구의 변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조사를 실시할 때, 해당 지역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본 조사에는 재개발, 오피스텔, 원룸, 상가지역으로 인한 가구수 부족 등으로 29개의 조사구에서 조사를 철회하였다.

〈표 3-1〉 조사불가 지역 사유

구분	조사구			조사 불가 사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본동	원룸지역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	재개발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원룸지역, 상가지역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재개발예정지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원룸지역
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오피스텔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3동	오피스텔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동	오피스텔, 가구수 부족
9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동	오피스텔, 상가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1동	오피스텔
12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타조사와 중복
13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사택, 공동생활관
14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재개발
15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1동	상가지역, 가구수 부족
16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오피스텔
17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비거주용 건물 다수, 가구수 부족
18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철거지역
19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비협조 지역
20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재개발지역
21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비협조 지역
22	경기도	안양시	안양9동	재개발
23	경기도	부천시	상2동	오피스텔
24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비협조 지역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동	조사구지역 광범위, 대중교통이용불가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제철동	공동생활관
27	경상북도	경산시	동부동	공동생활관
28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사원아파트
2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한 이사

5. 조사대상가구 및 표본가구 선정

한국의료패널에서는 집단가구를 제외하고 일반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여기서 일반가구나 함은 일반적으로 혈연단위로 구성된 가족으로, 가구원들이 경제활동을 공유하는 가구를 말한다. 본 조사에서는 집단가구 이외에도 외국인 가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가구,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제외하였다.

각 조사구에서 23~25가구가 한국의료패널 가구로 선정되었다. 우선 빈집, 외국인가구 등의 부적절한 가구는 제외하고 45~50가구를 3명의 조사원이 방문하였으며 낮은 귀가 또는 응답거절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를 제외하고 조사구마다 23~25가구를 방문하였다. 이들 가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조사구 내의 모든 가구를 평균적으로 2~3회 반복하여 방문하였다.

6. 조사 진행절차

가구유치조사를 위해서 다음의 [그림 3-2]와 같은 진행절차를 거쳤다. 우선 표본추출에 따른 센서스 가구명부와 요도를 복사하였고 조사원을 모집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구 내 읍면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조사대상가구들이 볼 수 있도록 조사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아파트 관리실의 협조를 얻어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홍보를 하였다. 이어 가구명부 및 세대명부에 준하여 각 가구를 방문함으로써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에는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림 3-2] 가구유치조사 진행절차



가. 조사원 모집 및 교육 훈련

실사는 조사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이 팀이 되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원은 패널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지도원은 조사원을 지도 및 감독하는 일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조사 전반에 걸쳐 조사팀을 운영하고, 조사표를 검수 및 관리하며, 조사원들의 조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지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지 조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조사지도원은 충분한 경력이 필수적이므로 조사경력과 조사지도원 경험이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하였다.

조사원의 경우, 조사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 뿐 아니라 조사팀원과의 관계 및 호흡 또한 중요하므로 각 조사지도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추천자 가운데서 조사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한국의료패널의 중요성, 건강가계부 작성요령, 진료비 영수증 보는 방법,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구분 요령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응답자가 건강가계부를 원활하게 자가기입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나. 요도확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지역간의 경계를 이용하여 일정한 수의 조사단위(가구)로 묶은 조사구(enumeration area)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구명부와 해당 조사구를 지리적으로 도식화한 요도를 제공해 준다. 조사지도원은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우선 요도와 함께 동사무소의 관내도를 보고 대략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현 지역을 찾아가서 조사구 경계 내의 조사대상가구의 거처와 가구를 확인한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패널 가구명부에 빈집으로 기재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거처번호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조사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면 거처번호를 새로 부여하였다. 요도와 실제 조사구 지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보고한 후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8) 한 조사구 내에 평균 60가구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3-3〕 요도 및 가구명부

2007-05-11 14:57 From:10366

Tel:3832636

P.4-4

표 2-1		표 2-2		표 2-3		표 2-4		표 2-5		표 2-6		표 2-7		표 2-8		표 2-9		표 2-10		표 2-11		표 2-12		표 2-13		표 2-14		표 2-15		표 2-16		표 2-17		표 2-18		표 2-19		표 2-20		표 2-21		표 2-22		표 2-23		표 2-24		표 2-25		표 2-26		표 2-27		표 2-28		표 2-29		표 2-30		표 2-31		표 2-32		표 2-33		표 2-34		표 2-35		표 2-36		표 2-37		표 2-38		표 2-39		표 2-40		표 2-41		표 2-42		표 2-43		표 2-44		표 2-45		표 2-46		표 2-47		표 2-48		표 2-49		표 2-50		표 2-51		표 2-52		표 2-53		표 2-54		표 2-55		표 2-56		표 2-57		표 2-58		표 2-59		표 2-60		표 2-61		표 2-62		표 2-63		표 2-64		표 2-65		표 2-66		표 2-67		표 2-68		표 2-69		표 2-70		표 2-71		표 2-72		표 2-73		표 2-74		표 2-75		표 2-76		표 2-77		표 2-78		표 2-79		표 2-80		표 2-81		표 2-82		표 2-83		표 2-84		표 2-85		표 2-86		표 2-87		표 2-88		표 2-89		표 2-90		표 2-91		표 2-92		표 2-93		표 2-94		표 2-95		표 2-96		표 2-97		표 2-98		표 2-99		표 2-100		표 2-101		표 2-102		표 2-103		표 2-104		표 2-105		표 2-106		표 2-107		표 2-108		표 2-109		표 2-110		표 2-111		표 2-112		표 2-113		표 2-114		표 2-115		표 2-116		표 2-117		표 2-118		표 2-119		표 2-120		표 2-121		표 2-122		표 2-123		표 2-124		표 2-125		표 2-126		표 2-127		표 2-128		표 2-129		표 2-130		표 2-131		표 2-132		표 2-133		표 2-1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 명부

[illegible]

① 장기출타 ② 늦은귀가 ③부재중(원인이파악) ④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이사(주소추적불가) ⑦사망으로 가구소실

다. 한국의료패널 조사홍보 및 안내문

조사대상지역에서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A4크기의 포스터를 제작하여 조사대상지역에 배포를 하였다(그림 3-5 참조). 조사구가 아파트 지역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게시판,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곳에 부착하였으며 일반 주택가의 경우에는 거주자들이 포스터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 거주자들에게 상업적인 조사가 아닌 공공정책을 위한 조사로 홍보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다.

또한 대상 가구를 방문하였을 때 부재중이거나 늦게 귀가하여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재중 스티커를 문 앞에 부착하여 연락처를 남겨둌으로써 응답자와의 접촉빈도를 높였다(그림 3-4 참조).

조사원의 소속을 밝히고 국가출연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원 신분증을 만들어 반드시 착용하게 하였고, 조사원들에게 명함을 제작·배포하여 응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4] 부재 중 스티커

한국의료패널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료패널조사 시행을 위하여 면접원이 귀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안내문을 남깁니다. 바쁘시더라도 보건의료정책수립을 위해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문의전화: 00-000-0000

[그림 3-5] 게시판 부착용 포스터

【 안 내 말 씀 】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__월 __일
부터 __일간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실시하
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수
립하는데 활용할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중요
한 조사이오니, 귀 지역이 조사지역으로 선정
되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담당직원의 방문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직인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www.kihasa.re.kr

라. 조사 대상 가구 및 대상 가구원

조사 대상가구로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15세 이하로 구성된 가구는 제외하고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그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1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에서의 가구원은 가구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 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로 연결된 가구원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서 가구원으로 보는 경우는

- ①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배우자
- ② 미혼자녀 중 교육, 유학, 군복무 및 취업(다른 지방 근무), 친지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미혼자녀
- ③ 늘 함께 살지만 여행, 출장, 입원 등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경우
- ④ 시설입소로 떨어져 살지만, 입소 전에 생계를 같이 한 자녀, (조)부모 등의 친인척
- ⑤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였으며,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 ① 함께 살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자녀
- ② 기혼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
- ③ 일시적으로 방문 또는 기거하는 친인척
- ④ 파출부, 운전사, 하숙생 등의 비인척이 이에 해당된다.

7. 패널가구 유치율

한국의료패널로 선정된 가구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국 389조사구 중 특별·광역시 181개 조사구(46.5%) 및 도 단위 지역 208개 조사구(53.5%)로 인구규모에 따라 조사지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2 참조). 주거형태별로 보면, 일반주택 지역 220개 조사구(56.6%) 및 아파트 지역 169개 조사구(43.4%)로, 동부 308개 조사구(79.2%), 읍면부 81개 조사구(20.8%)로 분포하고 있다.

〈표 3-2〉 패널가구로 유치된 조사지역 및 주택유형별 분포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계	일반	아파트
전국	389	220	169	308	160	148	81	60	21
서울	68	41	27	68	41	27	-	-	-
부산	32	19	13	30	18	12	2	1	1
대구	24	15	9	22	14	8	2	1	1
인천	23	11	12	20	9	11	3	2	1
광주	10	4	6	10	4	6	-	-	-
대전	14	7	7	14	7	7	-	-	-
울산	10	4	6	8	3	5	2	1	1
경기	80	39	41	67	31	36	13	8	5
강원	11	6	5	8	4	4	3	2	1
충북	12	7	5	8	3	5	4	4	0
충남	15	10	5	6	2	4	9	8	1
전북	17	9	8	11	4	7	6	5	1
전남	18	13	5	8	4	4	10	9	1
경북	20	14	6	8	5	3	12	9	3
경남	27	16	11	15	8	7	12	8	4
제주	8	5	3	5	3	2	3	2	1

제4장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제1절 인지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한 개선사항

1. 종합적 검토사항 및 개선사항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수차례에 걸친 자문회의와 인지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검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인 틀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종합적 검토사항 및 개선사항

구분	검토사항	개선사항
조사기간	- 6개월이라는 설문주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	- 응답자들의 recall bias를 최소화하고 record 유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예산상의 범위내에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기간 설정
자료공개 및 데이터 활용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데이터 구조 및 변수 설정	-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공개를 원칙으로 함 -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용자 이용하기 편하도록 DB구축 - user's guide, technical report 등 발간
진단명	- 주요증상 및 진단명 등에 대한 분류 방안	- ICD-10을 기초로 하여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분류 -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처방의약품으로 진단명 보완
척도	- 설문지 내 보기항목에 척도구분을 일관성 있게 구성	- 설문문항을 설계한 연구진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척도 구분
기본설문 및 부가설문	- 패널 기본 설문항목과 부가설문항목 구분	- 지속적으로 부가설문에 관한 연구·개발

2. 문항별 검토사항 및 개선사항

설문구성의 영역별 또는 문항별로 제시된 검토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 중에 주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⁹⁾. 자세한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4-2> 문항별 검토사항 및 개선사항

구분	검토사항	개선사항
가구원 일반사항	- ‘가구주’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응답자가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가구주’ 대신 응답자 기준으로	-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것과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구주의 개념을 명확히 함
경제활동 및 소득	- 소득은 범주형보다는 개방형 질문이 유용 - 조사기간 및 가구소득 또는 가구원 소득 구분	- 개방형으로 설문하여 연속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 2007년 1년간 가구소득 -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따른 개인별 소득
민간보험	- 민간의료보험 가입기간 추가	- ‘현재까지 불입기간’ 문항추가
	- 수령보험금 구분항목을 정액제/정률제 아닌 정액형/실손형으로 수정	- 정액형/실손형으로 수정
	- 수령보험금과 의료이용 파트의 진료비 간 연계 가능여부	- 수령보험에 해당되는 병의원 이용연도, 월 기재

9) 본 내용은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후에 실시된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정영호 외(2008),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람.

〈표 4-2〉 계속

구분	검토사항	개선사항
의료이용 (응급/ 입원/ 외래)	- 사고/중독 장소와 유형의 혼재	- 장소와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
	- 한방병의원과 양방을 구분하여 설문하는 이유가 불분명	- 양방과 한방 입원을 통합하여 설문하고 의료기관 종류에서 양한방 여부만 확인
	- 보험자 부담금 등 환자인지 및 조사가능성 검토	- 총 수납금액으로 설문조정
	- 의료비 재원의 primary source 와 secondary source의 구분	- 총 수납금액과 의료비 재원을 구분
의약품	- 지난 6개월간 이용한 의약품 구입 및 지출액	- ‘생활비 지출’영역에서 의약품 및 보건의료관련제품의 지출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 추가

제2절 2008년 한국의료패널 실사 과정

1. 실사 진행 과정 개요

2008년 1차년도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4-3>과 [그림 4-1]과 같은 일정 및 절차를 거쳤다. 우선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인지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때에 나온 의견들을 다시 반영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가구유치조사에서의 가구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원에게 배포하기 위해 인포시트를 작성하여 출력하였고, 패널가구들에게 방문을 알리는 엽서를 송부하였다. 조사원 모집 및 조사원 규모에 따른 조사지역배분, 조사일정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08년 4월 7일부터 4일 동안 조사원 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현장에서 실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4-3〉 본조사 일정 및 대상가구 수

구분	내용
설문지 인지조사	2008년 4월 4일 ~ 2008년 4월 5일
조사원 교육	2008년 4월 7일 ~ 2008년 4월 10일
실사기간	2008년 4월 16일 ~ 2008년 10월 15일
조사대상지역	제주도 포함한 전국 389조사구의 9,015가구

〔그림 4-1〕 실사과정 개요



2. 조사원 교육 및 훈련

가. 조사원 모집: 동일한 조사원의 동일가구 방문

패널조사를 수행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오랜 기간동안 패널가구가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응답자에게 답례품 제공, 소식지 발송, 조사결과 자료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패널가구를 직접 만나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는 조사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패널조사가 반복적으로 진행될 때, 동일한 조사원이 동일한 패널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조사원과 패널가구 간에 친밀감 및 유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가구 유치시 방문한 조사원이 해당 가구를 다시 방문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조사원을 신뢰하여 조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민간의료보험, 소득과 같은 민감한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같은 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개인적 친분을 쌓은 조사원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조사원이 그대로 그 가구에 방문하도록 하였다.

현장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지도원1명과 조사원3명이 한 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지도원은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들을 현장에서 지도 및 감독하며, 조사표를 검수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조사지도원은 조사경력이 충분히 많은 경력자 중심으로 채용되었다.

나. 조사원 교육 및 훈련

현장에서 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조사원들에게 조사의 목적 및 중요성을 전달하고 면접요령 및 조사원의 역할, 조사 진행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연구진이 직접 교육을 하였다. 조사원들이 조사표 내용을 숙지하고 조사지침서를 참고로 하여 문항별 주의사항에 유의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앞뒤 응답에 모순이 되는 경우나 모른다고 응답할 경우 또는 불충분하게 응답할 경우에는 캐어묻기를 하도록 하였다. 모든 응답자들에게 모든 질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 되어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상의 응답자와 조사원으로 구성된 역할극(role play)을 보면서 조사표 작성요령을 익히고 팀별 토론을 거쳐 각 상황별 대처방식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역할극을 실시해 봄으로써 설문지 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모호한 내용이나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구체적인 조사원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원교육 및 모의조사 일정표

시간	2008. 4. 7 (월)	2008. 4. 8 (화)	2008. 4. 9 (수)	2008. 4. 10 (목)
9시	조사개요 설명	생활비지출, 경제활동, 가구소득	모의조사 (서울 및 경기)	티타임
10시	가구원 변동사항, 가구원 일반사항, 주거형태			모의조사 내용 팀별 정리 및 의문사항 확인
11시				
12시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시	입원서비스이용	패널가구 관리방안		역할극 (role play)
14시	응급서비스이용	출산, 민간보험		
15시		질의응답 및 정리		
16시				
17시	외래서비스 이용			
18시				
19시	질의응답 및 정리	—		질의응답 및 정리

다. 현장 모의조사

조사원들의 현장 모의조사는 패널가구를 방문하기에 앞서 조사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였는지에 대해 자가점검하고 조사에 대한 면접기술 및 요령을 사전에 익힘으로써 응답자들이 편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 또는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입원, 응급, 외래, 출산의 경험이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섭외하여 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봄으로써 본조사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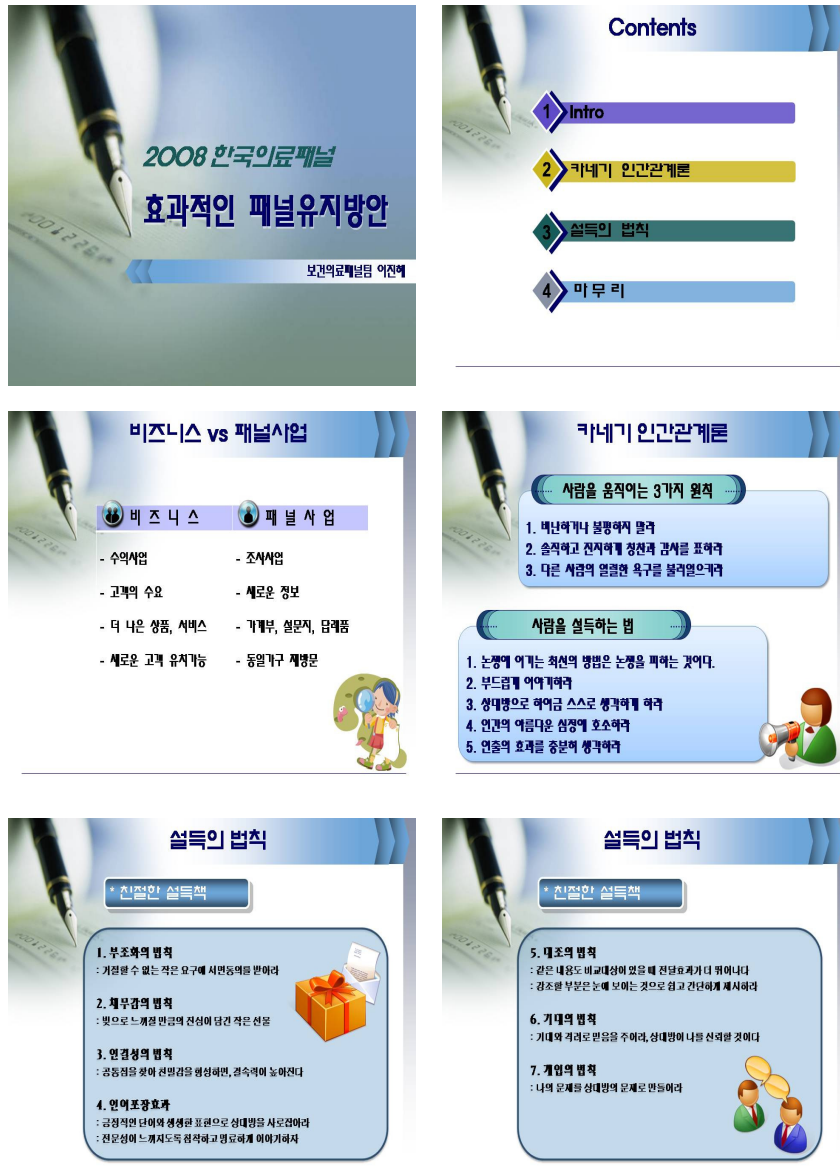
하기 이전에 설문내용을 파악하고 의문사항을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조사단계에서 오는 편의(bias)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라. 패널가구관리방안 중점 교육

패널가구원들은 조사원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고 조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응답가구원들을 직접 대면하는 조사원들의 역량이 패널가구관리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패널관리를 위하여 명절선물을 송부하거나 생일카드 발송 등과 같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패널가구를 직접 대면하는 조사원들의 태도 또한 패널가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패널가구원들이 조사원과의 돈독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료패널 사업에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설득을 위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패널가구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부담스러운 요구나 부탁은 피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강조하였으며, 친밀감을 형성하여 패널가구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교육하였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측면에 대해 다시 언급하였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에 표현에서의 주의사항, 상호성, 일관성, 사회적 근거, 호감, 권위, 희귀성에 관한 심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조사원들의 패널가구관리를 위한 중점 교육을 진행하였다. 조사원들에게 친절한 미소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패널가구원들을 대하고, 논쟁은 피하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여 조사원들의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림 4-3] 패널가구 관리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



[그림 4-3] 계속



3. 인포시트(Info-sheet)

방문하는 가구의 일반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포시트를 출력·배포하였다. 인포시트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가구원들의 생년월일, 교육수준, 건강보험가입유형, 경제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패널가구의 의료이용 행태 및 의료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4] 인포시트 예시

탐청코드	1234567	HID	12345	거처번호	10	집번호	02-123-4567	조사원	아유가	과별
가구주	홍길동	응답자	김아내	가구번호	1	형드폰	010-1234-5678	최종방문	11월 12일	유지
주소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 □□□동 □□□호									
이사주소										

이름	관계	성별	생년월일	결혼	교육	종업	등가유무	의료보장	상용직	임시직 (개월)	임시직 (만월)	일용직 (횟수)	일용직 (만월)	고용주 자영자	종업 경영자	부업소득
1 홍길동	본인	남	1956 0102	유배우	고등학교	종업	등가	지역보험								
2 김아내	배우자	여	1961 0304	유배우	고등학교	종업	등가	지역보험								
3 홍길재	자녀	남	1988 0506	미혼	대학교	재학	등가	지역보험								
4 홍길재	자녀	남	1991 0708		고등학교	재학	등가	지역보험								
5 홍길재	자녀	여	1992 0810		고등학교	재학	등가	지역보험								
6																
7																
8																
9																
주택소유	자가		주택가격	5000		연간월세		지대				기타 1		민간보험	예	
재산소득			연금소득			정부보조		민간보조				기타 2		의료보장	예	

이름	관계	비경제	종사지위	근로형태	산업분류	직업명	직종	만성질환1	만성질환2	만성질환3	만성질환4	만성질환5	만성질환6	만성질환7
1 홍길동	예		자영업자	전일제	운수업	운수업	장차/기계	당뇨						예
2 김아내	아니요	가사양육						간상년 고혈압						예
3 홍길재	아니요	학생 (개수생)												아니요
4 홍길재	아니요	학생 (개수생)												아니요
5 홍길재	아니요	학생 (개수생)												아니요
6														
7														
8														
9														

기재사항 무적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가구. 문자 후 전화할 것

4. 한국의료패널 조사 안내 자료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홍보하여 패널가구의 조사 참여를 높이고 조사원들의 현지 조사가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문안내 엽서, 조사원 명함, 협조공문 등 여러 가지 조사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가구에 전달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방문 안내 엽서

패널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해당가구에게 방문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조사를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응답자들은 방문안내 엽서를 받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건수에 대한 진료비영수증 및 건강가계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조사원과 응답자들이 사전 약속을 통해 방문날짜 및 방문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응답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림 4-5] 방문 안내 엽서

한국의료패널 안내문

안녕하세요.

<2008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00일부터 8월 00일 사이 지난 조사 시 방문하셨던 담당자 분께서 건강가계부와 관련하여 귀댁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리며, 가내 평안과 하시는 일의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80-380-8210, 02-380-82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패널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나. 조사원 명함

패널조사는 일회성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자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건강가계부를 작성하며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부탁드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 또는 요청사항 등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의문사항이나 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연락처를 쉽게 찾도록 하고 조사원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여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음의 [그림 4-6]과 같이 휴대가능한 명함을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그림 4-6] 조사원 명함 예시

〈앞면〉	〈뒷면〉
한국의료패널 면접원 〇〇〇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bile: 000-000-0000 문의전화: 080-380-8210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신42-14	한국의료패널 문의전화: 080-380-8210 바쁘신데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건강사회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의해 보호되며 기밀을 유출시킬 경우 조사기관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점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주: 응답자에게 조사의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처를 전달하기 위해 조사원 개인별 명함을 제작하여 전달함.

5. 조사 답례품 및 영수증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난 후에, 응답가구에 대해 응답사례금이 지급되고 있다. 응답자에게 사례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응답자의 기회비용에 대한 보상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에 소요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사례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경우도 패널가구에 의료이용 관련

영수증을 수집하고 건강가계부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설문
에 응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므로 이러한 노고를 고려하여 전국
권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다만, 일괄적으로 동일한
액수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건강가계부 작성 수준 및 참여도 수준에
맞추어 차등 지급을 하였다.

6. 조사지도 및 관리

패널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조사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사원은 설문지의 문항을 그대로 읽어주기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끌어내어 충분
한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캐어문기를 하거나, 소득 또는 민간보험과 같
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응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응답자에게
신뢰감 또는 친밀감을 줄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
원의 설문환경 및 응답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지도원 및 연구진이 점검하
고 관리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 현장에서 완료된 조사표에 대해 조사지도원이 조사표를 확
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 때에 앞뒤 문항의 응답에 모순이 발견되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현장에
서 보완하였다. 그리고 조사 초기단계에서는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이 각
문항을 이해하는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진들이 조사현
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 내용을 점검하고, 모든 팀이 동일하게 설문내용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에디팅 지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조사 현장에서 완료된 조사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집결되도록 하
였고, 연구진에서 조사표를 다시 검토하여 조사팀별로 차이가 없이 통일
성을 기하고 있는지를 재점검 하였다. 그리고 조사가 완결된 후 조사지도
원과 연구진이 모여서 모호하거나 예외적인 문항에 대해 논의를 거쳐 다

시 보완하였으며, 데이터 클리닝의 로직 상으로 오류를 수정하기 힘든 코드는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해당 조사지역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구명부를 작성하였다. 조사지도원은 조사지역별로 패널유지율, 패널이탈 사유 등에 대해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조사원은 담당 패널가구의 주소, 연락처, 가구의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여 다음 방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3절 조사 완료율 및 자료입력

1. 조사 완료율

가구유치조사와 2차 예비조사의 결과로 표집된 2008년 한국의료패널 상반기 조사대상 9,015가구 중 7,768가구가 응답하여 86.2%의 응답율을 나타내었으며, 한국의료패널에 참여하는 동일 조사구 내의 2가구가 1가구로 합치면서 설문에 응답한 가구 수는 1가구 감소하였다. 조사 완료율은 전남, 제주, 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 서울, 인천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에 대한 해당지역의 인식이나 타인에 대한 태도, 가구를 대표하는 응답자의 상태변화도 조사 완료율에 영향을 주었다. 가구 유치시 협조를 구하기 수월했던 지역에서 조사 완료율이 높았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이나 반장,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동사무소나 보건소의 우호적인 태도는 조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여 패널 가구의 조사 완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표 4-4〉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의 지역별 완료율

지 역	대상가구	조사완료	완료율	비고
서 울	1,520	1,267	83.4	0
부 산	701	616	87.9	0
대 구	602	515	85.5	0
인 천	561	468	83.4	0
광 주	238	203	85.3	0
대 전	295	254	86.1	0
울 산	226	187	82.7	0
경 기	1,924	1,657	86.1	0
강 원	275	250	90.9	0
충 북	299	260	87.0	0
충 남	344	294	85.5	0
전 북	375	323	86.1	1†
전 남	409	380	92.9	0
경 북	456	401	87.9	0
경 남	582	503	86.4	0
제 주	208	190	91.3	0
전 국	9,015	7,768	86.2	1

주: † 패널에 참여하는 동일 조사구 내의 2가구가 1가구로 합가한 경우

불참사유별 빈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9,015가구 중 조사미완 가구는 1,246가구로 13.8%를 차지하였다. 미완사유별로는 조사거부로 인한 조사미완이 877가구(70.4%)로 가장 많았고, 이사 후 연락두절 및 이사진 주소 거부 155가구(12.4%), 장기출타 125가구(10.0%), 부재 중 또는 원인 미파악 45가구(3.6%), 늦은귀가 21가구(1.7%),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9가구(0.7%), 기타 8가구(0.6%), 조사표 일부문항 미완 6가구(0.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미완의 기타사유로는 이민이나 외국유학으로 인한 가구소실, 치매로 보호, 정신장애로 인한 조사불가 등이 있었다.

〈표 4-5〉 지역별 조사불참 사유별 빈도

지 역	조사미완	조사 미완사유							
		장기 출타	늦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전 국	1,246	125	21	45	6	877	155	9	8
서울	253	16	7	6	1	187	39	0	0
부산	85	11	1	2	2	59	8	2	0
대구	87	9	1	2	0	61	13	1	0
인천	93	5	7	5	0	68	7	0	1
광주	35	6	1	3	0	28	1	1	0
대전	41	7	2	2	0	27	3	0	0
울산	39	6	0	1	0	25	4	0	3
경기	267	17	3	13	0	196	36	1	1
강원	25	1	0	0	0	21	3	0	0
충북	39	4	0	2	0	24	7	0	2
충남	50	4	0	2	0	28	13	2	1
전북	51	12	1	1	1	32	4	0	0
전남	29	6	0	1	0	19	3	0	0
경북	55	15	1	0	1	33	5	0	0
경남	79	6	0	5	1	56	9	2	0
제주	18	2	0	1	0	15	0	0	0

주) 조사구별 완료가구수 및 미완사유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2. 조사자료 점검

2008년 4월 16일 본조사 시행 이후 연구진에서는 조사지역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설문문항 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정확한 응답이 도출되는지 확인하였다. 에디팅 지침이 보완될 때마다 각 팀으로 배포하여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조사표가 도착할 때마다 조사표 점검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연구진은 조사지도원과 함께 에디팅 공동작업을 수행하였다.

조사 자료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행정동코드와 진단코드,

요양기관코드를 배포하였으며, 행정동코드는 설문문항에 따라 앞의 8자리 또는 5자리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지침을 전달한 내용을 각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4-6>와 같다.

<표 4-6> 문항별 조사자료 점검내용

문항 번호	문항내용	점검내용
가구원 변동사항		
2	가구원 변동유무	- 신규, 사망, 분가, 누락, 제외 가구원 확인
6-1	질환	- 사망원인이 질병인 경우에만 진단명, 진단코드 설문
가구원 일반사항		
2	가구주 번호	- 현재 가구를 대표하는 자
4	특례가구	- ④특례가구: 비정상적 의료비 지출로 일부 가구원만 특례적용 받는 경우 포함, 보 훈처 관할 특례자인 경우 제외
9	혼인상태	- ⑧비해당: 지난 조사 이후부터 이번 조사 기간 이전에 사망한 경우
10	교육수준	- 만 7세 이하 '미취학'과 '무학(문자해독불가)', '무학(문자해독가능)'으로 구분
12	의료보장 형태	- 사망한 가구원의 경우, 사망하기 전에 이용하던 의료보장 형태로 기입
12-1	건강보험 대표자	- 가구원이 아닐 경우 '66', 의료급여자, 특례자, 미가입자 등 '88'
13	장애유형	- 비등록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유형 설문,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의 경우 유형에 따라 장애등급이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
13-1	장애등급	- ⑦비등록 장애인: 보건처등록 장애인 포함, 장애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14	경제활동	-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은 비경제활동으로 분류, 농어업을 통해 자식들에게 용돈 또는 댓가를 받는 경우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댓가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재
14-1	비경제 활동이유	- 고령은퇴자의 경우 15~19번 은퇴 이전 가장 주된 경제활동에 대해 기입
17	산업분류	- 비해당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0'으로 코드변경 - 소속된 기관 또는 회사를 기준으로 분류(운수업, 숙박업 등)
19	직종	- 종사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상담직, 기술직, 경비직 등)
주거형태		
1	주거형태	- 주상복합의 경우 상가가 있는 층에 거주하고 있으면 영업용 건물 내 거주, 주택 있는 층에 거주하고 있으면 아파트, 오피스텔로 분류

문항 번호	문항내용	점검내용
2	주택소유 여부	- 명의만 자녀 앞으로 되어있는 노인의 경우 자가, 자녀 집에 함께 사는 경우 기타
의료이용 표지		
		- 각 문항의 가구원별 예/아니오 여부에 따라 답지유무 확인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 충치, 여드름, 무좀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를 받은 경우 만성질환 포함
2	의사진단 여부	- 의사진단 받지 않은 경우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설문종료
5	의약품 복용여부	-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주사제(인슐린 등), 연고 등의 의약품 포함 - 병원에서만 약물처치 하는 경우 제외
5-1	미복용 이유	- 의약품 미복용 만성질환자의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설문종료 - ⑥약 이외의 치료 중: 혈액투석, 물리치료, 치과치료 등 - ⑦의사가 약(연고, 주사제포함)을 처방하지 않음: 비처방 의약품을 3개월 이상 지 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예정)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설문
9	약제비 부담수준	- ⑧비해당: 무료로 약을 공급받는 경우
3개월 이상(예정)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 약국에서 구매했거나 선물받은 '의약품'만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외 - 한약방에서 구매한 한약, 첩약은 생활비 지출에서 설문
2	복용이유	- 보유하고 있는 질환의 호전을 위해 복용하는 경우 질환명과 진단코드 기재
6	약값	- 한달 평균비용으로 작성, 선물 받은 경우 '97'
7	약제비 부담수준	- ⑧비해당: 선물 받거나 무료인 경우
9	약국선택	- ⑩약국가지 않음: 선물 받은 약만 복용하는 경우
응급 서비스 이용		
4	교통수단	-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수납금액에서 구급차 이용료 확인(119, 129, 병원 등)
5	병원지정 여부	- 병원지정 하였으나 지정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 '②아니요' - 무의식 상태였던 경우 '⑧비해당'
6	소요시간	-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결정한 후 응급실 도착까지의 소요시간 - 응급실에서 정산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경우에는 '응급실↔응급실' 간 소요시간 기입
11	수납금액	- 무료 '91', 입원정산시 포함 '94',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96', 산재 '97'
12-1	건보이외 의 지원	- ⑤비동거 가족/친인척/친구의 지원: 치료비를 '돈'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⑧비해당: 의료보호자나 보훈대상자가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14	입원연계	- 응급실 방문 이후 사망한 경우 '⑩사망' 코드추가 - 다음 조사에서의 편의를 위해 '④입원 중' 코드추가

〈표 4-6〉 계속

문항 번호	문항내용	점검내용
의료이용 표지		
		- 각 문항의 가구원별 예/아니오 여부에 따라 답지유무 확인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 충치, 여드름, 무좀의 경우 2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를 받은 경우 만성질환 포함
2	의사진단 여부	- 의사진단 받지 않은 경우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설문종료
5	의 약 품 복용여부	-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주사제(인슐린 등), 연고 등의 의약품 포함 - 병원에서만 약물처치 하는 경우 제외
5-1	미 복 용 이유	- 의약품 미복용 만성질환자의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설문종료 - ⑥약 이외의 치료 중: 혈액투석, 물리치료, 치과치료 등 - ⑦의사가 약(연고, 주사제포함)을 처방하지 않음: 비처방 의약품을 3개월 이상 지 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3개월 이상(예정)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설문
9	약 제 비 부담수준	- ⑧비해당: 무료로 약을 공급받는 경우
3개월 이상(예정)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 약국에서 구매했거나 선물받은 ‘의약품’만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외 - 한약방에서 구매한 한약, 첩약은 생활비 지출에서 설문
2	복용이유	- 보유하고 있는 질환의 호전을 위해 복용하는 경우 질환명과 진단코드 기재
6	약값	- 한달 평균비용으로 작성, 선물 받은 경우 ‘97’
7	약 제 비 부담수준	- ⑧비해당: 선물 받거나 무료인 경우
9	약국선택	- ⑩약국가지 않음: 선물 받은 약만 복용하는 경우
응급 서비스 이용		
4	교통수단	-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수납금액에서 구급차 이용료 확인(119, 129, 병원 등)
5	병원지정 여부	- 병원지정 하였으나 지정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 ‘②아니요’ - 무의식 상태였던 경우 ‘⑧비해당’
6	소요시간	-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결정한 후 응급실 도착까지의 소요시간 - 응급실에서 정산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경우에는 ‘응급실↔응급실’ 간 소요시간 기입
11	수납금액	- 무료 ‘91’, 입원정산시 포함 ‘94’,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96’, 산재 ‘97’
12-1	건보이외 의 지원	- ⑤비동거 가족/친인척/친구의 지원: 치료비를 ‘돈’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⑧비해당: 의료보호자나 보훈대상자가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14	입원연계	- 응급실 방문 이후 사망한 경우 ‘⑩사망’ 코드추가 - 다음 조사에서의 편의를 위해 ‘④입원 중’ 코드추가

〈표 4-6〉 계속

문항 번호	문항내용	점검내용
입원 서비스 이용		
		- 조사시점에서 단기입원 중인 경우 다음 설문에서 조사, 장기입원의 경우 포함 - 양한방 협진의 경우 구분 가능하면 분리하여 기재하고, 한방내역의 입원횟수를 공란으로 둠
2	입원기간	- 조사시점에서 장기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은 조사 전월, 퇴원일은 '55'일
5	의료기관 선택기준	- 친인척이나 지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내용을 토대로 선택기준 설문 - 응급실을 통한 입원 중 응급실을 지정한 경우 의료기관 선택기준 설문, 응급실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⑩선택할 상황이 아니었음'
6	입원결정	- 의료기관 선택기준이 아닌 '입원'과 '통원'에서 있어서의 입원결정자
7	대기여부	- 병실이 없거나 수술실 예약이 밀려 입원을 기다려야 했던 경우
8	입원이유	- ④퇴원 후 1개월 이내의 재입원: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라도 퇴원 후 1개월 이내 에 동일질환으로 재입원한 경우, 좀 더 나은 병원을 찾기 위해 퇴원 후 재입원 한 경우 또는 집과의 거리와 같이 개인적 이유로 퇴원 후 재입원 한 경우 제외 - ⑦기타: 달리 아프지 않지만 잠시 병원에서 쉬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9	사 고 / 중 독 장소	- 같은 장소라도 지위와 신분에 따라 분류(학교운동장: 학생은 교육활동지, 교사는 사업장, 일반인은 레저활동지)
11	의사진단 신뢰/재 확인	- 병원소평 관련, 의사진단이 정확했는지 또는 치료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병 원에서 재검사하거나 상담해본 적 있는지 설문 - 입원한 병원에서의 권유 또는 의뢰로 이송된 경우 제외
14	선택진료 권유유무	-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를 권유한 적 있는지 설문, '⑨모름' 코드를 반드시 적용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언지를 주지 않고 선택진료를 적용한 경우 확인)
15	입원실	- 15-2, 15-3 문항 포함 회복실, 신생아실 등 '⑦기타' 코드추가 - 15-2, 15-3 입원실의 경우 '⑩이동하지 않음' 코드
16	수납금액	- 무료 '91', 금액을 모르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96', 산재 '97'
17	처 방 약 수 령 / 구 매 유무	- '⑤입원 중' 코드추가 - 원내외 '약국에서 구입'(처방전을 가지고 따로 구매)한 약인지 퇴원 정산시 병원 에서 '받은' 약인지 구분
26-1	같은이유 입원횟수	- 최초 입원한 입원횟수 포함, 최소값 02
외래 서비스 이용		
		- 가구원이 응급실 이용 후 사망하였을 때 진단서 발급 등으로 의료이용내용이 발 생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은 가구원의 외래이용내용에 기입
2	진단명	- 복수응답 가능
5-1	소재지	- 완전히 모르는 경우 '98989', 그 외 모르는 부분만큼 '9'활용
6	이송의뢰	-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이송 의뢰한 경우와 큰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이 송 의뢰한 경우 모두 포함
7	방문이유	- ②질병치료 및 추후관리: 약간의 통증으로 검사받거나 치료 받는 경우 및 증상은 있으나 진단명이 없는 경우 모두 포함 - ⑤예방접종/예방관리: 예방차원의 검사 포함

〈표 4-6〉 계속

문항 번호	문항내용	점검내용
외래 서비스 이용(계속)		
11	치료내용	- ①약물치료: 갑스 포함, 정신요법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약물치료’ 우선
14	수납금액	- 무료 ‘91’, 일시금지급 ‘95’,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96’, 산재 ‘97’
15	재원	- 약제비 지원받은 경우 포함, 헌혈증을 통한 지원은 제외
16	처 방 전 수령유무	- 정신과와 같이 외래 영수증에 약제비가 포함된 경우 ‘②아니요’
18	교통수단	- 동일 병원의 다른 과목 외래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교통시간 0분, 교통비 0원
출산(2007년 1월 1일~12월 31일)		
2	정기산전 진찰	- ①규칙적: 정기진찰을 모두 받은 경우 - ②가끔씩: 정기진찰 횟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10	출산장소	- ⑥기타: 일반병원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
민간의료보험		
		- 민간보험 가입여부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를 구분하여 설문
4	계약변경	- ①유지: 신규가구의 경우 이전에 납입하고 있던 보험은 ‘유지’로 간주, 지난 조 사시 완납한 보험도 완납 형태의 ‘유지’로 구분 - ⑦기타: 납입면제, 실효된 민간의료보험 포함(추후 유지할 계획이 있는 민간의료 보험의 경우 ‘실효’, 추후 유지할 계획이 없는 경우 ‘해약’) - ‘보장기간 완료’ 코드추가
7	현재까지 불입기간	- ‘⑩모름’ 코드추가
10	월보험료	- 10-1 문항포함, 완납한 경우 ‘0원’ 모를 경우 ‘98원’
14-1	보험금청구 거절사유	- ‘⑦청구절차, 대기 중’ 코드추가
15	수령가구원 번호	- 공동 가입한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금 실수령자를 기준으로 작성
19	병 의 원 이름	- 청구서 작성횟수만큼 기재
21	이용일	- 관련 질환으로 처음 병의원을 이용한 날짜 기록
23	수령금	-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해 준 경우 합산금액 기재
가구소득		
		- 200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 기재
생활비 지출		
		-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소득부분 재확인 - 의약품과 의약외품 확인 후 기록
2-1	의약(외)품 구매액	- 의약분업 예외지역일 경우 슈퍼에서 구매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함하여 기재
4	건 재, 첩 약 구매여부	- 시장 및 한약방에서 구매한 건재, 첩약 포함

3. 조사자료 입력

조사자료는 전문적으로 설문자료를 입력하는 코딩업체에 의뢰하였다. 각 영역별 특성에 따라 가구단위 데이터와 가구원단위 데이터를 구분하고 반복설문 유무에 따라 파일을 나누었으며, 조사관리 변수를 두어 각 가구 또는 개인을 추적하기 용이하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조사관리 변수로는 조사차수, 상반기/하반기조사, 현방문 행정동코드, 우편번호, 가구 아이디, 응답자 가구원 번호, 조사표 번호, 조사월일, 지도원 성명, 가구원번호, 답지번호 등이 활용되었다. 의료이용 영역의 경우 가구원별로 발생정도에 차이가 존재하여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3개월 이상 의약품 이용, 응급 서비스 이용, 입원 서비스 이용, 외래 서비스 이용, 출산을 각각의 개별 자료로 분리하여 구축하였다.

〈표 4-7〉 코드북 예시

변수명	OUMAIRE	변수형태	Numeric
설문문항번호	외래 7	컬럼수	2
설문내용	방문이유	시작	25
비고	사고후유증은 질병으로 간주	끝	27

내 용	코드	샘플수	가중치
사고나 중독	01		
질병치료 및 추후관리	02		
타병원 진단/진료의 재확인	03		
산전후 관리	04		
예방접종/예방관리(보약, 스킨링, 사랑니발치 등)	05		
건강검진(결과확인포함)	06		
건강상담 및 교육	07		
미용/성형/비만	08		
진단서, 보건증 발급	09		
기타	10		
계			

[그림 4-7] 원시데이터 자료의 구성

Section A: 가구용 답지-가구정보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가구원 일반사항: General Factor

주거형태: Housing Type

가구소득: Income

생활비 지출: Expenditure

Section B: 가구용 답지-개인정보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가구원 변동사항: FM(Family member) Change item

가구원 일반사항: FM(Family member) General Factor

의료이용 표지: MUC

Section C: 민간보험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민간의료보험: PHI(PRIVATE HEALTH INSURANCE)

Section D: 만성질환 및 의약품이용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CHD(Chronic disease)

Section E: 3개월 이상 의약품 이용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3개월이상(예정)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이용: MD(Medicine)

Section F: 응급 서비스 이용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응급 서비스 이용: ER

Section G: 입원서비스 이용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입원 서비스 이용: IN_(IN_ission)

Section H: 외래 서비스 이용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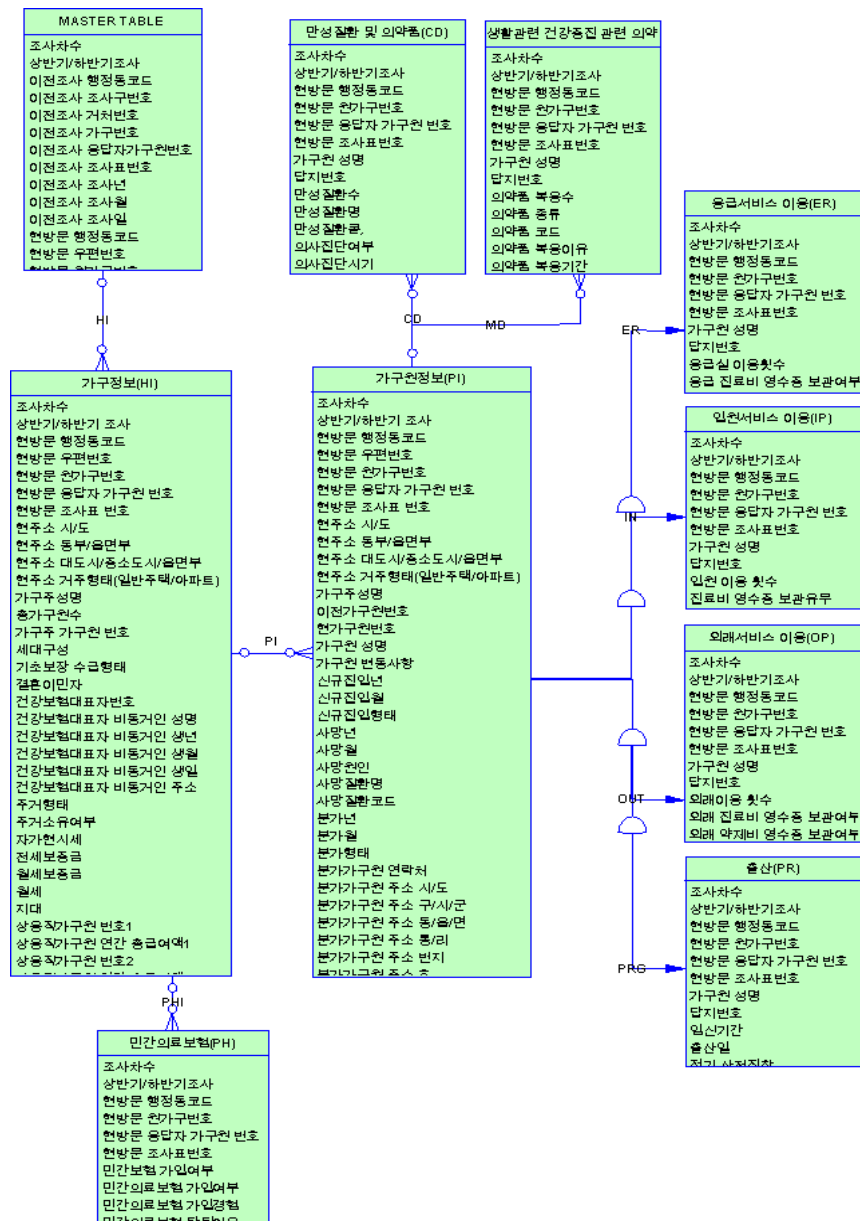
외래 서비스 이용: OUT(visit of Hospital)

Section I: 출산

조사관리변수: Master Code

출산: PRG(PREGNANCE)

[그림 4-8] 원시데이터 입력 구조



제5장 한국의료패널 가구 관리

제1절 패널가구 관리의 중요성

패널조사는 여타의 조사와는 달리 동일한 표본을 반복 방문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 확보된 패널이 이탈할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패널조사에서 구축된 패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패널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응답자가 조사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모두 포함된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응하는 응답자의 경우 조사가 완료되면 상품권을 지급하여 조사에 대한 즉각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지속적인 패널관리를 위해서 패널가구원들의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의 080전화를 개설하여 패널가구의 요구사항에 응대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원들의 정기적인 전화접촉을 통하여 패널의 동향을 파악하고 감사인사를 전달하였으며, 연구진에서는 우편엽서, 소식지 및 명절 선물을 발송하는 등 패널유지를 위한 다양한 상시 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패널관리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패널가구가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조사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증대시키고 조사 참여시 패널가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고 있다.

제2절 패널 관리 및 운영

1. 080 수신자부담 전화 개설

패널가구가 성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응답자 편의를 고려한 수신자 부담 전화인 080전화를 개설하였다. 수신자 부담 전화는 패널가구가 경제적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연구진과 상호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패널가구가 자발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조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정보를 제공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응답가구가 공공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성과 기여를 인식하고 보다 충실한 패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연구진은 응답가구가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조사관리 상의 세부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또한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하여 걸려온 불만사항의 내용이나 횟수를 관리함으로써 패널별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보다 나은 패널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널관리 데이터는 이후 이탈위험가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행할 때에도 사용된다.

다음은 패널 가구들이 자주 질문하는 문의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Q1) 병원에서 영수증을 잘 발급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수증은 환자가 요청하기 전에 병원에서 먼저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2매 요청은 환자의 알권리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영수증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건강가계부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어떤 기관인지, 무엇을 위한 조사인지 궁금합니다.

A)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보건관련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기관에서는 의료비와 의료이용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국민이 어떤 질병에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보건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할 기초 자료를 만들고자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3)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됩니다.

A) 저희는 연구목적 외에는 답변내용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A)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한 강제성은 없으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도록 참여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보건정책의 기반을 세우는데 일조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5) 이웃집은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았다는데 우리 집은 왜 방문했나요?

A) 한국의료패널조사가 ‘전국조사’이기는 하지만 전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가구만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

정된 몇 가구만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사시더라도 어떤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았으나, 어떤 가구는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국가통계로, 보건의료정책을 세우는 데 선생님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Q6) 조사원은 언제 또 방문하나요?

A) 저희가 약 6개월 후에 건강가계부를 수거하기 위하여 다시 찾아뵙 예정입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방문안내편지나 전화 등으로 귀택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의료이용 영수증을 모아주시고 건강가계부에 기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7) 무엇을 모으고 무엇을 기록하면 되나요?

A)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신 후, 해당영수증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처방전도 모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약국을 이용하신 경우에도 약제비 영수증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약봉투에 약국영수증이 첨부된 경우가 많으므로, 그런 경우 약봉투를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나 약국에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신 경우에도 그에 대한 영수증을 모아주시거나 건강가계부에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Q8) 병원에서 나중에 영수증을 한번에 출력해도 되나요?

A) 되도록이면 방문하셨을 때마다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모아주시는 것이 응답자 본인께서 개인적으로 확인하시는데도, 또 조사를 위해 정리하시는데도 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영

수증을 한번에 출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추후에 확인하기 위해 병의원을 이용하실 때마다 건강가계부의 달력에 동그라미 등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9) 의료관련 조사라고 들었는데, 왜 학력이나 소득도 물어보나요?

A) 한국의료패널은 각 가구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파악하여 향후 보건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다 믿을만하고 자세한 분석을 위해 개개인의 특성과 관련 있는 소득, 학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의료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자 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과 의료이용간의 관계 연구는 보다 국민생활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소식지 배포

한국의료패널에 관하여 패널가구들이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점들과 생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 조사기관 및 조사원 소개 등을 중심으로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의료패널에 관한 관심을 모아서 향후 개설될 홈페이지와 함께 한국의료패널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가을호 소식지는 조사지도원이 패널가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와 담당조사원, 한국의료패널 조사일정, 병의원 이용 시 유의사항, 영수증 보관의 필요성, 현장조사 팀원들과 연구원 팀원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들을 실어 조사에 참여하는 패널 가구들에게 유익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본 소식지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발간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패널로부터 수집된

[illegible][illegible]

3. 명절답례품 전달

패널가구의 지속적인 관심을 모아 안정적인 패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명절선물을 발송하였다. 2008년 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 패널가구에 제공된 명절 선물은 약 1만원 상당의 것으로, 참여에 대한 감사인사와 함께 조사에 대한 취지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선물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동봉하였다. 그리고 가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그림 5-2] 감사의 편지

감사의 글 2008년에도 가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u>건강가계부</u>를 부탁드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료패널’은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꾸준한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 4월부터 ‘한국의료패널 2차 조사’로 다시 찾아뵙을 예정이니,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 080-380-8210으로 전화주십시오. 감사의 표시로 작은 정성을 담아 보내드리오니 부디 받아주시고, 동봉하는 가계부 다이어리는 조사원선생님께서 방문하실 때까지 보관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료패널’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 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패널팀 올림
--

4. 조사원별 감사 메시지 송부 및 안부 전화

조사원들은 정기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패널가구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우선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또한, 다음 방문 전 적절한 시점에 전화로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의료이용 관련 영수증 보관과 건강가계부 작성을 부탁드리고 있다.

5. 향후 계획

가. 홈페이지 개설

한국의료패널과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패널가구들이 한국의료패널의 배경 및 목적,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 조사진행과정, 조사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진 소개, 조사내용 및 조사 결과 데이터베이스, 조사방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인들도 오픈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 게시판, 마이 페이지/마이 서베이, 자료실, 정보 교환 게시판, 정책 제안 게시판 등을 구성하여 패널가구들이 능동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

나. 축하카드 발송

가구원의 생일 혹은 결혼기념일 등 경조사에 편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조사 참여 가구원들의 개인적인 기념일에 축하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인간적인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패널가구원에게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는 조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효과

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탈예상가구에 대한 참여 유도

이탈의사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대한 특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을 설득하여 지속적인 패널로 만드는 것이 패널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전화로 패널불참을 밝히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가구 또는 다음 차수에 이탈의 우려가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파일을 만들어서 이탈의사를 가지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패널이 느끼는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패널가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전적 인센티브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한다.

라. 이사가구 및 분가가구 특별 관리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사가구 및 분가가구 발생이 증가하므로 이들 가구에 대한 특별 관리 또한 필수적이다. 이사가구나 분가가구에서 스스로 변동사실을 알려줄 경우에 집들이 선물, 결혼축하카드 등을 송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PSID는 이주 시 새 주소를 통지한 경우 5\$를, 이사 간 조사대상자를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를 지급한다. 영국의 BHPS는 면접에 응답한 가구에 대하여 10\$ 상당의 선물 증서 등을 제공하며, HRS는 20\$ 상당의 현금 보상을 실시한다(금재호, 1998). 향후 발생하게 될 이사가구 혹은 분가가구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제6장 한국의료패널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제1절 한국의료패널 향후 계획

1.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 및 신속한 결과 제공을 위한 계획

2008년은 한국의료패널 본 조사가 수행되는 첫 해이다. 2008년 4월에서 10월까지 상반기 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부터 하반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조사결과는 에디팅, 코딩, 데이터클리닝 등의 작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급여 자료를 연계하여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책적·학문적 수요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신속한 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연계가 이루어지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의 신뢰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폭넓고 심도있는 분석이 한층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한국의료패널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가중치 및 imputation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며, 자료공개시 사용자친화적인 자료구성을 위해 데이터구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료패널은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의 조사이다. 따라서, 조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조사일정 등 조사관리 측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조사의 효과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관리 통합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한국의료패널의 DB구축과 함께, 한국의료패널 리뷰(review) 또는 브리프(brief)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분기별 또는 반기별)을 발간하여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정기간행물에는 최근의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 결과발표와 주요 이슈들을 분석한 글들을 담을 예정이다.

2.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 구축

한국의료패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다.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심있는 연구자, 정책담당자, 학생, 일반인 등이 한국의료패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전제하에 응답자들이 가계부를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질적 제고 및 조사비용의 절감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성을 준비 중에 있다. 한국의료패널 홈페이지는 한국의료패널 연구진, 연구자 및 정책담당자, 응답가구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3. 부가설문 개발

한국의료패널은 2007년에 핵심영역에 대한 설문개발과 함께, 부가설문도 개발하여 학문적·정책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약 250여개의 학회를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부가설문 영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09년에는 이와 같이 개발된 설문영역이나 설문문항 리스트를 토대로 장기적인 장기 부가설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문적 요구이외에도 시급한 정책현안이나 이슈가 도출되면 적절하게 대응하여 부가설문을 수행함으로써 학문적·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한국의료패널이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4. 결과보고서 및 user's guide 등의 발간

한국의료패널 본 조사 1차년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할 예정으로 기초결과 보고서와 심층분석 보고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

의료패널 조사와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user's guide를 발간하고, 전문가들의 technical report 등을 발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료패널 연구진은 조사자료를 기초로 보건의료정책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user's guide와 technical report는 관련연구자들에게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학문적·정책적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국의료패널은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학문발전과 정책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자 한다. 우선,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책형성이나 평가 등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한국의료패널 포럼을 구성하여 관련 연구의 발전과 토론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07년 11월에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의료패널이라는 워크숍 session을 마련하여 논의하였으며, 2008년 11월에는 예방의학, 의료사회학, 보건행정학, 보건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한국의료패널을 다룬 제1회 한국의료패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관련연구의 활성화를 제고할 것이다.

6. 한국의료패널의 국제화 및 국제비교 연구

한국의료패널은 중장기적으로 국제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영문사이트를 운영하고, 설문지의 영문작업, 영문 code book 및 영문 user's guide를 발간하여 외국의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학술대회에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비교 연구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자료의 일치화(harmonization) 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7. 추가표본 및 CAPI 개발

한국의료패널은 7,000~8,000가구의 표본 수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진은 조사가 반복되면서 이탈가구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여 약 9,000가구를 유치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2008년 상반기 조사를 마친 결과 약 86%의 패널가구 유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추후 목표한 표본 수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표본 개발을 준비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의 질적 제고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CAPI로의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과정을 확인하고, CAPI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절 기대효과

한국의료패널데이터는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의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단자료로 구축된다. 본 패널조사를 통하여 특정 시점에서 현상만을 보여주는 횡단면 자료로는 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수준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건강행태 등의 동태적 변화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기간 효과, 특정연령 효과, 코호트 효과 등을 고려한 심층분석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패널자료는 현재와 과거의 인구학적 배경, 교육·문화적 배경, 경제적 배경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므로 ‘건강’이라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즉, 동일한 개인에 대해 주기적이고 장기간의 추적 조사를 통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정부 정책의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첫째, 특정인구집단별(연령별, 사회경제적 계층별 등), 질환별, 재원별(공적보험, 민간보험 등)로 외래, 입원, 응급, 의약품 등에 관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생

산이 가능해 진다.

둘째, 의료비의 재원조달의 변화와 재원조달의 특성(공적보험, 민간보험 등)에 따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행 전후 건강보험제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

셋째, 의료이용과 비용에 대한 급여데이터와 비급여데이터를 모두 제공하므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설정하거나 적정보험료 수준을 검토할 때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의료패널을 통한 비급여 진료의 규모 및 추이 파악은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료비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의약품 사용 및 비용에 대한 자료로서 의약품 정책 수립에 필요한 비급여의약품 비용, 추정 의약품 사용 현황, 의약품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과 의약품의 급여범위 변동, 의약품 가격변화 등과 같은 동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관련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해지, 보험료 및 보험금 등에 관한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및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자료가 생성된다. 이러한 정보는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정도와 역선택 여부, 민간의료보험가입 증가로 인한 공보험의 재정건전성 또는 의료이용 형평성 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간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패널 자료의 구축을 통하여 빈곤이나 상대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한국의료패널은 다빈도 상병에서 의료이용패턴 및 의료제공패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충족 의료요구와 비용 규모를

파악하여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현안에 대한 부가설문을 시의적절하게 개발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정책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향후 의료제도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순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훈,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과 시사점: 가구패널조사와 국제비교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 위킹페이퍼 시리즈, 1997.
- 강은정 · 남정자 · 최은진 외,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면접조사 및 보건 의식행태조사 진행보고서,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강은정 · 최은진 · 송현중 외,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총괄』,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금재호, 고용관련 패널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금재호, 패널예비조사의 목적과 내용,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금재호,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연구원, 1998.
- 김미곤 등, 2006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 남궁평, 표본조사설계와 분석, 도서출판 탐진, 2007.
- 남정자 · 송현동 · 이계오, 200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및 표본설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박수미 외,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서남규 외, 2007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성재민, 응답자 사례금, 조사에 영향이 있는가, 노동리뷰, 통권10호, 2007.

- 신동균,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 워킹페이퍼 시리즈, 1998.
- 신선옥,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응답자 태도에 면접원이 미치는 효과, 노동리뷰, 1월호, 2008.
- 신현구, 고령화연구패널 예비조사의 시행 및 주요 결과, 노동리뷰, 8월호(통권 20호), 2006.
- 어수봉, 고용구조 및 청년패널의 조사 설계, 중앙고용정보원, 2002.
- 유근춘 등,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2005)-의료이용』,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삼식·정경희·신인철 등, 「인구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삼식·정경희·신인철 등, 인구패널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상호, 서구 주요패널의 조사전략 변화와 시사점, 노동리뷰, 4월호(통권 16호), 2006.
- 이상호, 한국노동패널(KLIPS)의 표본이탈분석, 노동리뷰, 2005.
- 정기택,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발전추세와 주요 정책 이슈, 손해보험 2004; 2월호, 7-17.
- 정영호·고숙자·정지영, 건강증진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7.
- 정영호·서미경·이종태 등,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정영호 · 허순임 · 박실비아 외, 한국의료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정형선 · 정영호 · 김정희, 의료비패널구축을 위한 준비 · 기초연구, 보건복지부, 2006.

통계청, 가계조사 지침서, 2006.

통계청, 가계조사항목분류집, 2006.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05.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팀, 고령자패널조사 제1차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와 조사표, 2005.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3차 예비조사 실시 보고서와 설문지, 2006.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연구패널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면접원 안내서, 2006.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2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조사(2004) 사용자 지침서, 2005.

AHRQ, MEPS HC-089: 2004 Full Year Consolidated Data File, 2006.

Elliot H, The use of diaries in sociological research on health experience, Sociological Research Onlin, vol2, no2, 1997.

Evans RG & Stoddart GL, "Producing health, consuming health care", Soc. Sci. Med, 1990; 31(12):1347~1363.

Unsworth K, Clegg C, The use of diary methods to study new questions in employee innovation, Institute of Work Psychology. University of Sheffield, 2004.

Zunnernan DH, Wieder D, The diary-interview method, Urban life, vol5, no4 pp479-498, 1977.

www.meps.ahrq.gov(미국의 MEPS)

www.iser.essex.ac.uk/ulsc/bhps(영국의 BHPS)

www.kli.re.kr(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및 고령자연구패널)

부록

⋮

부록 1: 설문내용 검토사항 / 99

부록 2: 조사구 목록 / 104

부록 3: 조사구별 완료율 및 미완사유 / 115

부록 4: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 125

부록 5: 조사지침서 / 187

부록 6: 조사진행 관련 자료 / 233



〈부록 1: 설문내용 검토사항〉

부록 1-1. 종합적 검토사항 및 개선사항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조사기간	- 6개월이라는 설문주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	- 조사는 recall bias를 최소화하고 record 유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원이 허락하는 한 자주 방문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수집에 용이, 자료제공은 1년 단위와 같이 분석에 친근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공개 및 데이터 활용도	- 이용횟수에 대한 변수를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셋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	- 동일질병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은 자문을 구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연구자가 가공하기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그 과정이 번거롭거나 분석할 모든 연구자들이 동일하게 거칠 가능성이 높은 step은 제공시 미리 그 과정을 거쳐 설문항목에서의 형태와 달리 추가변수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명과 진단명	- 주요증상 및 진단명 등을 ICD-10으로 분류	-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청구자료에 있는 진단명으로 연결 가능, ICD-10의 활용방안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단명과 증상명을 환자인지방식으로 조사
척도	- 설문지 내 만족도 문항을 5점 척도로 일관성 있게 구성	-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보통’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보통’에 응답이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함
한방설문위치	- 연구자들의 혼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한방관련 설문문위치조정	- 한방관련 설문을 따로 구성하여 부가설문의 형태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 검토 중, 재교육에 대한 조사원의 혼선여지와 응답자의 설문분량 및 부담감 증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
의약품	- 지난 6개월간 이용한 의약품 전체의 구입횟수와 지출액수가 누락	-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과 ‘3개월 이상 생활/건강 증진관련 의약품 이용’으로 구분하여 복용의약품 종류에 따라 관련 내용 설문함
임신 및 출산	- ‘출산준비검진’ 관련 설문 필요, 지출비용에 따른 영유아의 건강상태변화 파악	-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겠으나 분석 가능한 정도의 응답이 도출될지 의문, 조사진행시 정기산전진찰 여부와 빈도만 확인
의료공급자	- 공급자 영역에 대한 조사 가능성	-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됨
노인장기 요양제도	- 재가서비스 이용횟수와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	- 응답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고, 데이터 양이 빈약하여 기존의 설문대로 유지
패널화	- ‘검진’, ‘한방선호도’, ‘의사인지도’는 패널화 할 필요 없음	- ‘검진’, ‘한방선호도’, ‘의사인지도’의 설문 재배치 검토, ‘의사인지도’의 경우 ‘만족도’ 항목과 중복되는 부분 검토 후 재정리
조사방법	- 설문분량에 대한 응답자의 부담경감	

부록 1-2. 문항별 검토사항 및 개선사항

▷ 가구원 일반사항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ID4	- 법적으로 ‘호주’의 개념이 사라졌고, 가구주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응답자가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가구주’ 대신 응답자 기준으로 조사	- 조사진행시 ‘가구를 대표하거나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가구주의 개념을 명확히 함
	- 응답범주를 보다 상세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진행시 가구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문
	- 가구형태 확인필요	-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세대구성 문항추가
ID5	- 혼인상태의 비해당은 현행 민법 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결혼경험 여부와 현재 배우자 상태로 구분	- 조사진행시 ‘①미혼’과 ‘⑥비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⑤결혼한 적 없음’으로 대체

▷ 경제활동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EA1	- ‘경제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	- 전문 조사원들이 경제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므로 조사진행시 경제활동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EA2	- 경제활동 지위에 대한 문항은 분기형 설문으로 2단계 조사 필요	- 조사진행시 ‘종사상 지위’와 ‘근무시간 형태’로 구분하여 설문
EA5	- 자가평가 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은 활용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구체적으로 수정 제안	- 조사진행시 산업분류(소속된 기관/업체 기준)와 직업명, 직종(담당업무/보직 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문하도록 함

▷ 소득 및 연금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IN2	- 소득에 대한 설명과 기간설정	- 조사진행시 경제활동 구분에 따라 소득액 기재, 2007년 01월 01일~12월 31일까지의 기간설정
	- 빈곤층만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빈곤여부 확인	- 응답자의 거부반응을 감안하여 조사기간 이전의 수급경험은 묻지 않되, 패널조사이므로 조사시점 이후의 수급경험과 이탈은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의료비 지출관련 생활비 조사필요	- 조사진행시 생활비지출 섹션 추가하여 설문

▷ 민간보험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P1.2	- 민영건강보험 가입기간 추가	- 조사진행시 ‘현재까지 불입기간’ 문항추가
P2.1 & 3.1	- 수령보험금 구분항목을 정액제/정률제 아닌 정액형/실손형으로 수정 - 수령보험금과 의료이용 파트의 진료비 간 연계 가능여부	- 자문의견 의견 반영하여 조사진행시 수정 - 조사진행시 병의원 이용연도, 월 기재
P5.1	- 해약의사 이유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좋아져서’ 보기추가	- 조사진행시 ‘⑥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민간의료보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보기항목 추가

▷ 입원서비스 이용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HS5	- 입원기간이 양방과 한방을 모두 포함하는지,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고려 - 초기 첫 조사시점에서 입원 중인 경우	- 의료이용 내용에 따라 반복설문 하므로 구분가능, 양한방 협진의 경우 가능한 양방과 한방 나누어 기입할 수 있도록 조사원에게 지침전달 - 조사시점 이전의 입원시작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기입란’ 추가, 조사시점에서 입원 중인 경우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더라도 다음 조사시점에서 입원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년 단위 입원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형태임
HS6.2	- 의료기관 종류는 환자나 보호자가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받은 조사원이 따로 기재	- 조사원들에게 의료기관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조사진행시 조사원들에게 요양기관코드 배포
HS7	- 한방병의원 입원을 구분하여 설문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HS7)한방병원 입원이유와 HS8)양방병원 입원이유 모두 질문하는 것은 비슷한 성격의 문항이 중복되는 것 아닌지	- 한방에서는 질병만으로 입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가정하여 양방과 달리 의료이용에 대한 스펙트럼을 확대하여 작성, 조사진행시 설문시간 단축을 위해 양방과 한방 입원을 통합하여 설문하고 의료기관 종류에서 양한방 여부만 확인
HS7.1	- HS7.1)한방병원 선택이유와 HS13) 양방병원 선택이유에 대한 기준이 동일하지 않음	- HS7.1은 ‘한방’선택 이유에 대한 질문이며, HS13은 실제 이용한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한 기준에 대한 질문으로 추상차원이 다른 질문임
HS7.5 & 7.6	- 연구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 모호함	- 국민의료비 개념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지출은 제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 수집 가능한 형태로 설계, 의료비를 많이 발생시키는 한방 입원항목의 유형과 관련된 보기들이므로 유지필요
HS8.1	- 사고/중독 장소와 유형의 혼재	- 조사진행시 장소와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
HS8.2	- ‘불의의 사고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수정필요	- non-intentional과 intentional의 wording이 충분한 의미 전달을 못하는 것으로 보임, ‘우연한 사고나 중독’으로 수정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HS8.3	- 재입원 이유 중 ‘③충분히 치료되지 않아서’는 환자의 주관적 판단을 묻는 항목인지, 합병증 때문인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움	- 환자의 주관적 인지방식에 따라 응답하도록 설계, 치료 후 좋아지는 경과가 계속되어 퇴원하였으나 퇴원 후 호전경향이 회복으로 전진하지 못하여 다시 입원한 경우를 일컬음
HS9	- 증상과 통증에 대한 보기가 혼재, 특정 기준이 있는지	- 임상경험을 토대로 다빈도 답변으로 예상되는 것을 객관식으로 추려서 코딩의 편의성을 높임, 보기문항 작성에 의료연구회 및 가정의학과 학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함
HS11	- 입원경로 보기 구분이 불분명함	- ①이나 ②는 환자 본인이 입원한 병원의 외래나 응급실에서 직접 본인이 찾아가 진료 받고 난 후 입원한 경우, ④는 진료받은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⑤는 입원이 결정되었지만 병실이 없어 대기한 경우임, 조사진행시 대기여부와 대기일수에 대해서만 설문
HS17.1	- 불필요 치료를 분명하게 질문하는 것이 타당, ‘③모르겠다’ 항목추가	- 과잉진료여부를 묻는 질문이므로 ‘귀하께서 느끼시기에 불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여기십니까?’로 워딩 수정, ‘9.확실하지 않다’ 추가
HS18	- 선택진료 자체에 대한 문항인지 선택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인지	- 선택진료의 불합리성에 관한 질문임, 조사진행시 선택진료 권유유무와 선택진료유무를 구분하여 설문
HS18.1	- 선택진료 결정자에 대해 모호한 보기항목이 많음	- ③은 병원측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경우, ④는 병원측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반대하지 못하고 수용한 경우
HS21.2	- 간병인 소득손실에 대한 부분을 2차 자료와 연계하는 방법	- 직접비용만 상계하는 것으로 설계하였기에 관심 있는 연구자가 머지하여 사용할 것을 권함
	- 측정오차가 큰 변수이므로 부가설문을 통해 측정	- 설문분량이 많아 관련 문항 축약하는 방안 검토 중, 조사진행시 관련 문항 삭제
HS27	- 환자인지 및 조사가능성 검토	- 총 수납금액으로 설문조정
HS28	- 의료비 재원의 보기항목 수정, primary source와 secondary source의 구분이 모호	-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료비 재원을 구체화하여 민간의료보험 부분에서 따로 설문 - 설문의도에 따라 설문문항 및 보기항목 조정

▷ 외래서비스 이용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OP7	- 진료과목에 대한 내용을 코드화하여 부록에 추가	- 진단명과 진단코드로 설문내용 변경, 조사진행시 조사원에게 관련 코드목록 배포

▷ 접근성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AC1	- ‘미충족 의료’가 주관적 의료를 의미하는지, 명료한 표현필요	- ‘필요한 의료서비스’에서 필요주체는 ‘본인’이며, 명확한 설명은 조사원 지침서에 포함
AC2	- ‘①경제적 이유’를 ‘치료비가 비쌌 것 같아 못 가는 경우’와 ‘당장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로 구분 - ‘⑤증세가 경미해서’ 이용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간주할 수 있는지	-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 외에는 ③,④,⑤가 다수의 응답차지, 교통비가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동불편이 더 큰 영향을 줌 - 예상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간이 없어서와 달리 ‘이 정도면 안 가도 될 것’을 의미
AC4	- 미국, 캐나다, 호주와 건강보험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설문할 필요가 있는지	- MEPS를 기초로 설문문항 고안, 우리나라의 경우 필요한 처방약 구하지 못하는 경우 거의 없으므로 예비조사 결과확인 후 조사진행시 설문문항에서 제외
AC10	- 긍정형 질문인 경우와 부정형 질문인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 긍정표현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정적 표현을 사용함
AC11	- 치료의 지연에 대한 부분, 앞에서 질문한 내용과 잘 구분되지 않음	- 미충족 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치료의 지연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AC15	- 의료기관 형태를 정확하게 명기하거나 차별(1,2,3차)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는 작업 필요	- 설문분량 조정으로 해당 문항은 누락되었으나 조사진행시 의료기관 종류를 확인하여 기타 포함 12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문
AC16	- ‘①잘 아프지 않다’는 보기는 삭제 고려	- 자문위원 의견 반영하여 삭제

▷ 만족도에 대한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개선안
SA3	- 대기시간에 대한 부분은 대기행렬이라는 점에서 waiting list와 많이 다를 것이므로 의도와 달리 전반적 시스템에 관한 옳은 응답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 복수응답 허용하여 순위를 매긴다면 응답이 편중되는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	-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중인 부분은 본 조사에서 묻지 않기로 함, 예비조사 결과 및 설문문항 검토 후 설문주기 설정하고자 함
SA4	- ‘④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누락	
SA8~SA11	- 삭제 가능성 검토	

〈부록 2: 조사구 목록〉

부록 2-1: 2차 예비조사 조사구 목록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1	1101070	039-1	서울	종로구	송인동
2	1104067	105-1	서울	성동구	성수2가동
3	1106072	056-1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4	1108065	039-1	서울	성북구	정릉4동
5	1109067	077-1	서울	강북구	수유5동
6	1110055	043-A	서울	도봉구	방학1동
7	1113057	073-1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8	1117054	026-A	서울	구로구	구로3동
9	1120069	005-A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10	1121064	101-1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1	1124065	130-1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12	1125055	016-A	서울	강동구	고덕1동
13	2102064	053-1	부산	서구	충무동
14	2105072	021-1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15	2106062	086-A	부산	동래구	안락2동
16	2107067	012-1	부산	남구	문현2동
17	2109067	176-A	부산	해운대구	좌 2동
18	2110058	082-1	부산	사하구	신평1동
19	2113061	002-1	부산	연제구	연산7동
20	2115053	120-A	부산	사상구	모라2동
21	2303055	011-1	인천	남구	용현1동
22	2308063	052-A	인천	서구	가좌2동
23	2403053	024-1	광주	남구	방림2동
24	2501067	027-1	대전	동구	성남2동
25	2503058	069-A	대전	서구	삼천동
26	2503065	121-1	대전	서구	갈마2동
27	2505053	040-A	대전	대덕구	회덕동
28	2602051	059-1	울산	남구	신정1동
29	2603059	075-A	울산	동구	남목2동
30	3101253	121-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31	3103059	010-1	경기	의정부시	송산1동
32	3104262	043-A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33	3105157	091-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34	3109152	203-1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
35	3110456	172-A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36	3404032	014-A	충남	아산시	배방면
37	3404054	038-A	충남	아산시	온양4동
38	3431011	050-1	충남	금산군	금산읍
39	3501262	015-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40	3501263	039-A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41	3503072	106-A	전북	익산시	어양동
42	3537033	024-1	전북	고창군	무장면
43	3601075	002-1	전남	목포시	옥암동
44	3603066	069-A	전남	순천시	왕조1동
45	3636031	001-1	전남	보성군	노동면
46	3645031	016-1	전남	장성군	진원면
47	3701260	076-1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8	3702012	027-A	경북	경주시	안강읍
49	3705070	088-1	경북	구미시	인동동
50	3708033	020-1	경북	상주시	낙동면
51	3802055	003-1	경남	마산시	반월동
52	3802071	057-A	경남	마산시	양덕1동
53	3805054	021-1	경남	통영시	정량동
54	3806031	041-A	경남	사천시	정동면
55	3808053	022-A	경남	밀양시	교동
56	3810012	123-1	경남	양산시	물금읍
57	3839036	004-1	경남	거창군	마리면
58	2207068	045-A	대구	달서구	도원동*
59	2202059	064-1	대구	동구	신천4동*

부록 2-2: 가구유치조사 조사구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1	1101055	054-1	서울	종로구	부암동
2	1104057	028-A	서울	성동구	행당2동
3	1104058	047-1	서울	성동구	응봉동
4	1105053	126-1	서울	광진구	화양동
5	1105062	029-1	서울	광진구	구의3동
6	1106055	071-A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7	1106058	050-A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8	1106061	031-1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9	1107051	004-1	서울	중랑구	면목1동
10	1107069	013-A	서울	중랑구	신내1동
11	1108079	141-A	서울	성북구	석관1동
12	1109054	004-1	서울	강북구	미아4동
13	1109064	080-1	서울	강북구	수유2동
14	1110055	038-1	서울	도봉구	방학1동
15	1110060	064-A	서울	도봉구	창2동
16	1111056	074-A	서울	노원구	공릉2동
17	1111063	072-A	서울	노원구	중계3동
18	1111065	124-A	서울	노원구	상계1동
19	1111073	042-A	서울	노원구	상계9동
20	1112054	056-1	서울	은평구	불광3동
21	1112057	107-1	서울	은평구	구산동
22	1112063	029-1	서울	은평구	역촌1동
23	1113051	013-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동
24	1113067	001-1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25	1113071	063-A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26	1114052	006-1	서울	마포구	아현2동
27	1114069	068-1	서울	마포구	동교동
28	1115052	068-1	서울	양천구	목2동
29	1115055	008-A	서울	양천구	목5동
30	1115055	099-A	서울	양천구	목5동
31	1116051	101-A	서울	강서구	염창동
32	1116055	039-1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33	1116055	153-1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34	1116062	008-1	서울	강서구	화곡7동
35	1116070	058-A	서울	강서구	방화1동
36	1117064	142-1	서울	구로구	개봉2동
37	1117065	004-A	서울	구로구	개봉3동
38	1117065	091-1	서울	구로구	개봉3동
39	1118055	038-1	서울	금천구	독산4동
40	1119056	151-A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41	1120052	074-1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42	1120052	116-1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43	1120063	040-1	서울	동작구	사당1동
44	1120065	141-A	서울	동작구	사당3동
45	1121055	077-1	서울	관악구	봉천4동
46	1121076	005-1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47	1121077	035-A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48	1122064	092-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49	1123001	099-1	서울	강남구	논현2동
50	1123002	033-A	서울	강남구	압구정2동
51	1123057	038-1	서울	강남구	청담2동
52	1123064	055-A	서울	강남구	역삼1동
53	1124054	163-A	서울	송파구	거여2동
54	1124061	053-1	서울	송파구	송파1동
55	1124068	095-1	서울	송파구	문정1동
56	1125070	086-A	서울	강동구	둔촌1동
57	2103052	009-1	부산	동구	초량2동
58	2104059	036-1	부산	영도구	봉래1동
59	2105054	013-A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60	2105057	057-1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61	2105076	046-A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62	2105077	012-1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63	2106060	049-1	부산	동래구	사직3동
64	2107057	150-1	부산	남구	용호1동
65	2108052	017-1	부산	북구	구포2동
66	2108054	025-A	부산	북구	금곡동
67	2108061	092-A	부산	북구	만덕3동
68	2109056	003-1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69	2109064	066-A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70	2109070	188-A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71	2110052	017-1	부산	사하구	괴정2동
72	2110062	062-A	부산	사하구	다대1동
73	2110065	042-1	부산	사하구	감천1동
74	2113051	015-A	부산	연제구	거제1동
75	2113051	067-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76	2114051	078-1	부산	수영구	남천1동
77	2114060	069-A	부산	수영구	민락동
78	2115053	076-1	부산	사상구	모라2동
79	2131011	067-A	부산	기장군	기장읍
80	2131011	072-1	부산	기장군	기장읍
81	2201064	025-1	대구	중구	남산1동
82	2201066	014-A	대구	중구	남산3동
83	2202059	064-1	대구	동구	신천4동
84	2202060	048-1	대구	동구	효목1동
85	2202071	095-1	대구	동구	공산동
86	2203055	077-1	대구	서구	비산2·3동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87	2203066	009-1	대구	서구	상중이동
88	2203066	084-A	대구	서구	상중이동
89	2204056	021-1	대구	남구	대명1동
90	2204058	092-1	대구	남구	대명3동
91	2205058	038-1	대구	북구	노원1·2동
92	2205076	047-1	대구	북구	읍내동
93	2205076	091-A	대구	북구	읍내동
94	2205078	117-A	대구	북구	태전1동
95	2206059	027-1	대구	수성구	수성2·3가동
96	2206060	039-A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97	2206063	024-1	대구	수성구	중동
98	2206073	003-1	대구	수성구	고산3동
99	2207056	004-A	대구	달서구	본리동
100	2207064	111-1	대구	달서구	진천동
101	2207066	025-A	대구	달서구	상인2동
102	2207068	045-A	대구	달서구	도원동
103	2231011	032-A	대구	달성군	화원읍
104	2231033	015-1	대구	달성군	옥포면
105	2302055	041-A	인천	동구	송현1·2동
106	2302055	067-1	인천	동구	송현1·2동
107	2304052	012-A	인천	연수구	선학동
108	2304057	035-A	인천	연수구	동춘1동
109	2304059	091-A	인천	연수구	동춘3동
110	2305057	132-1	인천	남동구	간석3동
111	2305058	102-1	인천	남동구	간석4동
112	2305064	152-A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13	2306053	042-1	인천	부평구	부평3동
114	2306062	078-A	인천	부평구	청천2동
115	2306063	020-1	인천	부평구	갈산1동
116	2306064	122-A	인천	부평구	갈산2동
117	2306071	002-A	인천	부평구	십정2동
118	2307052	172-1	인천	계양구	효성2동
119	2307054	100-1	인천	계양구	계산2동
120	2307058	166-A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
121	2308053	141-1	인천	서구	연희동
122	2308064	095-A	인천	서구	가좌3동
123	2331011	101-A	인천	강화군	강화읍
124	2331035	021-1	인천	강화군	양도면
125	2331037	004-1	인천	강화군	하점면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126	2401059	050-1	광주	동구	산수1동
127	2402063	045-A	광주	서구	화정4동
128	2403061	045-A	광주	남구	월산5동
129	2404053	038-1	광주	북구	중흥3동
130	2404060	041-A	광주	북구	운암3동
131	2404071	021-A	광주	북구	매곡동
132	2404077	013-1	광주	북구	건국동
133	2405058	029-A	광주	광산구	우산동
134	2405071	070-A	광주	광산구	운남동
135	2501056	015-1	대전	동구	판암2동
136	2502051	064-A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137	2502060	050-1	대전	중구	용두동
138	2503054	018-1	대전	서구	정림동
139	2503060	183-A	대전	서구	둔산2동
140	2503070	071-A	대전	서구	가수원동
141	2503071	003-1	대전	서구	기성동
142	2504058	094-A	대전	유성구	구즉동
143	2505053	004-1	대전	대덕구	회덕동
144	2505058	018-A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45	2601061	140-1	울산	중구	다운동
146	2602059	061-A	울산	남구	무거2동
147	2603051	044-A	울산	동구	방어동
148	2604051	003-A	울산	북구	농소1동
149	2604053	106-1	울산	북구	농소3동
150	2604059	063-A	울산	북구	염포동
151	2631011	085-1	울산	울주군	온산읍
152	2631013	020-A	울산	울주군	온양읍
153	3101154	110-1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54	3101157	039-A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155	3101261	100-A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156	3101352	009-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향동
157	3101451	020-A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158	3101454	025-A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159	3102158	008-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160	3102162	012-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161	3102260	008-1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62	3102362	004-A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163	3102370	039-A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2동
164	3103056	033-A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165	3103061	105-1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166	3103065	058-A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167	3104164	069-A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68	3104257	063-1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69	3104260	096-A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170	3105157	012-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171	3105163	097-A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72	3105170	053-A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173	3105260	080-1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174	3105354	169-1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본동
175	3105357	077-1	경기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176	3106054	020-A	경기	광명시	광명4동
177	3106054	058-1	경기	광명시	광명4동
178	3106062	080-A	경기	광명시	하안1동
179	3106065	048-A	경기	광명시	하안4동
180	3107012	059-A	경기	평택시	안중읍
181	3107033	048-1	경기	평택시	고덕면
182	3107051	092-1	경기	평택시	중앙동
183	3107064	014-1	경기	평택시	세교동
184	3108052	047-A	경기	동두천시	생연2동
185	3109154	114-1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186	3109173	024-A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187	3109259	118-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188	3109273	167-A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189	3109273	182-A	경기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190	3110161	080-1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191	3110164	017-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동
192	3110165	050-A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1동
193	3110356	022-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194	3110356	107-A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195	3110454	174-A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96	3112052	065-A	경기	구리시	동구동
197	3112053	044-1	경기	구리시	인창동
198	3113011	291-A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199	3113015	142-A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200	3113032	109-1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201	3113055	020-A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202	3114052	190-1	경기	오산시	대원동
203	3115052	054-1	경기	시흥시	신천동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204	3115057	138-1	경기	시흥시	군자동
205	3115062	016-A	경기	시흥시	정왕3동
206	3115062	078-A	경기	시흥시	정왕 3동
207	3116058	115-A	경기	군포시	오금동
208	3117052	001-1	경기	의왕시	부곡동
209	3119152	013-1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
210	3119253	031-A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211	3119256	088-A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212	3119354	139-1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213	3119357	038-A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214	3121054	061-A	경기	이천시	증포동
215	3122011	140-A	경기	안성시	공도읍
216	3122032	009-1	경기	안성시	금광면
217	3122032	022-1	경기	안성시	금광면
218	3123054	094-A	경기	김포시	풍무동
219	3124011	301-A	경기	화성시	태안읍
220	3124013	022-1	경기	화성시	우정읍
221	3124043	055-A	경기	화성시	정남면
222	3125013	108-1	경기	광주시	실촌읍
223	3125051	081-1	경기	광주시	경안동
224	3125051	123-A	경기	광주시	경안동
225	3137032	052-1	경기	가평군	청평면
226	3137032	066-1	경기	가평군	청평면
227	3201062	057-1	강원	춘천시	후평3동
228	3201066	182-A	강원	춘천시	석사동
229	3202001	013-1	강원	원주시	태장1동
230	3202058	014-A	강원	원주시	학성동
231	3202067	004-1	강원	원주시	무실동
232	3203061	013-A	강원	강릉시	내곡동
233	3204051	107-1	강원	동해시	천곡동
234	3206056	063-A	강원	속초시	교동
235	3231011	126-A	강원	홍천군	홍천읍
236	3238033	002-1	강원	양구군	방산면
237	3240031	003-1	강원	고성군	현내면
238	3301166	030-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239	3301168	029-A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240	3301259	074-A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화·개신·죽림동
241	3301260	206-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42	3302055	051-A	충북	충주시	용산동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243	3302055	052-A	충북	충주시	용산동
244	3302057	064-1	충북	충주시	문화동
245	3303067	057-A	충북	제천시	신백,두학동
246	3331042	052-1	충북	청원군	오창면
247	3335031	025-1	충북	진천군	덕산면
248	3337031	009-1	충북	음성군	소이면
249	3339014	071-1	충북	증평군	증평읍
250	3401012	006-1	충남	천안시	성거읍
251	3401060	088-A	충남	천안시	쌍용2동
252	3401064	002-1	충남	천안시	부성동
253	3401065	087-A	충남	천안시	쌍용3동
254	3403034	013-1	충남	보령시	천북면
255	3404056	031-A	충남	아산시	온양6동
256	3405037	030-1	충남	서산시	운산면
257	3405053	019-1	충남	서산시	활성동
258	3431035	017-1	충남	금산군	남일면
259	3433044	013-1	충남	부여군	석성면
260	3436031	016-1	충남	홍성군	홍북면
261	3439011	072-1	충남	당진군	당진읍
262	3501162	032-A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263	3501168	070-A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264	3501176	088-1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265	3501261	071-A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266	3502036	010-1	전북	군산시	개정면
267	3502051	020-1	전북	군산시	해신동
268	3502067	035-A	전북	군산시	구암동
269	3503057	051A	전북	익산시	동산동
270	3505011	019-1	전북	남원시	운봉읍
271	3506051	039-1	전북	김제시	요촌동
272	3531012	103-A	전북	완주군	봉동읍
273	3531037	013-1	전북	완주군	비봉면
274	3537011	014-1	전북	고창군	고창읍
275	3601059	013-1	전남	목포시	남양동
276	3602057	008-1	전남	여수시	대교동
277	3602058	050-A	전남	여수시	국동
278	3603037	118-1	전남	순천시	해룡면
279	3603057	089-A	전남	순천시	덕연동
280	3603060	001-1	전남	순천시	저전동
281	3606011	009-A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282	3606054	038-A	전남	광양시	광영동
283	3631032	015-1	전남	담양군	고서면
284	3635035	036-1	전남	고흥군	포두면
285	3637042	006-1	전남	화순군	동면
286	3640035	022-1	전남	해남군	북평면
287	3642034	024-1	전남	무안군	현경면
288	3645033	008-1	전남	장성군	동화면
289	3701111	075-1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290	3701211	179-A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291	3702013	023-1	경북	경주시	건천읍
292	3702058	012-1	경북	경주시	월성동
293	3702062	012-A	경북	경주시	용강동
294	3705055	018-A	경북	구미시	도량동
295	3705060	064-1	경북	구미시	형곡2동
296	3706053	032-A	경북	영주시	하망동
297	3707051	155-1	경북	영천시	동부동
298	3708046	010-1	경북	상주시	이안면
299	3732011	017-1	경북	의성군	의성읍
300	3735011	049-1	경북	영덕군	영덕읍
301	3737011	055-A	경북	고령군	고령읍
302	3738011	041-1	경북	성주군	성주읍
303	3740038	006-1	경북	예천군	용궁면
304	3741011	020-1	경북	봉화군	봉화읍
305	3801052	007-A	경남	창원시	팔룡동
306	3801059	169-A	경남	창원시	사파동
307	3802011	274-A	경남	마산시	내서읍
308	3802060	015-1	경남	마산시	성호동
309	3802074	068-1	경남	마산시	합성2동
310	3803045	003-1	경남	진주시	수곡면
311	3803065	081-1	경남	진주시	상평동
312	3803069	010-A	경남	진주시	이현동
313	3804066	008-1	경남	진해시	웅동2동
314	3806055	060-A	경남	사천시	벌룡동
315	3807031	482-A	경남	김해시	장유면
316	3807053	004-1	경남	김해시	부원동
317	3807059	118-A	경남	김해시	삼안동
318	3808011	044-1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319	3808054	053-1	경남	밀양시	삼문동
320	3810012	103-A	경남	양산시	물금읍

순번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조사구		
321	3833011	080-1	경남	창녕군	창녕읍
322	3835033	014-1	경남	남해군	삼동면
323	3838011	024-1	경남	함양군	함양읍
324	3840039	005-1	경남	합천군	청덕면
325	3901057	055-1	제주	제주시	용담1동
326	3901060	086-A	제주	제주시	화북동
327	3901064	021-1	제주	제주시	오라동
328	3902057	053-A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329	3902059	006-1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
330	3931014	064-1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331	3932013	017-1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332	3932013	050-A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부록 3: 조사구별 완료율 및 미완사유〉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사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1	서울	종로구	부암동	25	20	80.0	5	1	0	0	0	4	0	0	0
2	서울	종로구	충인동	9	7	77.8	2	0	0	0	0	2	0	0	0
3	서울	성동구	행당2동	25	17	68.0	8	2	0	1	0	5	0	0	0
4	서울	성동구	응봉동	26	18	69.2	8	0	1	0	0	7	0	0	0
5	서울	성동구	성수2가동	13	11	84.6	2	0	0	0	0	2	0	0	0
6	서울	광진구	화양동	22	14	63.6	8	1	0	1	0	4	2	0	0
7	서울	광진구	구의3동	25	21	84.0	4	0	0	0	0	2	2	0	0
8	서울	동대문구	계기2동	27	22	81.5	5	0	0	0	0	5	0	0	0
9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1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11	서울	동대문구	회경1동	11	10	90.9	1	0	0	0	0	1	0	0	0
12	서울	중랑구	면목1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13	서울	중랑구	신내1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4	서울	성북구	정릉4동	13	12	92.3	1	0	0	0	0	1	0	0	0
15	서울	성북구	석관1동	24	22	91.7	2	0	0	0	0	2	0	0	0
16	서울	강북구	미아4동	25	22	88.0	3	0	0	0	0	2	1	0	0
17	서울	강북구	수유2동	25	20	80.0	5	0	0	0	0	4	1	0	0
18	서울	강북구	수유5동	12	11	91.7	1	1	0	0	0	0	0	0	0
19	서울	도봉구	방학1동	25	19	76.0	6	1	0	1	0	2	2	0	0
20	서울	도봉구	방학1동	10	10	100.0	0	0	0	0	0	0	0	0	0
21	서울	도봉구	창2동	25	21	84.0	4	1	1	0	0	2	0	0	0
22	서울	노원구	공릉2동	25	18	72.0	7	2	0	1	0	4	0	0	0
23	서울	노원구	중계3동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24	서울	노원구	상계1동	25	20	80.0	5	0	0	0	0	5	0	0	0
25	서울	노원구	상계9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26	서울	은평구	불광3동	25	21	84.0	4	0	0	0	0	3	1	0	0
27	서울	은평구	구산동	26	25	96.2	1	0	0	0	0	1	0	0	0
28	서울	은평구	역촌1동	24	21	87.5	3	0	0	0	0	2	1	0	0
29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동	25	20	80.0	5	1	0	0	0	3	1	0	0
30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2	10	83.3	2	2	0	0	0	0	0	0	0
31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25	22	88.0	3	0	0	0	0	2	1	0	0
32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33	서울	마포구	아현2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34	서울	마포구	동교동	25	18	72.0	7	1	0	0	0	4	2	0	0
35	서울	양천구	목2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36	서울	양천구	목5동	20	16	80.0	4	0	0	0	0	4	0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사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37	서울	양천구	목5동	25	21	84.0	4	0	0	0	0	0	4	0	0
38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	21	84.0	4	0	0	0	0	3	1	0	0
39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5	19	76.0	6	0	0	0	0	2	4	0	0
40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7	21	77.8	6	0	0	0	0	5	1	0	0
41	서울	강서구	화곡7동	25	22	88.0	3	0	0	0	0	2	1	0	0
42	서울	강서구	방화7동	24	21	87.5	3	0	0	0	0	3	0	0	0
4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3	10	76.9	3	0	0	0	0	1	2	0	0
44	서울	구로구	개봉2동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45	서울	구로구	개봉3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46	서울	구로구	개봉3동	25	17	68.0	8	0	0	0	0	6	2	0	0
47	서울	금천구	독산4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48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	25	20	80.0	5	1	0	0	0	4	0	0	0
49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25	20	80.0	5	1	0	0	0	4	0	0	0
50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51	서울	동작구	사당1동	25	19	76.0	6	0	0	0	0	6	0	0	0
52	서울	동작구	사당3동	25	21	84.0	4	0	0	0	0	3	1	0	0
53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14	12	85.7	2	0	0	0	0	2	0	0	0
54	서울	관악구	봉천4동	25	22	88.0	3	0	1	0	0	2	0	0	0
55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9	9	100.0	0	0	0	0	0	0	0	0	0
56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26	24	92.3	2	0	0	0	0	2	0	0	0
57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58	서울	서초구	방배3동	25	20	80.0	5	0	0	0	0	4	1	0	0
59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5	18	72.0	7	1	1	0	0	4	1	0	0
60	서울	강남구	압구정2동	17	13	76.5	4	1	0	0	0	2	1	0	0
61	서울	강남구	청담2동	18	10	55.6	8	0	0	2	0	4	2	0	0
62	서울	강남구	역삼1동	24	18	75.0	6	0	0	0	1	4	1	0	0
63	서울	송파구	거여2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64	서울	송파구	송파1동	25	20	80.0	5	0	0	0	0	4	1	0	0
65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13	11	84.6	2	0	0	0	0	2	0	0	0
66	서울	송파구	문정1동	25	20	80.0	5	0	0	0	0	3	2	0	0
67	서울	강동구	고덕1동	11	8	72.7	3	0	0	0	0	3	0	0	0
68	서울	강동구	둔촌1동	25	21	84.0	4	0	1	0	0	3	0	0	0
69	부산	서구	충무동	13	10	76.9	3	0	0	0	0	3	0	0	0
70	부산	동구	초량2동	25	23	92.0	2	0	0	0	0	1	0	1	0
71	부산	영도구	봉래1동	25	24	96.0	1	0	0	1	0	0	0	0	0
72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25	22	88.0	3	0	0	0	0	2	1	0	0
73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5	22	88.0	3	1	0	0	0	2	0	0	0
74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11	10	90.9	1	0	0	0	0	0	0	1	0
75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26	24	92.3	2	0	0	0	0	2	0	0	0
76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24	20	83.3	4	0	0	0	0	4	0	0	0
77	부산	동래구	사직3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사유							
								장기 출타	늦은 귀가	무재 증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78	부산	동래구	안락2동	12	10	83.3	2	0	0	0	1	1	0	0	0
79	부산	남구	용호1동	25	16	64.0	9	1	1	0	0	6	1	0	0
80	부산	남구	문현2동	14	12	85.7	2	0	0	0	0	2	0	0	0
81	부산	북구	구포2동	26	24	92.3	2	0	0	0	0	2	0	0	0
82	부산	북구	금곡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83	부산	북구	만덕3동	25	21	84.0	4	1	0	0	0	3	0	0	0
84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85	부산	해운대구	제송1동	25	23	92.0	2	0	0	0	0	1	1	0	0
86	부산	해운대구	좌2동	12	9	75.0	3	0	0	1	0	1	1	0	0
87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	25	24	96.0	1	1	0	0	0	0	0	0	0
88	부산	사하구	괴정2동	25	22	88.0	3	1	0	0	0	2	0	0	0
89	부산	사하구	신평1동	12	11	91.7	1	0	0	0	0	0	1	0	0
90	부산	사하구	다대1동	26	22	84.6	4	2	0	0	0	1	1	0	0
91	부산	사하구	감천1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92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4	20	83.3	4	1	0	0	1	2	0	0	0
93	부산	연제구	거제1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94	부산	연제구	연산7동	13	9	69.2	4	1	0	0	0	1	2	0	0
95	부산	수영구	남천1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96	부산	수영구	민락동	25	20	80.0	5	1	0	0	0	4	0	0	0
97	부산	사상구	모라2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98	부산	사상구	모라2동	13	12	92.3	1	0	0	0	0	1	0	0	0
99	부산	기장군	기장읍	25	22	88.0	3	1	0	0	0	2	0	0	0
100	부산	기장군	기장읍	25	24	96.0	1	0	0	0	0	1	0	0	0
101	대구	중구	남산1동	24	19	79.2	5	2	0	1	0	1	1	0	0
102	대구	중구	남산3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103	대구	동구	신천4동	26	19	73.1	7	0	0	0	0	5	2	0	0
104	대구	동구	효목1동	25	20	80.0	5	1	0	0	0	4	0	0	0
105	대구	동구	공산동	27	26	96.3	1	1	0	0	0	0	0	0	0
106	대구	서구	비산2·3동	25	22	88.0	3	1	0	0	0	2	0	0	0
107	대구	서구	상중이동	25	24	96.0	1	0	0	0	0	0	1	0	0
108	대구	서구	상중이동	25	21	84.0	4	0	0	0	0	2	1	1	0
109	대구	남구	대명1동	25	19	76.0	6	1	0	0	0	5	0	0	0
110	대구	남구	대명3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111	대구	북구	노원1·2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112	대구	북구	읍내동	25	21	84.0	4	0	1	0	0	2	1	0	0
113	대구	북구	읍내동	25	23	92.0	2	0	0	0	0	1	1	0	0
114	대구	북구	태전1동	24	19	79.2	5	0	0	1	0	0	4	0	0
115	대구	수성구	수성2·3가동	25	23	92.0	2	0	0	0	0	1	1	0	0
116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117	대구	수성구	중동	25	23	92.0	2	1	0	0	0	1	0	0	0
118	대구	수성구	고산3동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사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119	대구	달서구	본리동	25	20	80.0	5	0	0	0	0	5	0	0	0
120	대구	달서구	진천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21	대구	달서구	상인2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22	대구	달서구	도원동	26	19	73.1	7	0	0	0	0	7	0	0	0
123	대구	달성군	화원읍	25	21	84.0	4	0	0	0	0	3	1	0	0
124	대구	달성군	옥포면	25	19	76.0	6	2	0	0	0	4	0	0	0
125	인천	동구	송현1.2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126	인천	동구	송현1.2동	25	22	88.0	3	0	0	1	0	2	0	0	0
127	인천	남구	용현1동	15	14	93.3	1	0	0	0	0	0	0	0	1
128	인천	연수구	선학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129	인천	연수구	동춘1동	25	20	80.0	5	0	1	0	0	4	0	0	0
130	인천	연수구	동춘3동	25	20	80.0	5	1	0	0	0	4	0	0	0
131	인천	남동구	간석3동	31	25	80.6	6	0	0	1	0	4	1	0	0
132	인천	남동구	간석4동	25	20	80.0	5	0	0	0	0	3	2	0	0
133	인천	남동구	만수6동	25	19	76.0	6	1	0	0	0	5	0	0	0
134	인천	부평구	부평3동	25	18	72.0	7	1	0	0	0	6	0	0	0
135	인천	부평구	청천2동	25	20	80.0	5	1	1	0	0	3	0	0	0
136	인천	부평구	갈산1동	25	23	92.0	2	0	0	0	0	1	1	0	0
137	인천	부평구	갈산2동	25	22	88.0	3	0	2	0	0	1	0	0	0
138	인천	부평구	십정2동	25	22	88.0	3	0	1	0	0	2	0	0	0
139	인천	계양구	효성2동	27	22	81.5	5	0	0	0	0	4	1	0	0
140	인천	계양구	계산2동	27	19	70.4	8	0	0	0	0	8	0	0	0
141	인천	계양구	작전서운동	23	20	87.0	3	0	0	1	0	2	0	0	0
142	인천	서구	연희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43	인천	서구	가좌2동	12	10	83.3	2	0	0	0	0	2	0	0	0
144	인천	서구	가좌3동	25	18	72.0	7	0	0	2	0	4	1	0	0
145	인천	강화군	강화읍	26	21	80.8	5	0	1	0	0	3	1	0	0
146	인천	강화군	양도면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47	인천	강화군	하점면	25	21	84.0	4	1	1	0	0	2	0	0	0
148	광주	동구	산수1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49	광주	서구	화정4동	25	18	72.0	7	1	1	0	0	5	0	0	0
150	광주	남구	방림2동	13	13	100.0	0	0	0	0	0	0	0	0	0
151	광주	남구	월산5동	25	20	80.0	5	2	0	0	0	3	0	0	0
152	광주	북구	중흥3동	25	20	80.0	5	0	0	0	0	3	1	1	0
153	광주	북구	운암3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54	광주	북구	매곡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155	광주	북구	건국동	25	20	80.0	5	1	0	1	0	3	0	0	0
156	광주	광산구	우산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157	광주	광산구	운남동	25	20	80.0	5	0	0	0	0	5	0	0	0
158	대전	동구	판암2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59	대전	동구	성남2동	13	12	92.3	1	0	0	0	0	1	0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사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160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25	18	72.0	7	2	1	0	0	4	0	0	0
161	대전	중구	용두동	23	21	91.3	2	0	0	0	0	2	0	0	0
162	대전	서구	정림동	25	19	76.0	6	0	0	0	0	5	1	0	0
163	대전	서구	삼천동	7	5	71.4	2	0	0	0	0	2	0	0	0
164	대전	서구	둔산2동	27	24	88.9	3	1	0	0	0	2	0	0	0
165	대전	서구	갈마2동	12	9	75.0	3	1	0	1	0	0	1	0	0
166	대전	서구	가수원동	25	22	88.0	3	0	0	1	0	2	0	0	0
167	대전	서구	기성동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168	대전	유성구	구죽동	25	23	92.0	2	1	0	0	0	1	0	0	0
169	대전	대덕구	회덕동	25	22	88.0	3	0	0	1	0	2	0	0	0
170	대전	대덕구	회덕동	13	11	84.6	2	1	0	0	0	1	0	0	0
171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5	20	80.0	5	0	0	0	0	4	1	0	0
172	울산	중구	다운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173	울산	남구	신정1동	12	9	75.0	3	2	0	0	0	1	0	0	0
174	울산	남구	무거2동	25	18	72.0	7	3	0	1	0	2	1	0	0
175	울산	동구	방어동	25	19	76.0	6	0	0	0	0	6	0	0	0
176	울산	동구	남목2동	14	6	42.9	8	0	0	0	0	6	2	0	0
177	울산	북구	농소1동	28	26	92.9	2	0	0	0	0	2	0	0	0
178	울산	북구	농소3동	22	20	90.9	2	1	0	0	0	1	0	0	0
179	울산	북구	염포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180	울산	울주군	온산읍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81	울산	울주군	온양읍	25	20	80.0	5	0	0	0	0	1	1	0	3
182	경기	수원시	파장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83	경기	수원시	정자2동	26	23	88.5	3	0	0	0	0	3	0	0	0
184	경기	수원시	세류2동	10	10	100.0	0	0	0	0	0	0	0	0	0
185	경기	수원시	곡선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186	경기	수원시	남향동	25	21	84.0	4	1	0	0	0	3	0	0	0
187	경기	수원시	매탄1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188	경기	수원시	매탄4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189	경기	성남시	수진1동	25	20	80.0	5	0	0	0	0	3	2	0	0
190	경기	성남시	양지동	25	20	80.0	5	0	0	1	0	3	1	0	0
191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192	경기	성남시	야탑1동	26	23	88.5	3	1	0	0	0	2	0	0	0
193	경기	성남시	금곡2동	26	19	73.1	7	0	0	1	0	6	0	0	0
194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24	23	95.8	1	0	0	0	0	1	0	0	0
195	경기	의정부시	송산1동	12	12	100.0	0	0	0	0	0	0	0	0	0
196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25	22	88.0	3	0	0	0	0	2	1	0	0
197	경기	의정부시	호원2동	26	25	96.2	1	0	0	0	0	1	0	0	0
198	경기	안양시	박달2동	25	17	68.0	8	2	1	0	0	4	1	0	0
199	경기	안양시	관양2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200	경기	안양시	평안동	25	18	72.0	7	0	0	0	0	5	2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료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201	경기	안양시	호계1동	13	12	92.3	1	0	0	0	0	1	0	0	0
202	경기	부천시	역곡1동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203	경기	부천시	역곡1동	13	12	92.3	1	0	0	0	0	0	1	0	0
204	경기	부천시	중1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205	경기	부천시	상3동	18	12	66.7	6	0	0	0	0	6	0	0	0
206	경기	부천시	송내2동	25	24	96.0	1	0	0	0	0	0	1	0	0
207	경기	부천시	고강본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08	경기	부천시	신흥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209	경기	광명시	광명4동	25	22	88.0	3	0	0	1	0	1	1	0	0
210	경기	광명시	광명4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211	경기	광명시	하안1동	26	24	92.3	2	0	0	0	0	1	1	0	0
212	경기	광명시	하안4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13	경기	평택시	안중읍	26	21	80.8	5	0	0	0	0	5	0	0	0
214	경기	평택시	고덕면	25	20	80.0	5	0	0	0	0	5	0	0	0
215	경기	평택시	중앙동	25	21	84.0	4	1	0	0	0	2	1	0	0
216	경기	평택시	세교동	25	18	72.0	7	0	1	0	0	4	2	0	0
217	경기	동두천시	생연2동	26	20	76.9	6	1	0	0	0	5	0	0	0
218	경기	안산시	사1동	12	9	75.0	3	0	0	0	0	1	2	0	0
219	경기	안산시	본오1동	25	19	76.0	6	0	0	1	0	2	3	0	0
220	경기	안산시	안산동	26	21	80.8	5	1	0	0	0	4	0	0	0
221	경기	안산시	와동	25	22	88.0	3	0	0	1	0	2	0	0	0
222	경기	안산시	호수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223	경기	안산시	호수동	26	24	92.3	2	0	0	0	0	2	0	0	0
224	경기	고양시	능곡동	25	21	84.0	4	0	1	0	0	3	0	0	0
225	경기	고양시	행주동	26	20	76.9	6	0	0	4	0	2	0	0	0
226	경기	고양시	행신1동	25	22	88.0	3	1	0	0	0	2	0	0	0
227	경기	고양시	마두1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28	경기	고양시	마두1동	26	21	80.8	5	0	0	0	0	4	1	0	0
229	경기	고양시	탄현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30	경기	고양시	주엽2동	10	10	100.0	0	0	0	0	0	0	0	0	0
231	경기	구리시	동구동	25	19	76.0	6	0	0	0	0	5	1	0	0
232	경기	구리시	인창동	25	20	80.0	5	0	0	0	0	5	0	0	0
233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26	22	84.6	4	0	0	0	0	4	0	0	0
234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25	21	84.0	4	1	0	0	0	2	1	0	0
235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25	19	76.0	6	3	0	0	0	2	1	0	0
236	경기	남양주시	지급동	25	19	76.0	6	0	0	0	0	5	0	0	1
237	경기	오산시	대원동	25	22	88.0	3	0	0	1	0	1	1	0	0
238	경기	시흥시	신천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39	경기	시흥시	군자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240	경기	시흥시	정왕3동	27	23	85.2	4	0	0	0	0	4	0	0	0
241	경기	시흥시	정왕3동	25	22	88.0	3	1	0	0	0	1	1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료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242	경기	군포시	오금동	25	21	84.0	4	0	0	1	0	3	0	0	0
243	경기	의왕시	부곡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44	경기	용인시	역삼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45	경기	용인시	상갈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246	경기	용인시	구성동	23	19	82.6	4	0	0	1	0	3	0	0	0
247	경기	용인시	죽전1동	26	19	73.1	7	1	0	0	0	6	0	0	0
248	경기	용인시	상현1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49	경기	이천시	증포동	25	23	92.0	2	0	0	0	0	1	1	0	0
250	경기	안성시	공도읍	24	22	91.7	2	1	0	0	0	1	0	0	0
251	경기	안성시	금광면	25	23	92.0	2	0	0	1	0	1	0	0	0
252	경기	안성시	금광면	27	27	100.0	0	0	0	0	0	0	0	0	0
253	경기	김포시	풍무동	25	20	80.0	5	0	0	0	0	5	0	0	0
254	경기	화성시	태안읍	25	24	96.0	1	0	0	0	0	0	1	0	0
255	경기	화성시	우정읍	24	22	91.7	2	1	0	0	0	1	0	0	0
256	경기	화성시	정남면	25	18	72.0	7	0	0	0	0	1	5	1	0
257	경기	광주시	실촌읍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58	경기	광주시	경안동	25	20	80.0	5	1	0	0	0	3	1	0	0
259	경기	광주시	경안동	24	19	79.2	5	0	0	0	0	4	1	0	0
260	경기	가평군	청평면	25	20	80.0	5	0	0	0	0	3	2	0	0
261	경기	가평군	청평면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62	강원	춘천시	후평3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63	강원	춘천시	석사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64	강원	원주시	태장1동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265	강원	원주시	학성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66	강원	원주시	무실동	25	19	76.0	6	1	0	0	0	4	1	0	0
267	강원	강릉시	내곡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68	강원	동해시	천곡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69	강원	속초시	교동	26	22	84.6	4	0	0	0	0	4	0	0	0
270	강원	홍천군	홍천읍	25	20	80.0	5	0	0	0	0	4	1	0	0
271	강원	양구군	방산면	25	23	92.0	2	0	0	0	0	1	1	0	0
272	강원	고성군	현내면	24	24	100.0	0	0	0	0	0	0	0	0	0
273	충북	청주시	용암1동	24	21	87.5	3	0	0	0	0	3	0	0	0
274	충북	청주시	용암2동	26	24	92.3	2	0	0	0	0	1	1	0	0
275	충북	청주시	개신동	25	22	88.0	3	1	0	0	0	2	0	0	0
276	충북	청주시	복대1동	25	16	64.0	9	0	0	1	0	4	4	0	0
277	충북	충주시	용산동	25	21	84.0	4	0	0	1	0	3	0	0	0
278	충북	충주시	용산동	25	21	84.0	4	1	0	0	0	2	0	0	1
279	충북	충주시	문화동	24	22	91.7	2	0	0	0	0	2	0	0	0
280	충북	제천시	신백.두학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281	충북	청원군	오창면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82	충북	진천군	덕산면	25	23	92.0	2	0	0	0	0	1	1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료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283	충북	음성군	소이면	25	21	84.0	4	2	0	0	0	1	0	0	1
284	충북	증평군	증평읍	25	22	88.0	3	0	0	0	0	2	1	0	0
285	충남	천안시	성거읍	25	24	96.0	1	0	0	0	0	1	0	0	0
286	충남	천안시	쌍용2동	25	17	68.0	8	1	0	0	0	4	3	0	0
287	충남	천안시	부성동	25	21	84.0	4	1	0	0	0	3	0	0	0
288	충남	천안시	쌍용3동	25	20	80.0	5	0	0	1	0	3	1	0	0
289	충남	보령시	천북면	25	20	80.0	5	0	0	0	0	2	2	1	0
290	충남	아산시	배방면	12	10	83.3	2	0	0	0	0	1	1	0	0
291	충남	아산시	온양4동	16	13	81.3	3	0	0	0	0	2	1	0	0
292	충남	아산시	온양6동	25	24	96.0	1	0	0	0	0	0	1	0	0
293	충남	서산시	운산면	25	24	96.0	1	0	0	0	0	0	0	1	0
294	충남	서산시	활성동	25	18	72.0	7	0	0	0	0	4	3	0	0
295	충남	금산군	금산읍	15	15	100.0	0	0	0	0	0	0	0	0	0
296	충남	금산군	남일면	25	22	88.0	3	1	0	0	0	1	0	0	1
297	충남	부여군	석성면	25	23	92.0	2	1	0	0	0	1	0	0	0
298	충남	홍성군	홍북면	26	23	88.5	3	0	0	0	0	3	0	0	0
299	충남	당진군	당진읍	25	20	80.0	5	0	0	1	0	3	1	0	0
300	전북	전주시	중화산1동	25	19	76.0	6	1	0	1	0	4	0	0	0
301	전북	전주시	삼천2동	25	20	80.0	5	1	0	0	0	4	0	0	0
302	전북	전주시	노송동	25	24	96.0	1	0	0	0	0	0	1	0	0
303	전북	전주시	우아1동	26	21	80.8	5	1	0	0	0	4	0	0	0
304	전북	전주시	우아2동	13	10	76.9	3	0	0	0	0	2	1	0	0
305	전북	전주시	호성동	13	11	84.6	2	0	0	0	0	2	0	0	0
306	전북	군산시	개정면	25	23	92.0	2	2	0	0	0	0	0	0	0
307	전북	군산시	해신동	25	21	84.0	3	1	0	0	0	2	0	0	0
308	전북	군산시	구암동	25	20	80.0	5	2	0	0	0	2	1	0	0
309	전북	익산시	동산동	26	20	76.9	6	1	1	0	0	4	0	0	0
310	전북	익산시	어양동	7	5	71.4	2	1	0	0	0	1	0	0	0
311	전북	남원시	운봉읍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312	전북	김제시	요촌동	25	21	84.0	4	1	0	0	0	3	0	0	0
313	전북	완주군	봉동읍	26	24	92.3	2	0	0	0	0	2	0	0	0
314	전북	완주군	비봉면	24	22	91.7	2	1	0	0	0	0	1	0	0
315	전북	고창군	고창읍	25	23	92.0	2	0	0	0	0	2	0	0	0
316	전북	고창군	무장면	15	14	93.3	1	0	0	0	1	0	0	0	0
317	전남	목포시	남양동	26	23	88.5	3	0	0	0	0	3	0	0	0
318	전남	목포시	옥암동	14	12	85.7	2	0	0	0	0	2	0	0	0
319	전남	여수시	대교동	25	22	88.0	3	0	0	0	0	2	1	0	0
320	전남	여수시	국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321	전남	순천시	해룡면	25	22	88.0	3	1	0	0	0	2	0	0	0
322	전남	순천시	덕연동	24	22	91.7	2	0	0	0	0	2	0	0	0
323	전남	순천시	저전동	26	25	96.2	1	0	0	0	0	1	0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료사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324	전남	순천시	왕조1동	14	12	85.7	2	0	0	0	0	2	0	0	0
325	전남	광양시	광양읍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326	전남	광양시	광영동	25	23	92.0	2	0	0	1	0	0	1	0	0
327	전남	담양군	고서면	25	24	96.0	1	1	0	0	0	0	0	0	0
328	전남	고흥군	포두면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329	전남	보성군	노동면	15	14	93.3	1	1	0	0	0	0	0	0	0
330	전남	화순군	동면	24	24	100.0	0	0	0	0	0	0	0	0	0
331	전남	해남군	북평면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332	전남	무안군	현경면	25	21	84.0	4	2	0	0	0	1	1	0	0
333	전남	장성군	진원면	16	16	100.0	0	0	0	0	0	0	0	0	0
334	전남	장성군	동화면	25	21	84.0	4	1	0	0	0	3	0	0	0
335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25	23	92.0	2	1	0	0	0	1	0	0	0
336	경북	포항시	홍해읍	25	23	92.0	2	0	0	0	0	2	0	0	0
337	경북	포항시	죽도2동	13	11	84.6	2	1	0	0	0	1	0	0	0
338	경북	경주시	안강읍	15	11	73.3	4	1	0	0	0	0	3	0	0
339	경북	경주시	건천읍	25	21	84.0	4	2	0	0	1	0	1	0	0
340	경북	경주시	월성동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341	경북	경주시	용강동	26	21	80.8	5	2	0	0	0	3	0	0	0
342	경북	구미시	도량동	25	22	88.0	3	0	0	0	0	2	1	0	0
343	경북	구미시	형곡2동	25	15	60.0	10	2	0	0	0	8	0	0	0
344	경북	구미시	인동동	15	14	93.3	1	0	0	0	0	1	0	0	0
345	경북	영주시	하망동	24	21	87.5	3	1	0	0	0	2	0	0	0
346	경북	영천시	동부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347	경북	상주시	낙동면	14	12	85.7	2	1	0	0	0	1	0	0	0
348	경북	상주시	이안면	25	22	88.0	3	1	0	0	0	2	0	0	0
349	경북	의성군	의성읍	25	23	92.0	2	1	0	0	0	1	0	0	0
350	경북	영덕군	영덕읍	25	23	92.0	2	0	0	0	0	2	0	0	0
351	경북	고령군	고령읍	26	21	80.8	5	2	1	0	0	2	0	0	0
352	경북	성주군	성주읍	24	21	87.5	3	0	0	0	0	3	0	0	0
353	경북	예천군	용궁면	24	24	100.0	0	0	0	0	0	0	0	0	0
354	경북	봉화군	봉화읍	25	24	96.0	1	0	0	0	0	1	0	0	0
355	경남	창원시	팔룡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356	경남	창원시	사파동	25	19	76.0	6	0	0	0	0	5	1	0	0
357	경남	마산시	내서읍	25	21	84.0	4	0	0	0	0	3	1	0	0
358	경남	마산시	반월동	13	12	92.3	1	0	0	0	0	1	0	0	0
359	경남	마산시	성호동	25	21	84.0	4	0	0	0	0	4	0	0	0
360	경남	마산시	양덕1동	9	8	88.9	1	0	0	0	0	1	0	0	0
361	경남	마산시	합성2동	25	18	72.0	7	0	0	1	0	4	2	0	0
362	경남	진주시	수곡면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363	경남	진주시	상평동	25	24	96.0	1	0	0	0	0	1	0	0	0
364	경남	진주시	이현동	25	17	68.0	8	1	0	2	0	4	1	0	0

번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대상	완료	완료율	조사 미완	조사미완료유							
								장기 출타	낮은 귀가	부재 중	조사표 미완	조사 거부	이사	사망	기타
365	경남	진해시	웅동2동	25	18	72.0	7	1	0	1	0	2	3	0	0
366	경남	통영시	정량동	9	9	100.0	0	0	0	0	0	0	0	0	0
367	경남	사천시	정동면	11	8	72.7	3	1	0	0	0	2	0	0	0
368	경남	사천시	벌룡동	25	23	92.0	2	0	0	0	0	2	0	0	0
369	경남	김해시	장유면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370	경남	김해시	부원동	25	18	72.0	7	0	0	0	1	6	0	0	0
371	경남	김해시	삼안동	25	22	88.0	3	0	0	0	0	3	0	0	0
372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25	24	96.0	1	1	0	0	0	0	0	0	0
373	경남	밀양시	교동	10	9	90.0	1	0	0	0	0	1	0	0	0
374	경남	밀양시	삼문동	25	20	80.0	5	1	0	0	0	4	0	0	0
375	경남	양산시	물금읍	26	23	88.5	3	1	0	0	0	2	0	0	0
376	경남	양산시	물금읍	15	14	93.3	1	0	0	0	0	1	0	0	0
377	경남	창녕군	창녕읍	25	20	80.0	5	0	0	0	0	4	0	1	0
378	경남	남해군	삼동면	25	24	96.0	1	0	0	0	0	0	0	1	0
379	경남	함양군	함양읍	25	21	84.0	4	0	0	1	0	2	1	0	0
380	경남	거창군	마리면	14	14	100.0	0	0	0	0	0	0	0	0	0
381	경남	합천군	청덕면	25	25	100.0	0	0	0	0	0	0	0	0	0
382	제주	제주시	용담1동	26	25	96.2	1	0	0	1	0	0	0	0	0
383	제주	제주시	화북동	26	23	88.5	3	0	0	0	0	3	0	0	0
384	제주	제주시	오라동	26	26	100.0	0	0	0	0	0	0	0	0	0
385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26	25	96.2	1	1	0	0	0	0	0	0	0
386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	26	23	88.5	3	0	0	0	0	3	0	0	0
387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26	21	80.8	5	0	0	0	0	5	0	0	0
388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26	23	88.5	3	1	0	0	0	2	0	0	0
389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26	24	92.3	2	0	0	0	0	2	0	0	0
계				9015	7768	86.2	1246	125	21	45	6	877	155	9	8

주: 전북 군산시 해신동의 경우 조사구 내에 2가구가 1가구로 합가함.

〈부록 4: 설문지 및 건강가계부〉

부록 4-1: 가구유치조사 설문지

KoHPS Korean Healthcare Panel Study	2007 한국의료패널 - 신규가구용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하여 비밀 이 보장됩니다.
---	---	--

문의 및 연락처	행정코드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응답자 가구원번호	조사표 번호
02) 380-8147						

주 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 ①지상 ☐ ②반지하 ☐ ③지하		
가구주 성명		집전화번호	() -
응답자 성명		응답자 휴대폰 번호	01 - -
연락가능요일	☐ ① 평일 ☐ ② 주말 ☐ ③ 상시	연락선회시간대	_____ ~ _____ 시경
분가예정 가구원 유무	☐ ① 있음 ☐ ② 없음	분가예정 가구원 번호	
		핸드폰번호	01 - -
이사 계획	☐ ① 있음 (_____년 _____월) ☐ ② 없음	이사에정지 주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설문소요시간	()분		※ 미완사유 코드
총 방문 횟수	총 ()회		① 늦은 귀가 ② 장기 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 이사(주소추적불가) ⑦ 사망으로 가구소실 ⑧ 기타
1차 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 ① 완료 ☐ ② 미완: 사유(____)	
2차 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 ① 완료 ☐ ② 미완: 사유(____)	
최종 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 ① 완료 ☐ ② 미완사유(____)	
조사원 성명	_____	지도원 확인 ☐ ① 완료 ☐ ② 미완	
방문가구 기재사항	_____		지도원 성명 _____ (인)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가구 및 주거 유형					
1	가구내 결혼이민자	해당 가구원 번호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88.비해당			
2	국제적 비동거 가족	①예 ②아니요			
3	주거유형	①단독주택 ②다세대주택 ③연립주택 ④일반(임대)아파트 ⑤영구임대아파트 ⑥영업용건물 내 거주(상가·공장·점포·여관 등) ⑦오피스텔 ⑧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4	주택소유형태	①자가 ②전세 ③월세 ④무상(관사, 사택 등) ⑤기타			
5	주택가격	자가·전세·월세보증금		만원	
5-1	연간 월세	지난 1년간 월세총액		연간	만원
5-2	지대	지난 1년간 거주한 주택의 토지에 대해 지불하는 지대가 있는 경우		연간	만원
가구 소득: IN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지난 1년간)					
구분	경제활동		가구원번호	연간 총급여액	
1-1	상용직	1년간 벌어들인 연간급여총액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등 포함 소득세, 건강·고용·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일한 개월	1개월당 보수
1-2	임시직	연간 일한 개월 수와 1개월당 평균 보수를 기입		개월	만원
				개월	만원
				개월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월평균 일한 횟수	1회당(일당) 보수
1-3	일용직	월평균 일한 횟수와 1회(1일)당 평균 보수를 기입		회	천원
				회	천원
				회	천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전입소득	
1-4	고용주 자영자	연간 전입소득 연간 총수입 중 겹으로 가지고 오는 금액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순소득	
1-5	농어업 경영자	연간 순소득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순소득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구분	소득유형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부업소득	
2	부업소득	연간 부업소득 주부 또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직장인의 투잡(two-job)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구분	소득 유형	세부항목	연간 소득		
3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기타(자격증 대여 등)	지난 1년간 만원		
4	연금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장해 연금 등	지난 1년간 만원		
5	정부보조금	참전용사보조금, 수급자급여, 보육료지원, 경로연금, 장애수당, 노인교통비	지난 1년간 만원		
6	민간보조금 (※원물제외)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 받는 현금	지난 1년간 만원		
7	기타 (※일시금포함)	(예, 고용보험급여)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만성질환의 정기적 방문					
※ 무료로 다닐 경우 0원 기입 & 비해당은 “/”표					
가구원 번호		만성질환 수			
일련번호	병의원 종류 ①종합병원 ②병원 ③의원 ④보건(지)소/보건의료원 ⑤한방병원 ⑥한의원 ⑦기타	만성질환명 (진단명)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기방문 횟수 ① 1주 1회이상 ② 2주 1회이상 ③ 3주 1회이상 ④ 1개월 1회이상 ⑤ 1개월 1회미만	1회(1일) 평균 진료비 수납금액	1회(1일) 평균 약제비 수납금액
1				원	원
2				원	원
3				원	원
4				원	원
5				원	원
가구원 번호		만성질환 수			
일련번호	병의원 종류 ①종합병원 ②병원 ③의원 ④보건(지)소/보건의료원 ⑤한방병원 ⑥한의원 ⑦기타	만성질환명 (진단명)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기방문 횟수 ① 1주 1회이상 ② 2주 1회이상 ③ 3주 1회이상 ④ 1개월 1회이상 ⑤ 1개월 1회미만	1회(1일) 평균 진료비 수납금액	1회(1일) 평균 약제비 수납금액
1				원	원
2				원	원
3				원	원
4				원	원
5				원	원

만성질환의 정기적 방문					
※ 무료로 다닐 경우 0원 기입 & 비해당은 “/”표					
가구원 번호		만성질환 수			
일련번호	병의원 종류 ①종합병원 ②병원 ③의원 ④보건(지)소/보건의료원 ⑤한방병원 ⑥한의원 ⑦기타	만성질환명 (진단명)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기방문 횟수 ① 1주 1회이상 ② 2주 1회이상 ③ 3주 1회이상 ④ 1개월 1회이상 ⑤ 1개월 1회미만	1회(1일) 평균 진료비 수납금액	1회(1일) 평균 약제비 수납금액
1				원	원
2				원	원
3				원	원
4				원	원
5				원	원
가구원 번호		만성질환 수			
일련번호	병의원 종류 ①종합병원 ②병원 ③의원 ④보건(지)소/보건의료원 ⑤한방병원 ⑥한의원 ⑦기타	만성질환명 (진단명)	만성질환으로 인한 정기방문 횟수 ① 1주 1회이상 ② 2주 1회이상 ③ 3주 1회이상 ④ 1개월 1회이상 ⑤ 1개월 1회미만	1회(1일) 평균 진료비 수납금액	1회(1일) 평균 약제비 수납금액
1				원	원
2				원	원
3				원	원
4				원	원
5				원	원

국민 건강 보험		
※ 보기 번호	①매우 그렇다 ②대체로 그렇다 ③별로 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9. 보험료를 자녀(부모)가 지급하여 잘 모르겠다. 8.비해당(의료급여자 등)	보기 번호 기입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1. 외래비 혜택	환자가 부담하는 의원이나 병원 외래 진료 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다. 즉, 평균적으로 볼 때, 외래 진료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다.	1
2. 입원비 혜택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 입원 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다. 즉, 평균적으로 볼 때, 입원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많다.	2
3. 약값 혜택	평균적으로 볼 때, 약국 이용시 약값 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적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 많다.	3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한 만족도>

4. 보험료 형평성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건강보험료는 형평하게 부과 되고 있는 것 같다.	4
5. 보험료수준	나 또는 우리 가족의 생활수준을 생각할 때 , 국민건강보험료(민간보험료 제외)는 높은 편 이다.	5
6. 가계부담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가계에 부담 을 주었다.	6
7. 혜택대비 보험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생각할 때 , 나 또는 우리 가족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높은 편 이다.	7

민간보험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가입한 경우에는 작성

1. 민간보험 가입여부	귀하의 가구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민간보험 설문종료”)	1
1-1. 의료비 보장여부	귀하의 가구에서 가입한 민간보험은 의료비를 보상 해 주는 상품입니까? (아래의 보험 종류 참고) ① 예 ② 가입은 하였으나 가구원 전체에 대해 잘 모름 ③ 아니오 (☞ “민간보험 설문종료”)	1-1
1-2. 민간건강보험 가입이유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부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②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③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④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⑤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 ⑥ 기타 ()	1-2

2. 민간보험 종류 월 보험료	가입하신 민간보험 중에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형태와 월 보험료 등은 얼마입니까?(자동차보험제외)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 ☐ 월 보험료 0원)					
		보험 형태	보험형태			
			① 일반질병보험 ② 암보험 ③ 상해보험 ④ 간병보험 ⑤ 종신, 연금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가입한 민간건강보험 ⑥ 기타 ⑦ 1-1문항에서 “②모름”으로 응답한 경우			
	구분 번호	a. 가입한 가구원번호	① 정액형 ② 실손형 9. 모름	c. 보장기간 99. 모름	d. 보험형태번호 (① ~ ⑦)	e. 현재 납입하고 있는 월 보험료 999. 모름
	2-1			세까지		만 천원
	2-2			세까지		만 천원
	2-3			세까지		만 천원
	2-4			세까지		만 천원
	2-5			세까지		만 천원
	2-6			세까지		만 천원
	2-7			세까지		만 천원
	2-8			세까지		만 천원
	2-9			세까지		만 천원
	2-10			세까지		만 천원
	* 정액형 : 발생한 의료비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형태로, 입원할 경우 최고 2,000만원 보상, 암진단시 최고 5,000만원 보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실손형 : 주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의 일종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함(본인부담의 일부 보장)					

※ 다음 방문시 까지 보험증서를 모아주시면, 이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해 드림을 당부해 둡니다.

부록 4-2: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 설문지

 승인(협의)번호 제 33110 호	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	--------------------------	---

인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구들의 의료비 부담에 대해, 적절한 의료비 수준으로 건강한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가정의 응답이 보건의료정책수립에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이번 『한국의료패널』에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

▪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을 받고, 보관해 주십시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료비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비영수증을 꼭 받고 보관하여 주십시오.

환자의 조제 내역을 알기 위해서 처방전 2매(약국제출용 1매, 보관용 1매)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전 2매 요구는 환자의 알 권리입니다

▪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장됩니다.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본 조사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통계법 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이사회실 경우에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명함에 있는 조사 담당자의 전화번호 또는 연구원 전화번호(☎ 080-380-8210)로 이사회실 주소지를 알려주십시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 변동사항 (조사시점)			
1. 가구원의 성함	선생님과 가구원분들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입원 중이거나 시설입소 중이신 분도 포함하여 주십시오.)		text
2. 가구원 변동유무	지난 방문이후에 선생님의 가구원 중 변동사항이 있으십니까? 0. 변동사항 없음 ☞ “가구원 일반사항 조사표”로 가시오. ① 신규 가구원 ☞ 3번으로 가시오. ② 사망 가구원 ☞ 5번으로 가시오. ③ 분가 가구원 ☞ 7번으로 가시오. 7. 이전 조사에서 누락된 경우 ☞ “가구원 일반사항 조사표”로 가시오. 8.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할 사람 ☞ “설문종료”		
[신규 가구원이 있는 경우]			
3. 신규 가구원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태에서 함께 사셨습니까? □□년 □□월		□□년□□월
4. 신규 가구원 형태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어떻게 이 태의 가구원이 되셨습니까? ① 출생 ④ 합가 ② 입양 ⑤ 기타() ③ 결혼		□
☞ “ 가구원 일반사항 ” 조사표로 이동해 설문해 주세요.			
[사망 가구원이 있는 경우]			
5. 사망일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언제 사망 하셨습니까? 사망일: _____년 _____월		□□년□□월
6. 사망 원인	000(가구원 이름)님의 주된 사망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노환 ☞ “ 가구원 일반사항 조사표 ”로 가시오. ② 교통사고 ☞ “ 가구원 일반사항 조사표 ”로 가시오. ③ 직장내 사고 ☞ “ 가구원 일반사항 조사표 ”로 가시오. ④ 기타 사고 ☞ “ 가구원 일반사항 조사표 ”로 가시오. ⑤ 질병 ☞ 6-1번으로 가시오. ⑥ 기타() ☞ “ 가구원 일반사항 조사표 ”로 가시오.		□
6-1. 질환	000(가구원 이름)님의 주된 사망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8.비해당 진단명: () 진단코드: ()		text, □□□□
☞ “ 가구원 일반사항 ” 조사표로 이동해 설문해 주세요.			
[분가 가구원이 있는 경우]			
7. 분가일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태에서 분가를 하셨습니까? 분가일: _____년 _____월		□□년□□월
8. 분가 가구원 형태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어떻게 이 태에서 분가하게 되셨습니까? ① 결혼하여 따로 살게 됨 ② 이혼하여 따로 살게 됨 ③ 가정불화로 따로 살게 됨 ④ 취업이 되어(직장외) 따로 살게 됨 ⑤ 직장 이외에 기타 경제적 여건이 되어 따로 살게 됨 ⑥ 기타()		□
9. 가구원 연락처	분가하신 000(가구원 이름)님의 연락처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text
10. 분가 가구원 주소	분가하신 000(가구원 이름)님의 주소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아파트 동 호)		text

가구원 일반사항											
1. 가구원수	000(가구원 이름)님의 현재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비동거 포함)	명									
2. 가구주 번호	000(가구원 이름)님의 가구에서 가구주는 누구입니까? (가구원 번호 기입) ※ 가구주는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세대구성	선생님의 세대 구성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됩니까? (※ 할머니와 미혼의 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2세대 가구입니다) <table border="1"> <tr> <td>1세대</td> <td> 11. 1인가구 12. 부부(응답자+배우자) 13. 부부+ 형제자매 </td> <td> 14. 응답자+형제자매 15. 부부+기타 친인척 19. 기타 1세대 가구 </td> </tr> <tr> <td>2세대</td> <td> 21. 부부+자녀 22. 편부+자녀 23. 편모+자녀 24. 부부+양친 25. 부부+편부모 </td> <td> 26.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27. 조부모부부+손자녀 28. 편조부/편조모+손자녀 29. 기타 2세대 가구 </td> </tr> <tr> <td>3세대 이상</td> <td> 31. 부부+자녀+양친 32. 부부+자녀+편부모 </td> <td>39. 기타 3세대 가구</td> </tr> </table>	1세대	11. 1인가구 12. 부부(응답자+배우자) 13. 부부+ 형제자매	14. 응답자+형제자매 15. 부부+기타 친인척 19. 기타 1세대 가구	2세대	21. 부부+자녀 22. 편부+자녀 23. 편모+자녀 24. 부부+양친 25. 부부+편부모	26.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27. 조부모부부+손자녀 28. 편조부/편조모+손자녀 29. 기타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31. 부부+자녀+양친 32. 부부+자녀+편부모	39. 기타 3세대 가구	
1세대	11. 1인가구 12. 부부(응답자+배우자) 13. 부부+ 형제자매	14. 응답자+형제자매 15. 부부+기타 친인척 19. 기타 1세대 가구									
2세대	21. 부부+자녀 22. 편부+자녀 23. 편모+자녀 24. 부부+양친 25. 부부+편부모	26. 부부+자녀+부부의 형제자매 27. 조부모부부+손자녀 28. 편조부/편조모+손자녀 29. 기타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31. 부부+자녀+양친 32. 부부+자녀+편부모	39. 기타 3세대 가구									
4. 기초보장 수급형태	선생님의 가구가 수급대상이라면 다음 중 어떠한 형태에 해당됩니까? ① 일반수급가구 ②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③ 조건부수급가구 ④ 특례가구 ⑤.비해당										
5. 가구내 결혼 이민자	선생님의 가구에 결혼이민자가 계신다면 누구입니까? ※ 가구원번호 기입 00. 없을 경우										
6. 가구주와의 관계	000(가구원 이름)님은 가구주와 어떠한 관계이십니까? (가구주는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음 페이지 참고										
7. 성별	000(가구원 이름)님은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8. 생년월일	000(가구원 이름)님의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9. 혼인상태	000(가구원 이름)님은 혼인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 사실혼 관계도 혼인 중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① 혼인 중(사실혼 포함) ② 별거(이혼전제) ③ 사별 또는 실종 ④ 이혼 ⑤ 결혼한 적 없음										

※ 가구주와의 관계

010. 가구주 본인	020. 가구주의 배우자
001. 가구주의 조부모	002. 가구주 배우자의 조부모
003. 가구주의 부모	004.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005. 가구주 부모의 형제/자매	006.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
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021. 가구주 첫째 자녀의 배우자	
0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배우자	
023. 가구주 셋째 자녀의 배우자	
031. 가구주의 첫째 형제/자매	061. 가구주 배우자의 첫째 형제/자매
032. 가구주의 둘째 형제/자매	062. 가구주 배우자의 둘째 형제/자매
033. 가구주의 셋째 형제/자매	063. 가구주 배우자의 셋째 형제/자매
041. 가구주 첫째 형제/자매의 배우자	071. 가구주 배우자의 첫째 형제/자매 배우자
042. 가구주 둘째 형제/자매의 배우자	072. 가구주 배우자의 둘째 형제/자매 배우자
043. 가구주 셋째 형제/자매의 배우자	073. 가구주 배우자의 셋째 형제/자매 배우자
050. 가구주 형제/자매의 자녀	080.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1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자녀(손자녀)	
112. 가구주 둘째 자녀의 자녀(손자녀)	
113. 가구주 셋째 자녀의 자녀(손자녀)	
12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자녀(손자녀) 배우자	
1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자녀(손자녀) 배우자	
123. 가구주 셋째 자녀의 자녀(손자녀) 배우자	
200. 기타 친인척	
300. 친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999. 모름

10. 교육수준	000(응답자 이름)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혹은 다니고 계십니까? 01. 미취학(만7세이하) 02. 무학(문자해독불가) 03. 무학(문자해독가능) 11. 초등학교 1학년 21. 중학교 1학년 12. 초등학교 2학년 22. 중학교 2학년 13. 초등학교 3학년 23. 중학교 3학년 14. 초등학교 4학년 31. 고등학교 1학년 15. 초등학교 5학년 32. 고등학교 2학년 16. 초등학교 6학년 33. 고등학교 3학년 41. 대학교(전문대학) 1학년 51. 대학원 석사 42. 대학교(전문대학) 2학년 52. 대학원 박사 (기능대학, 구 사범학교 포함) 43. 대학교(전문대학) 3학년 44. 대학교 4학년(구 2년제 교육대학 포함) 45. 대학교 5학년 46. 대학교 6학년	□□
10-1. 졸업 유무	000(가구원 이름)님은 다니신 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중퇴하셨습니까? 검정고시로 자격을 취득하셨습니까? ① 졸업 ⑤ 중퇴 ② 재학중 ⑥ 검정고시 자격취득 ③ 휴학중 ④ 수료 8. 비해당(미취학, 무학)	□
11. 동거유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000(가구원 이름)님, 000(가구원 이름)님과는 모두 동거하고 계십니까? ① 동거 ⑥ 비동거(시설입소) ② 비동거(직장) ⑦ 비동거(가출/별거) ③ 비동거(교육/보육) ⑧ 비동거(사망) ④ 비동거(군입대) ⑨ 비동거(분가) ⑤ 비동거(입원) ⑩ 비동거(기타: _____)	□□
12. 의료보장 형태	000(가구원 이름)님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의료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① 공무원·교직원 건강보험 ⑥ 특례자(국가유공자 등) ② 사업장(직장) 건강보험 ⑦ 미가입 ③ 지역 건강보험 ⑧ 자격상실 ④ 의료급여 1종 ⑨ 급여정지 ⑤ 의료급여 2종	□
12-1. 건강 보험 대표자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다면, 국민건강보험은 누구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 해당 가구원 번호 기입 66. 가구원이 아닐 경우 88. 비해당(의료급여자 등)	□□, text

13. 장애 유형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어떠한 유형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으셨습니까? ① 지체(1~6급) ② 뇌병변(1~6급) ③ 시각(1~6급) ④ 청각(2~6급) ⑤ 언어(3~4급) ⑥ 정신지체(1~3급) ⑦ 발달(자폐)(1~3급) ⑧ 정신장애(1~3급)	⑨ 신장(2급, 5급) ⑩ 심장(1~3급, 5급) ⑪ 호흡기(1~3급) ⑫ 간(1~3급, 5급) ⑬ 안면(2~4급) ⑭ 장루요루(2~5급) ⑮ 간질(2~4급) 88. 비장애인	□□
13-1. 장애 등급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혹시 장애등급을 판정받으셨다면 몇 급이십니까?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88. 비장애인	□
14. 경제활동 유무	(2007년 12월 31일 기준)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88. 비해당(만14세이하)	□
14-1.비경제 활동이유	(2007년 12월 31일 기준)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령은퇴(→15번으로) ② 군복무 ③ 학업준비 ④ 가사 및 양육 ⑤ 간병 ⑥ 구직활동 중 ⑦ 구직활동포기	⑧ 근로무능력 ⑨ 질병(건강악화) ⑩ 사고로 인한 손상 ⑪ 학생(재수생) ⑫ 기타() 88. 비해당(만14세이하)	□□
15. 종사상 지위	(2007년 12월 31일 기준) 000(가구원 이름)님의 종사상 지위는 무엇입니까? ※ 고령은퇴자의 경우 주된 경제활동에 대해 기입 0. 정규직 ① 상용직 ② 임시직 ③ 일용직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88. 비해당	□
16. 근무시간 형태	(2007년 12월 31일 기준) 000(가구원 이름)님은 전일제로 일하셨습니까? 시간제로 일 하셨습니까? ※ 고령은퇴자의 경우 주된 경제활동에 대해 기입 ① 전일제 ② 시간제	88. 비해당	□

138 2008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진행 보고서

17. 산업 분류	(2007년 12월 31일 기준)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곳은 어떤 업종의 일입니까? ※ 고령은퇴자의 경우 주된 경제활동에 대해 기입 <table border="0"> <tr> <td>① 농업</td> <td>⑬ 사업서비스업</td> </tr> <tr> <td>② 어업</td> <td>⑭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서비스업</td> </tr> <tr> <td>③ 광업</td> <td>⑮ 교육서비스업</td> </tr> <tr> <td>④ 제조업</td> <td>⑯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td> </tr> <tr> <td>⑤ 전기, 가스, 수도업</td> <td>⑰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td> </tr> <tr> <td>⑥ 건설업</td> <td>⑱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td> </tr> <tr> <td>⑦ 도소매업</td> <td>⑲ 가사서비스업</td> </tr> <tr> <td>⑧ 숙박/음식점업</td> <td>⑳ 국제 및 외국기관</td> </tr> <tr> <td>⑨ 운수업</td> <td>㉑ 분류 불능직</td> </tr> <tr> <td>⑩ 통신업</td> <td></td> </tr> <tr> <td>⑪ 금융·보험업</td> <td>88. 비해당</td> </tr> <tr> <td>⑫ 부동산·임대업</td> <td></td> </tr> </table>	① 농업	⑬ 사업서비스업	② 어업	⑭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서비스업	③ 광업	⑮ 교육서비스업	④ 제조업	⑯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⑤ 전기, 가스, 수도업	⑰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	⑥ 건설업	⑱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	⑦ 도소매업	⑲ 가사서비스업	⑧ 숙박/음식점업	⑳ 국제 및 외국기관	⑨ 운수업	㉑ 분류 불능직	⑩ 통신업		⑪ 금융·보험업	88. 비해당	⑫ 부동산·임대업		□□
① 농업	⑬ 사업서비스업																									
② 어업	⑭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서비스업																									
③ 광업	⑮ 교육서비스업																									
④ 제조업	⑯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⑤ 전기, 가스, 수도업	⑰ 오락·문화·운동관련서비스																									
⑥ 건설업	⑱ 기타공공·수리, 개인서비스																									
⑦ 도소매업	⑲ 가사서비스업																									
⑧ 숙박/음식점업	⑳ 국제 및 외국기관																									
⑨ 운수업	㉑ 분류 불능직																									
⑩ 통신업																										
⑪ 금융·보험업	88. 비해당																									
⑫ 부동산·임대업																										
18. 직업명	(2007년 12월 31일 기준) 000(가구원 이름)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고령은퇴자의 경우 주된 경제활동에 대해 기입	text																								
19. 직종	(2007년 12월 31일 기준)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직종은 무엇입니까? ※ 고령은퇴자의 경우 주된 경제활동에 대해 기입 ⇒ 중분류 코드 (다음 페이지) 기입 88. 비해당	□□																								

※ 직종 중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코드	대분류	중분류 코드
관리직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62 임업 숙련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63 어업 숙련직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80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단순 노무 종사자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52 매장 판매직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53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군인	01 군인

주거 형태(2007년 12월 31일 기준)

※ 신규형성 가구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주거형태	(2007년 12월 31일 기준)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연립주택 ④ 일반(임대)아파트 ⑤ 영구임대아파트 ⑥ 영업용건물 내 거주 (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 ⑦ 오피스텔 ⑧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등)	□
2. 주택소유 여부	(2007년 12월 31일 기준)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집은 자가입니까? 전세나 월세입니까? ① 자가 ☐ 3번으로 가시오 ② 전세 ☐ 4번으로 가시오 ③ 월세 ☐ 5번으로 가시오 ④ 무상(관사, 사택 등) ☐ “주거형태 설문종료” ⑤ 기타 ☐ 6번으로 가시오	□
3. 자가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 기준)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집의 현시세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현시세 만원 비해당: 빈칸	□□□□□만원
4. 전세 보증금	(2007년 12월 31일 기준)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집의 전세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전세 보증금 만원 비해당: 빈칸	□□□□□만원
5. 월세 보증금	(2007년 12월 31일 기준)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집의 월세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월세 보증금 만원 비해당: 빈칸	□□□□□만원
5-1. 월세	(2007년 12월 31일 기준)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집의 월세는 얼마입니까? 월세 만원 비해당: 빈칸	□□□□만원
6. 지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귀하께서 살고 계신 집의 토지에 지대를 지불하고 계시다면 월평균 얼마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연간 만원 비해당: 빈칸	□□□□만원

의료이용 표지		
1. 만성질환 유무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현재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① 예 ☐ “만성질환 조사표” ② 아니요	☐

[특정 질환이 없는 분도 포함]

2. 생활/건강 증진 의약품 복용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비만, 탈모,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제, 영양제(예, 아로나민, 뼈썩썩, 칼슘제) 등 3개월이상 복용하셨거나 복용예정인 의약품이 있습니까? ① 예 ☐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조사표” ② 아니요	☐
--------------------------	---	---

※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만 기입 (약국, 마트나 홈쇼핑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외)
 ※ 비만, 탈모,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처방약 + 비처방약 모두 포함
 ※ 만성질환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 또는 비타민제는 “만성질환 조사표” 부분에 포함
 ※ OTC: 일반의약품의 영문표기(Over-the-Counter Drugs)
 ※ 건강기능식품의 영문표기: Health Functional Food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으로 입원/응급/외래를 다녀온 경우]

3. 응급이용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응급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 까? ① 예 (☐ “응급서비스 이용 조사표”) ② 아니요	☐
4. 입원이용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 당일입원(낮입원), 중환자실, 한방 및 치과의 입원도 포함하여 주십시오. ① 예 (☐ “입원서비스 이용 조사표”) ② 아니요	☐
5. 외래이용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외래로 병의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한방 및 치과 병원의 외래이용도 포함하여 주십시오. ① 예 (☐ “외래서비스 이용 조사표”) ② 아니요	1 ☐
6. 출산 경험	지난 1년간(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출산 조사표”) ② 아니요 8. 비혜당(남자의 경우)	☐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1. 질환명	000(가구원 이름)님의 질환명은 무엇입니까? 질환명 () 진단코드 ()	text, □□□□
2. 의사진단 여부	000(가구원 이름)님이 알고 있는 만성질환은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조사표” 설문 종료	☐
3. 진단시기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언제 의사로부터 000(질병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만 ()세	만□□□세
4. 의료이용 여부	000(가구원 이름)님은 000(질병명)으로 지난 조사원 방문이후 입원이나 외래방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5. 의약품복용 여부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지난 조사원 방문이후 000(질병명)으로 처방약(연고, 주사, 제포함)을 복용(사용)하셨거나 하고 계십니까? ① 예 6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요	☐
5-1. 미복용 이유	약을 복용(사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약을 먹을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② 효과가 별로 없어서 ③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몸에 해로울까봐 ④ 경제적 이유로(약값이 부담스러워서) ⑤ 기타() ⑥ 약이외의 치료중(예, 혈액투석, 물리치료 등) ⑦ 의사가 약(연고, 주사제포함)을 처방하지 않음 ⑧ 비해당(처방약 복용) ⇒ 의약품 미복용(사용)자는 “만성질환 및 의약품 이용 조사표” 설문 종료	☐
6. 정기적 약복용 기간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십니까? (현재 3개월이 되지 않았으나 3개월 이상 계속 복용(또는 사용)하실 경우도 해당) ① 예 ② 아니요 7번으로 가시오	☐
6-1. 약복용 기간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정기적으로 계속 복용한지 몇 개월이나 되셨습니까? ()개월 ※ 비해당(비정기적 복용): 빈칸 1개월 미만의 경우: “01”	□□□개월
7. 복약 순응	현재 정해진 복용방법대로 복용하십니까? ① 정해진 방법대로 복용하는 편이다 8번으로 가시오 ② 정해진 방법대로 복용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복용방법에 대해 잘 모름 8번으로 가시오	☐
7-1. 불순응 이유	정해진 복용 방법대로 복용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증상이 완화되어서 (나아서) ② 효과가 별로 없어서 ③ 부작용이 나타나서 ④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려서 ⑤ 약을 자주 먹으면 몸에 나쁠까봐 ⑥ 기타() ⑧ 비해당	☐

8. 부작용 발생	복용하시는 약으로 부작용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 모름	☐
9. 약제비 부담수준	위의 약값으로 지불하시는 금액의 부담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가게에 매우 큰 부담을 준다 ② 가게에 약간의 부담을 준다 ③ 감당할 수 있다 ④ 가게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⑤ 가게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
10. 의사약사 고지여부	의사에게 진료 받거나 약사에게 조제 받을 때, 정기적으로 복용(또는 사용)하시는 약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① 의사, 약사 모두에게 말하는 편임 ② 의사에게는 말하나 약사에게는 말하지 않는 편임 ③ 의사에게는 말하지 않으나 약사에게는 말하는 편임 ④ 의사, 약사 모두에게 말하지 않음 ⑤ 기타()		☐

=> 반복질문 종료

11. 약국선택	약을 구입하신 약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국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조건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0. 약국가지 않음 ①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약국 ② 의료기관에서 가까운 약국 ③ 의료기관에서 권유하는 약국 ④ 가족이나 친지가 권유하는 약국 ⑤ 약사가 믿을 만한 약국 ⑥ 시설이 좋은 약국 ⑦ 지난번에 약을 구입했던 약국 ⑧ 기타()	☐
----------	--	--------------------------

응급 서비스 이용: ER		
1. 응급실 이용횟수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병원의 응급실을 몇 번 이용하셨습니다? □□회	□□회
지금부터 응급으로 병원 응급실에 다녀오신 날짜, 병의원 명칭, 아픈 곳,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다녀오신 경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증 보관 조사원기입]	진료비 영수증 보관유무 ① 영수증보관 ② 가계부기록 ③ 기억의존 입원비로 합산 여부 ① 예 ② 아니요 약제비 영수증 보관 0.약국안감 ① 영수증보관 ② 가계부기록 ③ 기억의존	☐ ☐ ☐
2. 방문일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응급실을 이용한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년 □□월□□일부터 □□년 □□월□□일까지 모름.989898	□□□□□□부터 □□□□□□까지
2-1. 응급실일수	응급실 이용 일수 (조사원 직접 기입) □□일간	□□일
3. 의료기관 이름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이용하셨던 의료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_____)	text
3-1. 소재지	00병원(또는 00의원)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____)시도 (____)구시군 (행정동 코드 중 앞부터 5자리 입력)	text, □□□□□
3-2. 의료기관 종류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이용하셨던 00병원(또는 00의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사원 직접기입) ① 종합전문병원(→ 분류코드 참고) ⑦ 한방병원 ② 종합병원 ⑧ 한의원 ③ 병원 ⑨ 보건의료원/보건(자)소 ④ 의원 ⑩ 노인(요양)병원 ⑤ 치과병원 ⑪ 조산소 ⑥ 치과의원 ⑫ 기타(____)	□□
3-3. 국공립여부	국공립여부 (조사원 직접기입) ① 국공립 ② 사립	☐
3-4. 요양기관 코드	요양기관코드 입력 (조사원 직접기입)	□□□□ □□□□
4. 교통수단	응급실을 방문하는데 사용한 교통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소방 구급차(119 구급차) ② 이용할 병원에서 보내준 구급차 ③ 그 외 구급차(사단법인 구급차 등) ④ 개인용 차량 ☞ 6번으로 가시오 ⑤ 택시 ☞ 6번으로 가시오 ⑥ 도보 ☞ 6번으로 가시오 ⑦ 기타: 버스·지하철(____) ☞ 6번으로 가시오	☐

응급 서비스 이용: ER		
5. 병원지정 여부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로 이동하실 때, 병원을 지정해서 가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8. 비해당	☐
6. 소요시간	응급상황 발생 이후(응급실 가기로 결정한 후) 응급실에 도착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① 5분미만 ② 5분이상 ~ 10분미만 ③ 10분이상 ~ 15분미만 ④ 15분이상 ~ 20분미만 ⑤ 20분이상 ~ 30분미만 ⑥ 30분이상 ~ 40분미만 ⑦ 40분이상 ~ 50분미만 ⑧ 50분이상 9. 모름	☐
6-1. 지연여부	응급실에 늦게 도착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늦게 도착함 ② 아니요, 늦게 도착하지 않음 9. 모름	☐
7. 방문이유	응급실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사고나 중독 ② 질병 ☐ 9번으로 가시오 ③ 출산 ☐ 9번으로 가시오 ④ 기타() ☐ 9번으로 가시오	☐
8. 사고/중독 장소	사고(또는 중독)는 어디에서 발생하였습니까? ① 도로/길/주차장 ② 사업장(직장, 일터, 농어업시설 등) ③ 교육시설/보육시설 ④ 가정 ⑤ 레저활동지 (산, 스키장, 볼링장 등) ⑥ 기타 () 8. 비해당	☐
8-1. 사고/중독 유형	사고(또는 중독)는 어떻게 발생하였습니까? ① 운수사고 ② 화재사고 ③ 뜨거운 음식물 ④ 추락 ⑤ 넘어짐/미끄러짐/부딪침 ⑥ 물건 등이 떨어짐 ⑦ 중독(약품, 농약, 가스 등) ⑧ 질식(유독가스노출 등) ⑨ 절단/관통 ⑩ 동물/곤충에게 물림 ⑪ 익수 ⑫ 사람에게 맞음 ⑬ 자연재해 ⑭ 기타 () 88. 비해당	☐
9. 진단명	의사가 말해준 진단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단명: () 진단코드 기입	text,
10. 서비스	응급실에서 받은 가장 주된 서비스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수술 ② 수술 이외의 치료(약물, 수혈 등) 또는 응급 처치 ③ 검사만 ④ 기타() 9.모름	☐

응급 서비스 이용: ER		
11. 수납금액	수납창구에 지불하신 총 수납금액은 얼마입니까? ※ 앰블런스사용료, 응급환자 수송차량이용료 포함 ※ '91' 무료 ※ '94' 응급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입원비용 정산시 포함하였을 경우 ※ '96'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처리 ※ '97' 산재처리	□□□만 □□□□원
12. 의료비 계원	00병원(또는 00의원)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나 비동거가족, 친인척들이 보상/부담해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13번으로 가시오	☐
12-1. 전보 이외의 지원	00월 00일, 00병원(또는 00의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 받았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① 자동차보험 ② 산재보험 ③ 민간보험(질병보험, 암보험) ④ 민간보험(연금특약) ⑤ 비동거 가족/친인척/친구의 지원 ⑥ 비영리기관(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⑦ 정부/지자체 ⑧ 기타() 88.비해당	복수응답 ☐ , ☐ , ☐ , ☐
13. 처방약 구매유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매하였습니까? ① 약국에서 구입 ② 약국에서 구입 + 병원에서 직접 받았음 ③ 약을 병원에서 직접 받았음 ☐ 14번으로 가시오 ④ 처방전이나 약을 받지 않았음 ☐ 14번으로 가시오 8. 비해당(응급실에서 바로 입원) ☐ 14번으로 가시오	☐
13-1. 처방 약값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매하였다면 얼마를 지불하였습니까? ()원 ※ 88. 약국에 가지 않음 ※ 91. 무료	□□□만 □□□□원
14. 입원연계	응급실 방문 후에 입원실로 이동하였습니까? ① 응급실 진료 후 입원 ② 상급병원 혹은 타병원으로 이동 ③ 귀가(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귀가한 경우 포함)	☐
15. 만족도	이번에 응급실 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
15-1. 응답자	※ (조사원 직접기입) 응답자가 환자본인인지 대리인인지의 여부 ①환자 본인 ②대리인	☐

응급으로 병의원에 다녀오신 경우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반복질문 종료

입원서비스 이용		
지금부터 입원으로 병의원에 다녀오신 날짜, 병의원 명칭, 아픈 곳,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다녀오신 입원내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 입원횟수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몇 번 입원하셨습니다? □□회	□□회
[영수증 보관 조사원기입]	※ 의료비 기준으로 표기 진료비 영수증 보관유무 ① 영수증보관 ② 가계부기록 ③ 기억의존 약제비 영수증 보관유무 ④ 약국안감 ① 영수증보관 ② 가계부기록 ③ 기억의존	 □ □
2. 입원기간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입원하셨습니다? □□년 □□월□□일부터 □□년 □□월□□일까지 모름. 989898 ※ 장기입원의 경우: 조사일에 입원 중일 55 코드 입력 경우 예) 071202부터 "080455"	□□□□부터 □□□□까지
2-1 입원일수	입원일수(조사원 직접 기입) □□□일간	□□□일간
3. 응급시작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응급실을 통한 입원하셨습니다? ① 예 ② 아니요	□
4. 의료기관 이름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입원하셨던 의료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_____)	text
4-1. 소재지	00병원(또는 00의원)은 어디에 있는 곳 입니까? (____)시도 (____)구시군 (행정동 코드 중 앞부터 5자리 입력)	text, □□□□
4-2. 의료기관 종류 (→ 조사원 직접기입)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입원하셨던 00병원(또는 00의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종합전문병원(→ 분류 코드집 참고) ⑦ 한방병원 ② 종합병원 ⑧ 한의원 ③ 병원 ⑨ 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④ 의원 ⑩ 노인(요양)병원 ⑤ 치과병원 ⑪ 조산소 ⑥ 치과의원 ⑫ 기타(_____)	□□
4-3. 국공립여부	국공립여부 (조사원 직접기입) ① 국공립 ② 사립	□
4-4. 요양 기관 코드	요양기관코드 입력 (조사원 직접기입)	□□□□ □□□□
5. 의료기관 선택기준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입원하셨던 00병(의)원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① 의료진이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서 ② 장비, (위험대비)시설 및 병원환경이 뛰어나서 ③ 의료진들이 친절해서 ④ 비용이 저렴해서 ⑤ 병원이 가까워서 ⑥ 다니던 병원이었어서 ⑦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이송 의뢰 ⑧ 기타 (_____) 0. 선택할 상황이 아니었음(예, 무의식상태)	□

입원서비스 이용		
6. 입원결정	입원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의료기관선택과 관계없이 입원할지 통원할지 등에 대한 결정) ① 의료진 ② 본인(환자 자신) ③ 기타: 가족·지인()	☐
7. 대기여부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방문 당일날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입원하지 못하고 기다리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8번으로 가시오 8.비해당(응급실 통한 입원) ☞ 8번으로 가시오	☐
7-1. 대기 일수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기다리셨다면 며칠을 기다리셨습니까? ()일 0.비해당(기다리지 않음)	□□□일
8. 입원이유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입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사고나 중독 ☞ 9번으로 가시오 ② 질병 ☞ 11번으로 가시오 ③ 출산 ☞ 11번으로 가시오 ④ 퇴원후 1개월 이내의 재입원 ☞ 10번으로 가시오 (동일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도 포함) ⑤ 종합건강검진패키지 ☞ 13번으로 가시오 ⑥ 미용/성형/비만 ☞ 13번으로 가시오 ⑦ 기타 () ☞ 13번으로 가시오	☐
[사고나 중독의 경우]		
9. 사고/중독 장소	사고(또는 중독)는 어디에서 발생하였습니까? ① 도로/길/주차장 ② 사업장(직장, 일터, 농어업시설 등) ③ 교육시설/보육시설 ④ 가정 ⑤ 레저활동지 (산, 스키장, 볼링장 등) ⑥ 기타 () 8. 비해당	☐
9-1. 사고/중독 유형	사고(또는 중독)는 어떻게 발생하였습니까? ① 운수사고 ② 화재사고 ③ 뜨거운 음식물 ④ 추락 ⑤ 넘어짐/미끄러짐/부딪침 ⑥ 물건 등이 떨어짐 ⑦ 중독(약품, 농약, 가스 등) ⑧ 질식(유독가스노출 등) ⑨ 절단/관통 ⑩ 동물/곤충에게 물림 ⑪ 익수 ⑫ 폭행 ⑬ 자연재해 ⑭ 기타 () 88. 비해당	□□
☞ "11번"으로 가시오		
[퇴원후 1개월 이내 재입원의 경우]		
10. 재입원 이유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재입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술의 합병증 ② 수술은 하지 않았으나 증상의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 ③ 계획된 주기적 치료(물리치료, 재활치료, 항암제주사치료 등) ④ 통원치료가 어려워서 ⑤ 퇴원 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⑥ 기타 () 8. 비해당	☐

[사고/질병/출산/재입원의 경우 (종합검진, 미용 제외)]

11. 의사진단 신뢰/재확인	000(가구원 이름)님께서는 의사의 진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0. 출산 ① 예 ② 아니요 ☐ 12번으로 가시오 8. 비해당	☐
11-1. 재확인횟수	다른 병원에서 몇 번이나 다시 재확인 하셨습니다? 재확인 횟수: ☐ ☐ 회 00.비해당(확인안함)	☐ ☐ 회
12. 진단명	의사가 말해준 진단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단명: () 진단코드 기입	text

[모두의 경우]

13. 주된 치료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입원기간 동안 받은 가장 주된 치료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수술 ② 수술이외 치료(약물/물리/재활치료, 수혈(성분수혈포함) 등) ③ 검사만(종합건강검진패키지 포함) ④ 기타: 요양·자연분만()	☐
14. 선택진료 권유 유무	입원하시는 동안 특진진료(선택진료)를 권유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 모름	☐
14-1. 선택 진료 유무	입원하시는 동안 특진진료(선택진료)를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9. 모름	☐
15. 처음 입원실	사용하신 첫 번째 입원실은 몇 인실이었습니다? ① 특실 ④ 4-5인실 ② 1인실 ⑤ 6인실 이상 ③ 2-3인실 ⑥ 중환자실	☐
15-1. 희망 입원실	첫 번째 입원실은 희망하셨던 입원실이었습니다? ① 예 ② 아니요 8. 비해당(병원의 병실형태가 동일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
15-2. 두번째 입원실	[첫번째 입원실에서 이동한 경우] 사용하신 두 번째 입원실은 몇 인실이었습니다? 0. 이동하지 않음 ④ 4-5인실 ① 특실 ⑤ 6인실 이상 ② 1인실 ⑥ 중환자실 ③ 2-3인실	☐
15-3. 세번째 입원실	[두번째 입원실에서 이동한 경우] 사용하신 세 번째 입원실은 몇 인실이었습니다? 0. 이동하지 않음 ④ 4-5인실 ① 특실 ⑤ 6인실 이상 ② 1인실 ⑥ 중환자실 ③ 2-3인실	☐
16. 수납금액	00병원(또는 00의원)에서 퇴원하실 때 수납하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91. 무료 96. 교통사고로 금액을 모르는 경우 97. 산재로 금액을 모르는 경우	만 원

17. 처방약 수령/구매 유무	퇴원하실 때 원내·외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셨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약을 직접 받으셨습니까? ① 약국에서 구입 ② 약국에서 구입 + 병원에서 직접 받았음 ③ 약을 병원에서 직접 받았음 ☐ 19번으로 가시오 ④ 약을 받지 않았음 ☐ 19번으로 가시오	5. 입원중	☐
18. 처방약	처방약을 따로 구매하셨다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88. 약국안감 91. 무료		만 원
19. 의료비 부담수준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 수납하신 금액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여기십니까? ① 매우 큰 부담을 준다 ② 약간의 부담을 준다 ③ 감당할 수 있다 ④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8. 비해당(자동차보험/산재처리)		☐
20. 의료비 재원	00병원(또는 00의원)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나 비동거가족, 친인척들이 보상/부담해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21번으로 가시오		☐
20-1. 견보 이외의 지원	00월 00일, 00병원(또는 00의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 받았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① 자동차보험 ② 산재보험 ③ 민간보험(질병보험, 암보험) ④ 민간보험(연금특약) ⑤ 비동거 가족/친인척/친구의 지원 ⑥ 비영리기관(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⑦ 정부/지자체 ⑧ 기타() 88. 비해당		복수응답 ☐ ☐ ☐ ☐ ☐ ☐
21. 서비스 만족도	입원하시는 동안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입원하신 분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에게 우선 질문)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21-1. 대리 응답여부	(조사원 직접 기입) 대리응답여부 ① 환자 본인 ② 대리응답자		☐
22. 회복여부	퇴원 후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여기십니까? ① 매우 불편 ② 약간 불편 ③ 대체로 회복 ④ 완전 회복 0. 사망 8. 비해당(종합검진 또는 미용/성형/비만의 경우)	5. 입원중	☐

⇒ 반복질문 종료

25. 과잉진료 여부	000(응답자 이름)님께서 느끼시기에 불필요한 치료나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런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 확실하지 않다	☐
26. 같은 이유의 입원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000질환명)과 동일한 이유(원인)로 지난 (조사원의) 방문 이후 입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입원서비스 이용 설문종료”	☐
26-1. 횟수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동일한 이유(원인)로 입원하셨다면 몇 회입니까? 회	회

외래서비스 이용(치과 및 한방 포함): OP

지금부터 외래로 병의원에 다녀오신 날짜, 병의원 명칭, 아픈 곳,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다녀오신 경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 외래 이용횟수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병의원의 외래를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회	□□회
[영수증 보관 조사원기입]	※ 의료비 기준으로 기입 진료비 영수증 보관유무 ① 영수증보관 ② 가계부기록 ③ 기억의존 약제비 영수증 보관 ④ 약국안감 ① 영수증보관 ② 가계부기록 ③ 기억의존	 □ □
2. 진단명	의사가 말해준 진단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고 진단명 포함) 진단명: () 진단코드: ()	text □□□□
3. 외래방문일	000님께서 지난 (조사원의) 방문 이후, 외래로 병(의)원을 다녀오신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년 □□월 □□일 (모름. 989898)	□□□□□□□□□□
4. 방문유형	00병원(또는 00의원)에 00월 00일 가신 경우는 동일질환으로 첫방문하신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재방문하신 하신 것이었습니까? ① 첫방문 ④ 첫방문 + 정기적 방문 ② 재방문 ⑤ 재방문 + 정기적 방문 ③ 정기적 방문 ⑥ 기타: 진단서발급 등()	□
5. 의료기관 명칭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다녀오신 의료기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명칭()	text
5-1. 소재지	00병원(또는 00의원)은 어디에 있는 곳 입니까? ()시도 ()구시군 (행정동 코드 중 앞부터 5자리 입력)	text, □□□□□
5-2. 의료기관 종류	000(가구원 이름)님께서 이용하셨던 00병원(또는 00의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조사원 직접기입) ① 종합전문병원(→ 분류 코드집 참고) ⑧ 한의원 ② 종합병원 ⑨ 보건의료원/보건(지)소 ③ 병원 ⑩ 노인(요양)병원 ④ 의원 ⑪ 조산소 ⑤ 치과병원 ⑫ 기타() ⑥ 치과의원 ⑦ 한방병원	□□
5-3. 국공립여부	국공립여부 (조사원 직접기입) ① 국공립 ② 사립	□
5-4 요양기관 코드	요양기관코드 입력 (조사원 직접기입)	□□□□ □□□□
6. 이송의뢰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을 가셨을 때, 그 전에 다니던 병(의)원의 의사(또는 의료기관)가 이 병원으로 가보시라고 권고(이송·의뢰)하신 경우이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7. 방문이유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 가신 주된 이유 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① 사고나 중독 ☐ “9번”으로 가시오 ② 질병치료 및 추후관리 ☐ “10번”으로 가시오 ③ 타병원 진단/치료의 재확인 ☐ “10번”으로 가시오 ④ 산전후 관리 ☐ “10번”으로 가시오 ⑤ 예방접종/예방관리(보약, 스킨링, 사랑니발치 등) ☐ “10번”으로 가시오 ⑥ 건강검진(결과확인포함) ☐ “8번”으로 가시오 ⑦ 건강상담/교육 ☐ “10번”으로 가시오 ⑧ 미용/성형/비만 ☐ “10번”으로 가시오 ⑨ 진단서, 보건증 발급 ☐ “14번”으로 가시오 ⑩ 기타() ☐ “10번”으로 가시오	☐☐
8. 암검진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 어떤 종류의 암검진을 받으셨습니까?(복수응답) 0. 암검진 받지 않음 ① 위암 ② 간암 ③ 폐암 ④ 대장암 ⑤ 전립선암 ⑥ 유방암 ⑦ 자궁암 ⑧ 기타() 88. 비해당	복수응답 ☐, ☐, ☐, ☐, ☐, ☐, ☐
☐ “14번”으로 가시오		
9. 사고/중독 장소	사고(또는 중독)는 어디에서 발생하였습니까? ① 도로/길/주차장 ② 사업장(직장, 일터, 농어업시설 등) ③ 교육시설/보육시설 ④ 가정 ⑤ 레저활동지 (산, 스키장, 볼링장 등) ⑥ 기타 () 8. 비해당	☐
9-1. 사고/중독 유형	사고(또는 중독)는 어떻게 발생하였습니까? ① 운수사고 ② 화재사고 ③ 뜨거운 음식물 ④ 추락 ⑤ 넘어짐/미끄러짐/부딪침 ⑥ 물건 등이 떨어짐 ⑦ 중독(약품, 농약, 가스 등) ⑧ 질식(유독가스노출 등) ⑨ 절단/관통 ⑩ 동물/곤충에게 물림 ⑪ 익수 ⑫ 사람에게 맞음 ⑬ 자연재해 ⑭ 기타 () 88. 비해당	☐☐
10. 검사유무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 특정한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11번”으로 가시오	☐
10-1. 검사 종류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 01, 02 ... 이라고 기입해 주세요 ① 내시경검사 ② 초음파검사 ③ 골밀도검사 ④ 생체조직검사 ⑤ CT검사 ⑥ MRI검사 ⑦ PET검사 ⑧ 뇌파검사 ⑨ 심전도검사 ⑩ 성장판검사 ⑪ 비만검사 ⑫ 기타: 혈액/소변/X-레이() 88. 비해당	복수응답 ☐, ☐, ☐, ☐, ☐, ☐, ☐

11. 치료내용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서 가장 주된 치료는 무엇이었습니까? 0. 치료받지 않음(예방접종포함) ☐ 14번으로 가시오 ① 약물치료(주사, 처방전(처방약), 연고 등) ☐ 14번으로 가시오 ② 재활/물리치료(양방의 경우) ☐ 14번으로 가시오 ③ 약물치료 이외의 정신요법(정신과 상담, 음악/미술/놀이치료 등) ☐ 14번으로 ④ 수술 ☐ 14번으로 가시오 ⑤ 치과치료 ☐ 12번으로 가시오 ⑥ 한방치료 ☐ 13번으로 가시오 ⑦ 기타 () ☐ 14번으로 가시오 8. 비해당	☐
12. 치과치료 내용	00치과(병)의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복수응답의 경우 가장 주된 치료 2개 기입) ※ 01, 02 ... 이라고 기입해 주세요 ① 충치치료 ☐ 12-1번으로 가시오 ② 의치(틀니) ☐ 14번으로 가시오 ③ 보철(이를 해 박는 것) ☐ 14번으로 가시오 ④ 임플란트 ☐ 14번으로 가시오 ⑤ 치아교정 ☐ 14번으로 가시오 ⑥ 잇몸치료(스켈링 등) ☐ 14번으로 가시오 ⑦ 신경치료 ☐ 14번으로 가시오 ⑧ 치아뽑기 ☐ 14번으로 가시오 ⑨ 치아 홈메우기 및 예방치료 ☐ 14번으로 가시오 ⑩ 미백/미용 ☐ 14번으로 가시오 ⑪ 기타() ☐ 14번으로 가시오 88. 비해당	주된 2개 ☐, ☐,
12-1. 충치 치료 재료	충치치료를 위해 사용하신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0. 재료 없음 ① 아말감 ② 금 ③ 레진 ④ 기타() 8. 비해당	☐
☐ “14번”으로 가시오		
13. 한방 치료내용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복수응답의 경우 가장 주된 치료 3개 기입) ① 침/ 뜸/ 부항 ② 점약/탕약(보약 포함)/한약제제(분말, 환약 등) ③ 손을 이용한 치료(지압 등) ④ 물리치료 ⑤ 기타() 8. 비해당	주된 3개 ☐, ☐, ☐
☐ “14번”으로 가시오		

[모두에 해당]

14. 수납금액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 수납하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 한의원/한방병원에서 한약을 짓는 경우 금액 포함 91. 무료 95. 일시금으로 이전에 지급한 경우 96. 교통사고로 금액을 모르는 경우 97. 산재로 금액을 모르는 경우	□□□만 □□□□원
15. 의료비 제원	00병원(또는 00의원)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나 비동거가족, 친인척들이 보상/부담해 주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16번으로 가시오	☐
15-1. 견보 이외의 제원	00월 00일, 00병원(또는 00의원)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 받았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응답) ① 자동차보험 ② 산재보험 ③ 민간보험(질병보험, 암보험) ④ 민간보험(연금특약) ⑤ 비동거 가족/친인척/친구의 지원 ⑥ 비영리기관(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⑦ 정부/지자체 ⑧ 기타()	복수응답 □□, □□, □□, □□, □□
16. 처방전 수령유무	00월 00일에 00병원(또는 00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18번으로 가시오	☐
17. 처방약	약국에서 지불한 처방약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원 88. 비해당(약국안감) 91. 무료	□□□만 □□□□원
18. 교통수단	이 병(의)원 이용시 사용한 가장 주된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자가 차량 ④ 기차/비행기 ② 택시 ⑤ 도보 ③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⑥ 기타(노약자무료버스 등:_____)	☐
18-1. 교통 시간	집(또는 일터)에서 병원까지 몇 분이 소요되었습니까? ()분	□□□분
18-2. 교통비	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의 편도교통비는 얼마였습니까? (동반자 포함) 편도 ()원 77. 자가차량의 경우	□□만 □□□□원
외래로 병의원에 다녀오신 경우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반복질문 종료

출산 (지난 1년간: 2007년 1월 1일~12월 31일)		
1. 출산시 임신기간	출산당시 임신 기간은 몇 주였습니까? ① 37주 이내(조산) ② 37-42주 (정상적인 기간을 채운 출산) ③ 42주 이후 (적정기간이 초과된 분만)	☐
1-1. 출산일	출산일은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2007년 ()월	
2. 정기 산전 진찰	임신 중 정기 산전 진찰을 규칙적으로 하셨습니까? 가끔씩 하셨습니까? ① 규칙적 ② 가끔씩 ③ 검진하지 않음	☐
3. 출산형태	자연분만이셨습니까? 아니면 제왕절개 분만을 하셨습니까? ① 자연분만(제왕절개 이외의 모두 포함) → 4번으로 가시오 ② 제왕절개분만(응급) ③ 제왕절개분만(예약)	☐
3-1. 제왕절개 이유	제왕절개분만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이전에 제왕절개분만을 했었기 때문에 ② 태아의 머리와 엉덩이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 ③ 태아 곤란증(진통 중 태아위험 상태) 때문에 ④ 진통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 진행이 잘 안돼서 ⑤ 골반에 비해 아기머리가 커서 ⑥ 자연분만이 곤란한 위치의 쌍태임신이라서 ⑦ 출생일시를 인위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⑧ 아픈 진통을 견지 않기 위해서 ⑨ 기타() 88.비해당	
4. 몸무게	태어난 아기의 체중은 몇 g이었습니까? (쌍둥이, 세쌍둥이일 경우 모두 말씀하여 주십시오) □□□□ g	
5. 임신/출산 관련질환	지난 1년의 임신기간 중 임신·출산과 관련한 질환을 경험하셨습니까? 0. 없었음 ① 임신성 당뇨 ② 임신성 고혈압 ③ 산후우울증 ④ 산후 갑상선 질환 ⑤ 기타()	☐
6. 모성 합병증	출산 시 모성 합병증을 경험하셨습니까? 0. 없었음 ① 수혈을 요했던 심한 출혈 ② 출산한 부위의 감염(염증) ③ 자연분만 상처가 매우 심했던 경우 ④ 임신중독증(자간증 및 전자간증) 및 관련합병증 ⑤ 기타()	☐
7. 신생아 합병증	출산 시 신생아가 합병증을 경험하였습니까? 0. 없었음 ① 아기 어깨가 나오다 걸려서 문제발생(어깨골절 혹은 팔마비 등) ② 출산직후 입원해야 할 정도의 상태 ③ 기타()	☐

8. 선천성 기형	출산 시 신생아가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9. 선천성 대사이상	출산 후 검사에서 신생아가 선천성 대사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10. 출산장소	어디에서 출산하셨습니까? ① 산부인과 전문 병원 ② 종합병원 ③ 보건의료원/보건소 ④ 조산원 ⑤ 가정(집에서) ⑥ 기타()	☐
11. 산후 조리원이용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출산 조사표”종료	☐
11-1. 이용 기간	며칠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습니까? ()일	
11-2. 비용	산후조리원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원 ※ 산후조리원에 수납한 금액	만 원

민간의료보험		
1. 민간보험 가입여부	귀하의 가구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2-1번으로 가시오	☐
2.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귀하의 가구에서 가입한 민간보험은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입니까? ① 예 ☐ 3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요 ☐ 2-1번으로 가시오 9. 모름	☐
2-1. 민간 의료보험 가입경험	귀하의 가구에서 이전에 한번이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2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요 ☐ 24번으로 가시오 (중간 답지는 빈칸으로) 8. 비해당(현 가입 가구)	☐
2-2. 이유	귀하의 가구에서 과거 민간의료보험을 탈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 ② 수령한 보험금이 의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③ 본인의 의료이용이 많지 않아서 ④ 보험에서 급여하는 질환(보상대상)이 너무 협소하어서 ⑤ 높은 보험료에 비해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어서 ⑥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민간의료보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⑦ 기타 () 8. 비해당	☐
☐ 24번으로 가시오 (중간 답지는 빈칸으로)		

☐ 가입하신 민간의료보험의 구체적 형태와 월 보험료 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	4	5	6	7	8	9	10	10-1
구분 번호	계약 변경	가입한 가구원 번호	주계약 보험형태	현재까지 불입기간	보험 형태	약정서 확인 유무	현재 납입하고 있는 월 보험료	종신/연금 특약 등의 경우 특약만 월 보험료
	0. 제외 ①유지 ②갱신 ③신규(→11번) ④해약(→12번) ⑤완납 ⑥사망 ⑦기타 ⑧누락 9.모름 98.보장기간완료 (나머지 →13번)	01. 02. 03. 04. : 55. 부부가입 66. 가족가입 77. 기타공동 (테아보험) 9.모름	①일반질병 보험 ②암보험 ③상해보험 ④간병보험 ⑤종신/연금 등의 특약 ⑥기타 9.모름	①1년미만 ②1년이상~2년미만 ③2년이상~3년미만 ④3년이상~4년미만 ⑤4년이상~5년미만 ⑥5년이상~10년미만 ⑦10년이상~15년미만 ⑧15년이상~20년미만 ⑨20년이상	①정액형 ②실손형 9. 모름	①예 ②아니요	원 98. 모름	주계약+재해사망 제외 98. 모름 비해당: 빈칸
11							원	원
12							원	원
	☐	☐	☐	☐	☐	☐	☐ 만 ☐ 원	☐ 만 ☐ 원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할 것(이 경우 월 보험료는 0원으로 기재할 것)

☐ 신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11. 민간의료 보험 가입이유	귀하의 가구에서 민간의료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②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③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④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⑤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못 이겨서 ⑥ 기타 () 8. 비해당	☐
☐ 해약한 민간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12. 민간보험 해약이유	귀하의 가구에서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을 해약하셨다면, 가장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보험료가 가계에 부담이 되어서 ② 수령한 보험금이 의료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③ 본인의 의료이용이 많지 않아서 ④ 보험에서 급여하는 질환/보상범위가 너무 협소하여서 ⑤ 높은 보험료에 비해 수령하는 보험금이 적어서 ⑥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어 민간의료보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⑦ 기타 () 8. 비해당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해당]		
☐ 민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험이 있는 경우		
13. 보험금 청구여부	지난 (조사원의) 방문 이후에 민간보험회사에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24번으로 가시오	☐
14. 보험금 수령여부	지난 (조사원의) 방문 이후에 민간보험회사에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 “15번으로 가시오 ② 아니요 ☐ “14-1번으로 가시오 8.비해당	☐
14-1. 보험 금 청구 거절사유	지급거절 당한 적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보험대상 서비스 및 질환이 아니라서 ② 고지의무를 위반하여서 ③ 기왕증에 해당하여서(보험가입 전에 존재한 질환이어서) ④ 보험료미납 등으로 보험이 실효상태이어서 ⑤ 보장기간이 이미 초과되어서 ⑥ 기타() ⑦ 청구절차, 대기 중 8.비해당	☐
수령 보험금	보험금을 수령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보험으로 얼마를 보장 받으셨는지 말씀해주시시오.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가구원 번호	구분 번호	진단명	진단 코드	병의원 이름	의료이용 형태	병의원 이용한 연도, 월	수령 사유	수령 보험금
00. 사망 가구원	00.구분번호 없는 경우			청구서 작성시 기입한 병의원 이름 (요양기관 코드입력)	의료이용 형태 ① 입원 ② 외래 ③ 기타	수령 보험금 관련한 병의원 이용일	(※ 복수응답일 때, 주된 사유 3개) ①수술급여 ②입원급여 ③진단확정금 ④특정사망보험금 ⑤요양비 ⑥통원비 ⑦장해급여 ⑧기타()	
예) 02	예) 12	예) 뇌졸중		예) 서울병원	1	예) 08년 03월	예) 1, 3, 6	300만 원
□□	□□	text	□□□□	text, □□□□ □□□□	□	□□년 □□월	□, □, □	□□억□□□□만□천원

[모두 해당]

24. 민간의료 보험 가입거부	귀하의 가구에서 이전에 한번이라도 민간의료보험이 가입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민간의료보험” 설문 종료	☐
24-1. 이유	가입거부 되신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나이가 많아서 ② 과거/현재 병력 때문에 ③ 직업 때문에 ④ 신용이 낮아서 ⑤ 기타 () 8. 비해당	☐

가구 소득: IN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007. 1. 1 ~ 12. 31)						
구분	경제활동		가구원번호	연간 총급여액		
1-1	상용직	1년간 벌어들인 연간급여총액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등 포함 소득세, 건강·고용·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지난 1년간	□□억 □□□□ 만원	
				지난 1년간	□□억 □□□□ 만원	
				지난 1년간	□□억 □□□□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일한 개월	1개월당 보수	
1-2	임시직	연간 일한 개월 수와 1개월당 평균 보수를 기입		□□ 개월	□□□□ 만원	
				□□ 개월	□□□□ 만원	
				□□ 개월	□□□□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월평균 일한 횟수	일한 개월수	1회당(일당) 보수
1-3	일용직	월평균 일한 횟수와 1회(1일)당 평균 보수를 기입		□□ 회	□□ 개월	□□만 □천원
				□□ 회	□□ 개월	□□만 □천원
				□□ 회	□□ 개월	□□만 □천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전입소득		
1-4	고용주 자영자	연간 전입소득 연간 총수입 중 집으로 가지고 오는 금액		지난 1년간	□□억 □□□□ 만원	
				지난 1년간	□□억 □□□□ 만원	
				지난 1년간	□□억 □□□□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순소득		
1-5	농어업 경영자	연간 순소득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순소득		지난 1년간	□□억 □□□□ 만원	
				지난 1년간	□□억 □□□□ 만원	
				지난 1년간	□□억 □□□□ 만원	
구분	소득유형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부업소득		
2	부업소득	연간 부업소득 주부 또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직장인의 투잡(two-job)		지난 1년간	□□□□ 만원	
				지난 1년간	□□□□ 만원	
				지난 1년간	□□□□ 만원	
구분	소득 유형	세부항목	연간 소득			
3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기타(자격증 대여 등)	지난 1년간 □억 □□□□ 만원			
4	연금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장해 연금 등	지난 1년간 □억 □□□□ 만원			
5	정부보조금	참전용사보조금, 수급자급여, 보육료지원, 경로연금, 장애수당, 노인교통비	지난 1년간 □□□□ 만원			
6	민간보조금 (※현물제외)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 받는 현금	지난 1년간 □□□□ 만원			
7	기타 (※일시금포함)	(예, 고용보험급여)	지난 1년간 □□□□ 만원			
		()	지난 1년간 □□□□ 만원			

생활비 지출		
1. 월평균 생활비	지난 1년간 지출을 제외하고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였습니까? 월평균 ()만원 0. 없음	□□□□만원
2. 일반 의약(외)품 구매여부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약국에서 처방약이 아닌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처방전이 필요없이 본인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3번으로 가시오	☐
2-1. 월평균 구매액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위의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예. 붕대, 마스크, 살충제 등)을 구입하는 데 대략 월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2-1. 일반의약품 월평균 약 (원) 2-2. 일반의약외품 월평균 약 (원)	□□□만원 □□□□원 □□□만원 □□□□원
3. 약국에서 한약 구매여부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약국에서 한약(침약, 견제, 환약 등)을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4번으로 가시오	☐
3-1. 구매액	귀 가구에서는 지난 방문이후 약국에서 한약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를 지출하였습니까? 한약을 다리기 위해 추가의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포함해 주십시오. 월평균 ()원 0. 없음	□□□만원 □□□□원
4. 시장에서 견제, 침약 구매여부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시장에서 견제, 침약, 환약 등(황기, 인삼 등)을 구입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삼차, 구기자차 등 차를 만들기 위해 구입한 경우를 제외한 침약의 형태거나 다려서 먹기 위해 구입한 경우입니다) ① 있음 ② 없음 ☐ 5번으로 가시오	☐
4-1. 한약 구매액	귀 가구에서는 지난 방문이후 시장에서 견제, 침약, 환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를 지출하였습니까? 한약을 다리기 위해 추가의 비용을 지출하셨다면 포함해 주십시오. 월평균 ()원 0. 없음	□□□만원 □□□□원
5. 건강기능식품구매여부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마트, 약국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선물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있음 ② 없음 ☐ 6번으로 가시오	☐
5-1. 구매액	귀 가구에서는 지난 방문이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얼마를 지출하였습니까? ※ 배즙, 호박즙 등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월평균 ()원 0. 없음	□□□만원 □□□□원
6. 안경/콘택트렌즈 구매여부	지난 (조사원의) 방문이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미용용 선글라스 등 제외) ① 있음 ② 없음 ☐ 7번으로 가시오	☐
6-1. 구매액	위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데 대략 얼마나 지불하십니까? 월평균 ()원 0. 없음	□□□만원 □□□□원

 승인(협의)번호 제 33110 호	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 - 가구용 답지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	---	---

이전 조사	행정 코드 (7자리)	조사구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응답자 가구원 번호	조사표 번호	조사일
		-				0	

현방문	행정동 코드 (8자리)	우편번호	원가구 HID	응답자 가구원번호	조사표 번호
		-			

현 주 소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가구주 성명		집전화번호	() -
응답자 성명		응답자 휴대폰 번호	- -
이사계획	☐ ① 있음 (_____년 _____월) ☐ ② 없음		
이사에정지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호)		

조사일	()월 ()일 ()시 ()분 ~ ()시 ()분		※ 미완사유 코드
설문소요시간	()분		① 늦은 귀가
총 방문 횟수	총 ()회		② 장기 출타
조사원 성명	완료여부	미완사유	③ 부재중(원인 미파악)
	☐ ① 완료 ☐ ② 미완		④ 일부분항 미완
		지도원 성명	⑤ 조사거부
			⑥ 이사(주소추적불가)
			⑦ 사망으로 가구소실
			⑧ 기타
방문가구 기제사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기간보험									
1. 민간보험 가입여부		2. 민간 의료보험 가입여부		2.1. 가입경험유무		2.2. 탈퇴이유 → 24번으로 가시오			
①예 ②아니요		①예 ②아니요 9. 모름		① 예 → 22번 ② 아니요 → 24번 8. 비해당(할가입거)		①보험료부담 ②수령보험금 도움 안 됨 ③의료이용적음 ④질환,보상대상형소 ⑤보험료에 비해 수령금 적음 ⑥국민건강보험 확대 ⑦기타 8. 비해당			
3	4	5	6	7	8	9	10	10-1	
구분	계약변경	가입 가구원번호	주계약의 보험형태	현재까지 불입기간	보험형태	약정서 확인	월납입료	종신/연금 등의 특약의 경우 특약만 월납입료	
	0. 제외 ①유지 ②갱신 ③신규 → 11번 ④해약 → 12번 ⑤완납 ⑥사망 ⑦기타 ⑧누락 9.모름 98. 보장기간완료 (나머지→31번으로)	01. 02. 03. : 55. 부부가입 66. 가족가입 77. 기타공동가입 (태아보험)	①일반질병보험 ②암보험 ③상해보험 ④간병보험 ⑤종신/연금 등의 특약 ⑥기타 9.모름	① 1년미만 ② 1년이상 ~ 2년미만 ③ 2년이상 ~ 3년미만 ④ 3년이상 ~ 4년미만 ⑤ 4년이상 ~ 5년미만 ⑥ 5년이상 ~ 10년미만 ⑦ 10년이상 ~ 15년미만 ⑧ 15년이상 ~ 20년미만 ⑨ 20년이상	①정액형 ②실손형 9.모름	① 예 ② 아니요	_____원 98. 모름	* 주계약 (종신/연금/교육보험 등) + 제해사망금 제외 _____원 98. 모름 비해당: 민간	
11							원	원	
12							원	원	
13							원	원	
14							원	원	
15							원	원	
16							원	원	
17							원	원	
18							원	원	
19							원	원	
20							원	원	

민간보험									
11. 신규 가입이유		12. 해약이유		13. 청구 여부	14. 수령 여부	14-1. 청구거절이유		24. 가입거부 여부	24-1. 거부이유
①건강보험 보장 부족 ②경제적 부담 경감 ③본인 건강상태 좋지 않음 ④고급 의료서비스 ⑤보험설계사 권유 ⑥기타 &비해당		①보험료부담 ②수령보험금 도움 인됨 ③의료이용 적음 ④질환,보상범위 협소 ⑤보험료에 비해 보험금 적음 ⑥국민건강보험확대 ⑦기타 &비해당		①예 ②아니요	①예 ②아니요 &비해당	①보험대상 아님 ②고지의무 위반 ③기왕증 해당 ④보험료미납 ⑤보장기간 초과 ⑥기타 ⑦청구 절차, 대기 중 &비해당 청구한 적 없는 경우, 빈칸		①예 ②아니요	①나이 많음 ②과거/현재 병력 ③직업 ④신용 낮음 ⑤기타 &비해당
수령금	15	16	17	18	19	20	21	22	23
구분	가구원 번호	구분번호 (앞장 번호 참고)	진단명	진단명 코드	청구서 작성시 기입한 병의원 이름	의료이용 형태	병원이용일	주된 수령사유	수령 보험금
	01 : 00. 사망가구원	11 ~ 20 00. 구분번호 없는 경우				①입원 ②외래 ③기타	□□년 □□월	①수술급여 ②입원급여 ③진단확정금 ④특정사망보험금 ⑤요양비 ⑥통원비 ⑦장해급여 ⑧기타	만 천원
1							년 월		만 천원
2							년 월		만 천원
3							년 월		만 천원
4							년 월		만 천원
5							년 월		만 천원
6							년 월		만 천원
7							년 월		만 천원
8							년 월		만 천원
9							년 월		만 천원
10							년 월		만 천원

가구 소득: IN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007. 1. 1 ~ 12. 31)							
구분	경제활동		가구원번호	연간 총급여액			
1-1	상용직	1년간 벌어들인 연간급여총액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등 포함 소득세, 건강·고용·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일한 개월	1개월당 보수		
1-2	임시직	연간 일한 개월 수와 1개월당 평균 보수를 기입			개월	만원	
					개월	만원	
					개월	만원	
					개월	만원	
					개월	만원	
					개월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월평균 일한 횟수	일한 개월수	1회당(일당) 보수	
1-3	일용직	월평균 일한 횟수와 1회(1일)당 평균 보수를 기입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회	개월	천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전입소득			
1-4	고용주 자영자	연간 전입소득			지난 1년간	만원	
		연간 총수입 중 집으로 가지고 오는 금액			지난 1년간	만원	
구분	경제활동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순소득			
1-5	농어업 경영주	연간 순소득			지난 1년간	만원	
		농축산어업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순소득			지난 1년간	만원	

가구 소득: IN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007. 1. 1 ~ 12. 31)					
구분	소득 유형	세부 내용	가구원번호	연간 부업소득	
2	부업소득	연간 부업소득 주부 또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직장인의 투잡(two-job)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지난 1년간	만원
구분	소득 유형	세부항목	연간 소득		
3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임대료, 기타(자격증 대여 등)	지난 1년간		만원
4	연금소득	공적연금, 개인연금, 장해 연금 등	지난 1년간		만원
5	정부보조금	참전용사보조금, 수급자급여, 보육료지원, 경로연금, 장애수당, 노인교통비	지난 1년간		만원
6	민간보조금 (※현물제외)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 받는 현금	지난 1년간		만원
7	기타 (※일시금포함)	(예, 고용보험급여)	지난 1년간		만원
		()	지난 1년간		만원

생활비 지출								
1	2		2-1	2-2		3		3-1
월평균 생활비 0. 없음	약국에서의 일반의약(외)품 구매 ①있음 ②없음		일반의약품 구매액	의약외품 구매액		약국에서의 한약구매 ①있음 ②없음		구매액 0. 없음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만원			원	원				원

4	4-1	5	5-1	6	6-1	7	7-1	7-1
시장에서의 건채, 첨약 구매 ①있음 ②없음	구매액 0. 없음	시장, 마트, 홈쇼핑에서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①있음 ②없음	구매액 0. 없음	안경/콘택트렌즈 구매 ①있음 ②없음	구매액 0. 없음	의료기기 구매 또는 임대 ①구입 ②임대 ③구매한 적 없음	구매액 0. 없음	수리액 0. 없음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원		원		원		원	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

[illegible]

[illegible]

응급서비스 이용				조사표번호	행정동코드				가구 ID				가구원번호	가구원 성명	답지번호	1. 응급이용횟수		
				3												회		
				2				2-1	3	3-1	3-1-1	3-2	3-3	3-4	4	5	6	6-1
횟수	진료비 영수증	입원비 합산	약제비 영수증	응급실 이용 기간				일수	의료기관 이름	소재지	행정동 코드	종류	국공립	기관 코드	교통수단	병원지정 여부	소요시간	지연여부
	①영수증 ②가계부 ③기타	①예 ②아니요	①약국안감 ②영수증 ③가계부 ④기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모름. 999999				□□일간	()시도 ()구시군				①국공립 ②사립	①119 ②병원구급차 ③구급차 ④개인차량 ⑤택시 ⑥도보 ⑦기타		①예 ②아니요	①5분 미만 ②5-10분 ③10-15분 ④15-20분 ⑤20-30분 ⑥30-40분 ⑦40-50분 ⑧50분 이상 9.모름	①예, 늦음 ②아니요 ③지연있음 9.모름
1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시도 구시군									
2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시도 구시군									
	7	8	8-1	9-1	9-2	10	11	12	12-1	13	13-1	14	15	15-1				
횟수	방문 이유	사고 장소	사고 유형	진단명	진단 코드	서비스	수납 금액	의료비 세원	건보이외지원	처방약 구매	처방약	입원 연계	만족도	응답자				
	①사고, 중독 ②질병 ③출산 ④기타	①도로/길 ②사업장 ③교육/보육 ④가정 ⑤레저활동지 ⑥기타 8. 비해당	①운수 ②화재 ③뜨거운물 ④추락 ⑤넘어짐 ⑥물건 ⑦중독 ⑧폭력 ⑨악수 ⑩폭행 ⑪자연치해 ⑫기타 88. 비해당			①수술 ②치료, 처치 ③검사만 ④기타 9.모름	____원 91. 무료 94. 입원비용에 포함 96. 교통사고 97. 산재	①예 ②아니요	①자동차보험 ②산재보험 ③민간(질병, 암보험) ④민간(연금) ⑤비동거자인 확인구 ⑥보험리 ⑦정부 ⑧기타 88. 비해당		①약국 ②약국+병원 ③병원 ④편지함 88. 약국안감 91. 무료	____원 88. 약국안감 91. 무료	①응급실 후 입원 ②타병원 이동 ③귀가	①매우불만족 ②불만족 ③만족 ④매우만족	①환자본인 ②대리인			
1							원				원							
2							원				원							

입원서비스 이용		조사표번호	행정동코드										가구 ID		가구원번호	가구원 성명		답지번호	1. 입원횟수		
		4																			
		2	2-1	3	4	4-1	4-1-1	4-2	4-3	4-4	5	6	7	7-1	8	9	9-1	10	11	11-1	
1	24-1. 간병일	24-2. 간병시간	24-3. 간병비용	25. 과잉전료										26. 같은 이유 입원		26-1. 같은이유 입원횟수					
1	일	시간	94.입원비에 포함	원														회			

[illegible]

부록 4-3: 2008년 상반기 한국의료패널 건강가계부

건 강 가 계 부

- 한국의료패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무총리산하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 사회보험,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보건의료, 사회보장, 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 ⇒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 보건의료, 사회복지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 생산
- ⇒ 주요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 관련 정부위원회 지원 및 국민여론 수렴
-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실시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조사연구 기능 및 역량을 극대화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보장에 관한 효율적 제도개선과 정책 자료의 적기생산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국 의 료 패 널 소 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합니다.
- ▶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규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 ▶ 적절한 의료비 지출 규모를 산정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진 료 비 영 수 증 보 관

-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고·보관하기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 ▶ 영수증과 처방전 2매를 발급해주는 곳으로 단골의원, 약국을 정하세요.
영수증과 처방전 2매 요구(약국용 1매, 보관용1매)는 환자의 권리입니다.
 - ▶ 의료서비스 이용시 ‘처방전-의료기관 영수증-약국 영수증’을 한 세트로 보관하시면 만일의 경우 환자의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증거물이 됩니다.
 - ▶ 연말정산용 외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모아주세요,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내역통보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착오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진료내역통보서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진료비내역조회, 보험료 및 건강검진내역확인 가능)
 - ▶ 질병으로 병의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보관해둔 처방전을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줍니다.

개 인 정 보 관 리

- ▶ 기록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 ▶ 모든 정보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가계부 작성방법



병의원에 다녀왔을 때

- ☞ 우리 가족 누구든지 병의원에 다녀오면 가계부를 작성해주세요.
- ☞ 병원 영수증과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은 영수증 보관함에 함께 모아주세요.

진 료 일	2008년 6월 18일(부터 월 일까지)
가 구 원 이 름	홍 기 동
병 의 원 이 름	튼튼한 이비인후과
질 병 진 단 명	알레르기성 비염
병원수납금액	4,000 원
처 방 에 의 한 약국수납금액	1,500 원



약국에 다녀왔을 때(일반의약품, 보건의료제품을 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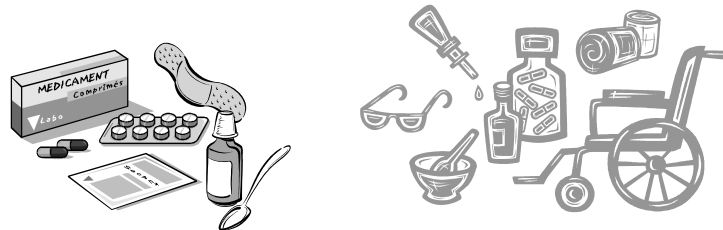
- ☞ 우리 가족 누구든지 약국에 다녀오면 달력에 표시해주세요.
- ☞ 다음과 같은 상황에도 모두 달력에 적어주세요.
 - ▶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 ▶ 시장, 약국에서 한약(첩약, 건재, 환약 등)이나 건강관련제품을 구입한 경우
 - ▶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의료보장구 등의 보건의료제품을 구입한 경우
- ☞ 약국 영수증(또는 약봉투, 카드영수증)은 영수증 보관함에 따로 모아주세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2	13	14	15 안경 150,000원	16	17 홍삼 20,000원	18 영양제 30,000원
19 감기약 1,500원	20 감기약 1,500원	21	22	23 연고, 반창고 4,500원	24	25 소화제, 파스 50,000원

※ 아래의 제품들도 구입내용을 기록해주세요

일반약품, 한약, 의약외품	안경, 의료기기
감기약, 위장약, 소독약, 피부연고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모발약, 피로회복제, 피임약, 멸미약	시력보호용 선글라스 등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한 처방	혈압계, 체온계, 혈당측정기 등
마스크, 안대, 붕대	휠체어, 보청기, 침, 부항기 등
주사기, 콘돔, 임신테스트 시약, 생리대 등	
인삼, 홍삼, 건재/건강기능식품	
수삼, 인삼, 미삼(인삼잔뿌리), 홍삼 등 녹용, 녹각, 당귀, 구기자, 감초 등	
인삼가공제품, 홍삼가공제품 등 로얄제리제품, 스쿠알렌제품, 클로렐라제품, 알로에제품 등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프로폴리스 추출품 등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및 가공한 제품	

※ 건강가계부를 기입하실 때에 영수증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8 한국의료패널 건강가계부

분류 번호

가 구 번 호

담 당 자



문의사항은 이곳으로 연락주세요.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패널팀(412호)

☎ 안내전화 080 - 380 - 8210

☎ 보건의료패널팀 02) 380 - 8351, 8355, 824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연구원에 바라는 점)



진 료 일	2008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가 구 원 이 름	
병 의 원 이 름	
진 단 명	
병원수납금액	원
처방에 의한 약국수납금액	원

진 료 일	2008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가 구 원 이 름	
병 의 원 이 름	
진 단 명	
병원수납금액	원
처방에 의한 약국수납금액	원

※ 뒷장의 플라스틱 백에 다녀오신 병원/약국에서 받은
영수증, 처방전, 약봉투를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5: 조사지침서〉

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 조사 지침서

목 차

1. 조사 개요	3
2. 조사내용의 개념적 틀	5
3. 조사 흐름도	6
4. 문항별 지침 내용	7
가. 가구원 변동사항	7
나. 가구원 일반사항	8
다. 주거형태	10
라. 의료이용표지	10
마.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10
바. 3개월 이상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10
사. 응급서비스 이용	11
아. 입원서비스 이용	14
자. 외래서비스 이용	19
차. 출산	24
카. 민간의료보험	25
타. 생활비 지출	42
부록 1: 산업분류	43
부록 2: 직종분류	71



1. 조사 개요

1) 조사의 필요성

- ☐ 고령화, 질병양상의 변화,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보건재정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배분의 정책적 판단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
 - 보건의료부문의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원 확보 및 자원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마련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본인부담에 관한 기초 자료가 전무한 실정으로 의료의 보장성 및 의료비 적정성 등을 통한 의료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분석에 제한이 있음.
- ☐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 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이하 MEP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MEPS는 연구자와 전문가들에 의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의료비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해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evidence-based health policy)의 수립·시행·피드백이 가능함.
 -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원인과 결과, 영향요인을 밝혀냄으로써 국민의료비 및 의료이용에 대한 과학적 관리를 가능하게 함.
- ☐ 이를 위하여 본 사업은 의료이용 및 의료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한 연구를 수행하여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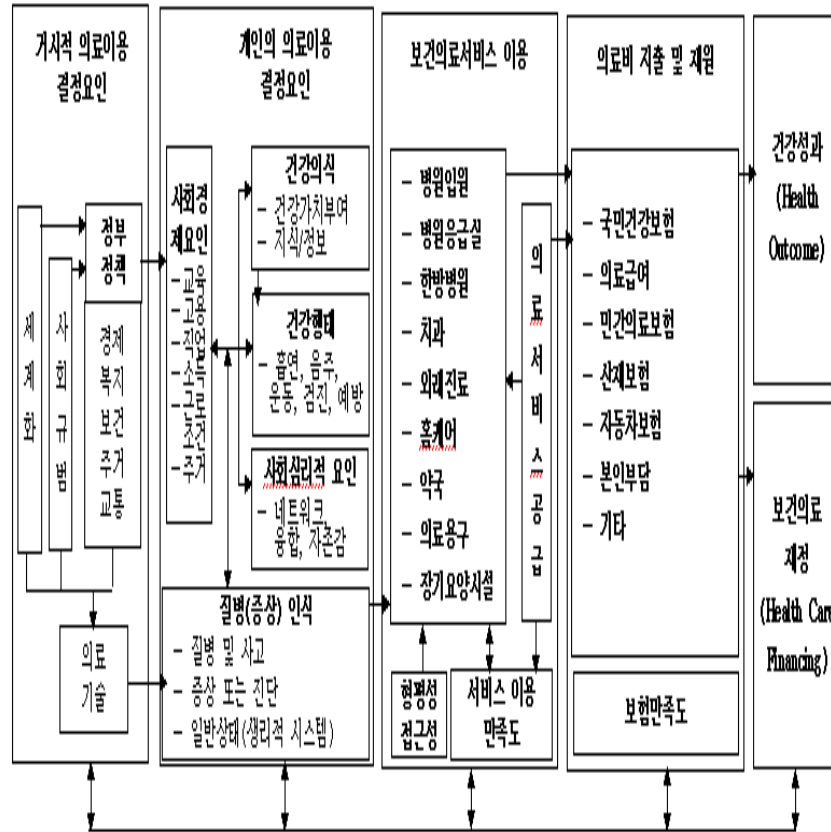
2) 사업의 목적

- 보건의료 이용과 비용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추정하고, 의료전달시스템 및 보험체계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료이용 및 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해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정책(evidence-based health policy)의 수립·시행
- 조사모형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와 심층적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내용을 포함하는 모형 구축
- 비급여 등 본인부담관련, 의약품 지출, 민간보험관련 통계생산

3) 조사내용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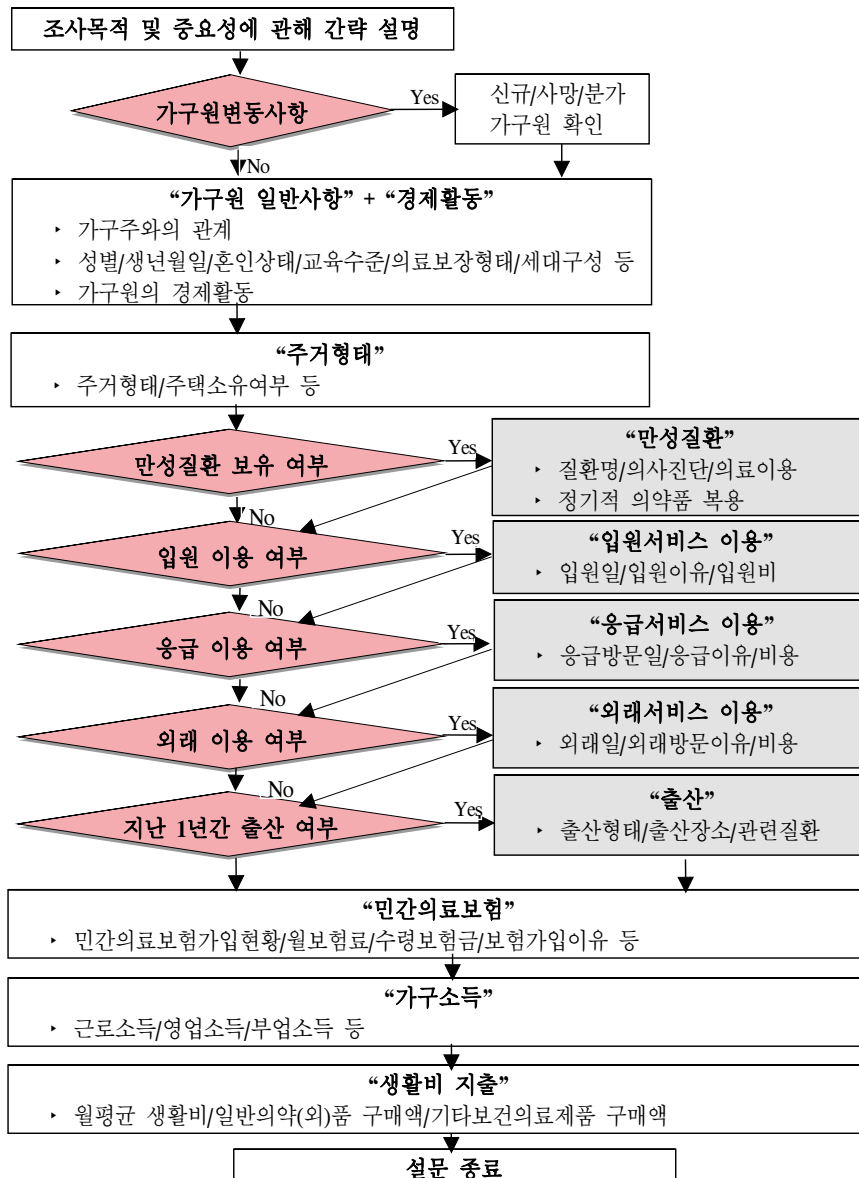
구분		주요 조사 내용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 개인의 인구학적 정보 · 자산규모 · 고용 및 소득
보건의료 접근성 및 만족도		· 의료이용시 만족도 · 의료기관 접근성 · 치료의 적시성 여부 등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 보유 만성질환 · 만성질환에 따른 의약품 복용 행태
의료이용 및 지출	응급서비스 이용 및 지출	· 방문이유 · 방문기관 종류(서비스 종류) 또는 형태
	입원서비스 이용 및 지출	· 방문목적 · 이용량
	외래서비스 이용 및 지출	· 치료 및 검사내용 · 예방 및 검진 · 간병인비용
	출산 및 지출	· 교통수단, 교통비용 · 병의원 수납금액 · 처방약 수납금액
의료비 재원		· 민간의료보험 가입 및 지출 규모 ·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및 수령 규모

2. 조사내용의 개념적 틀



3. 조사 흐름도

1) 전체 조사 흐름도



4. 문항별 지침 내용

☐ 기타사항에는 반드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가구원 변동사항

1. 가구원의 이름과 가구원 번호 기재

- ▶ 이전 가구원 번호는 유지되도록 가구원 번호 기입
- ▶ 누락된 경우는 이전 가구원 번호 이후에 연결하여 번호 부여
- ▶ 신규가구원은 마지막에 기입
- ▶ 조사 당시 입원 중이었거나 시설입소 중이신 분도 포함하여 기입

이전 가구원 번호	가구원 번호	성함	변동사항	비고
01	01	홍길동	2	사망 가구원
02	02	어여쁜	0	변동없음
03	03	나제외	6	제외
04	04	홍할배	0	변동없음
-	05	홍할매	7	누락된 경우
-	06	홍똥똥	7	누락된 경우
-	07	홍똥순	1	신규 가구원

- ▶ 가구원이 아닌 경우였으나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다음 문항부터는 빈란으로 둬. 이 때에 다른 사람의 가구원번호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

2. 가구원 변동 유무

- ※ 이전 조사 때와 변동사항을 필히 기재하도록 함
- ▶ 이전 조사에서 누락된 가구원 기재
- ▶ 이전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어야 하는 가구원 번호 기입

3. 신규가구원이 있는 경우

- ▶ 조사 대상 가구에 새로 들어 온 날짜(연도, 월)를 기입
- ▶ 어떻게 신규가구원으로 되었는지 기재

4. 사망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사망일과 사망사유에 관해 기재
- 특정 질환으로 사망하신 경우에는 질병명 기입
- 질병명과 함께 진단코드 기입 (※진단코드 부록 참고)

5. 분가가구원이 있는 경우

- 분가가구원이 분가형태 및 날짜,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입

[예문]

이전 가구원 번호	가구 원 번호	성함	변동 사항	신규일	신규 형태	사망일	사망 원인	사망 질환 & 코드	분가일	분가 형태	연락 처	주소
			0. 없음 ①신규 ②사망 ③분가 6. 제 외 7. 누 락	□□년 □□월	①출생 ②입양 ③결혼 ④합가 ⑤기타	□□년 □□월	①노환 ②교통 ③직장 ④기타 사고 ⑤질병 ⑥기타	사망 질환명 질병 코드	□□년 □□월	①결혼 ②이혼 ③불화 ④취업 ⑤여건 ⑥기타		
01	01	홍길동	2	년 월		08년 02월			년 월			
02	02	어여쁜	0	년 월		년 월			년 월			
03	03	나제외	6	년 월		년 월			년 월			
04	04	홍할매	0	년 월		년 월			년 월			
	05	홍할매	7	년 월		년 월			년 월			
	06	홍똥똥	7	년 월		년 월			년 월			
	07	홍똥순	1	08년 03월	1	년 월			년 월			

나. 가구원 일반사항

예문)

총가구원수	가구주	세대구성
05	04	39

1. 총가구원수: 조사시점에서 사망가구원(홍길동)제외한 가구원 수

2. 가구주 번호: 현 조사시점에서 가구주는 “01”에서 “04”로 변경됨

※ 가구주: 현재 가구를 대표하는 자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자 또는 세대주로, 응답자 응답 기준에 따름

3. 세대구성: 직계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세대 구성을 기입

가구원 번호	성명	4	5	6-1	6-2	7	8	8-1	9	10	10-1
		가구주 관계	성별	생년	월일	혼인	교육	졸업	동거	의료 보장	대표
01	홍길동	012	1	1970	0514	1	51	4	5	1	02
02	어여쁜	022	2	1972	0615	1	43	5	1	1	02
04	홍할배	010	1	1940	0810	1	23	1	1	1	02
05	홍할매	020	2	1945	1211	1	03	8	1	1	02
06	홍똥똥	112	1	2003	1212	5	01	8	1	1	02
07	홍똥순	112	2	2008	0322	5	01	8	1	1	02

• 가구원 일반사항의 경우 조사시점으로 기입

• 사망가구원이나 분가가구원의 경우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경우를 기준으로 기입

• 지난 방문 때는 생존해 계셨으나 현 조사시(2008년 1차)에 사망(“홍길동”)하셨을 경우에도 가구원 일반사항, 의료이용 등 모두 기입

※ 2008년도 2차 조사(하반기)부터 “홍길동”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게 됨.

가구원 번호	성명	11	11-1	12	12-1	13	14	15
		장애 유형	등급	경제 활동	비경제 이유	지위	근무 형태	산업분 류
01	홍길동	88	8	2	9	8	8	
02	어여쁜	88	8	1	8	1	2	
04	홍할배	88	8	2	1	0	1	
05	홍할매	88	8	2	4	8	8	
06	홍똥똥	88	8	2	8	8	8	
07	홍똥순	88	8	2	8	8	8	

※ 고령은퇴자의 경우 은퇴이전에 가장 주된 경제활동에 대해 기입
(15번 ~ 19번)

15. 종사상 지위

-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 미만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끝날 것이라 생각되는 경우(단, 한 직장에서 오래다닌 경우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임시직임.)
-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이거나, 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경우

16. 근무시간형태

- 전일제: 시간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적은 시간 일하는 경우

17. 산업분류

- 근무하고 있는 산업(업종)이 해당하는 산업을 기입
- 예) 대한통운에서 사무직을 보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분류는 “운수업”에 해당하며 직종에는 “사무종사자”로 기입

196 2008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진행 보고서

- 예) 00호텔에서 시설관리자로 있는 경우에는 산업분류는 “숙박/음식점업”이며 직종은 “14. 건설, 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에 해당

19. 직종

- 예) 택배원은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다. 주거형태

- ☞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거소유 및 시세를 기입하되, 2008년도에 새로 형성된 가구일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라. 의료이용표지

- ☞ “예”라고 응답한 가구원이 있을 경우에, 가구원별로 만성질환, 의약품복용, 입원, 응급, 외래, 출산 답지 작성

2. “생활/건강증진 관련 의약품

- 비만치료제,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비타민, 영양제(예, 아로나민골드, 뼈콕씨) 등이 포함

마.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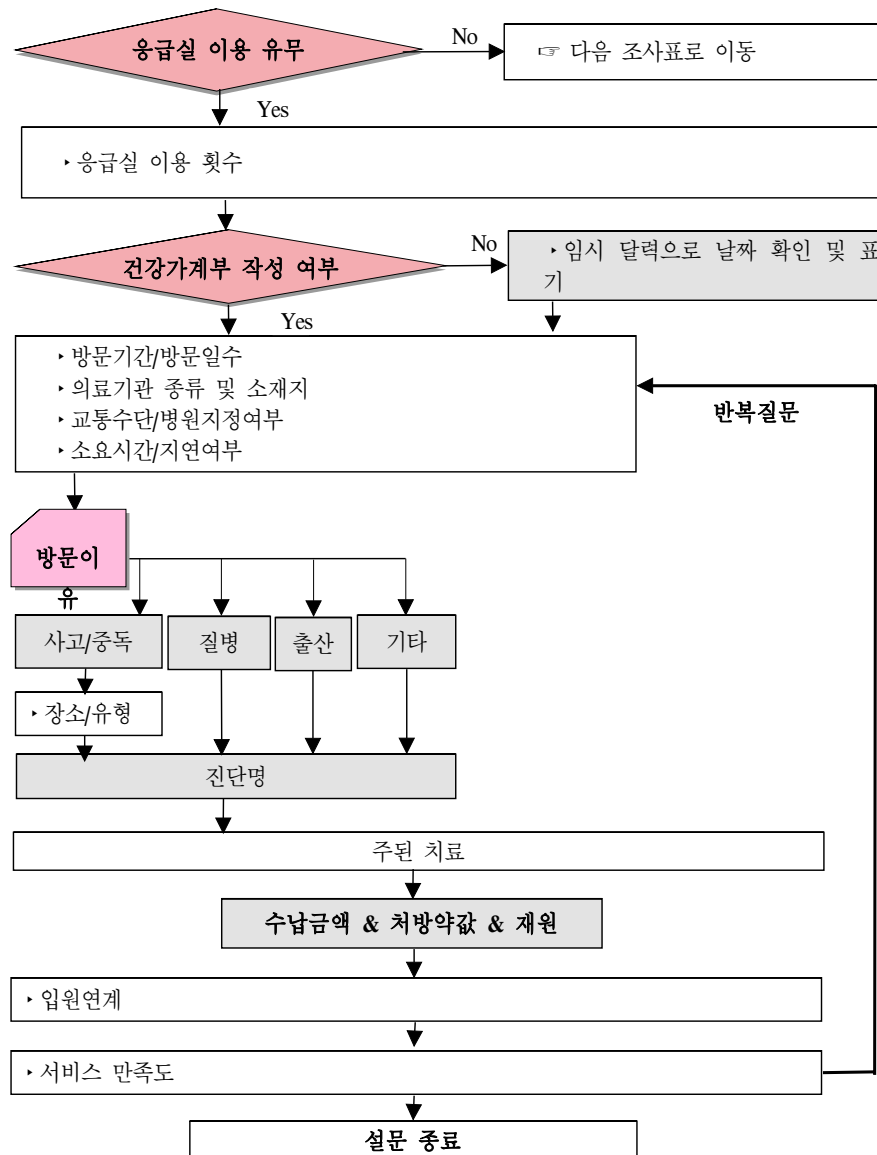
-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만 기입 (약국, 마트나 홈쇼핑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제외**)
- 비만, 탈모,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처방약 + 비처방약 모두 포함
- 만성질환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 또는 비타민제는 “만성질환 조사표” 부분에 포함

바. 3개월 이상 생활/건강증진관련 의약품

-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만 해당
- 비만, 탈모, 발기부전치료제 등은 처방약 뿐아니라 비처방약도 포함하여 작성
- 만성질환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 등은 “만성질환 및 의약품 복용” 조사부분에서 설문

사. 응급서비스 이용

1) 조사 흐름도



☞ 가구원별로 답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만성질환으로 다녀오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만성질환부터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응급실 방문 횟수

- 가구원 중 응급실에 계셨던 분이 있다면, 지난 (조사원의) 방문 이후 방문한 횟수를 기입함.

⇒ 영수증 보관 여부

- 응답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보관”에
-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수증 보관”에
- 입원비에 응급실 이용료가 합산되어 정산된 경우에는 “합산여부에서 예”로
-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가계부에 수납금액을 기록한 경우에는 “가계부기록”에
- 가계부에 수납 금액 없이 날짜만 기입하거나 아무 것도 기입해 둔 것이 없다면 “기억의존”으로
-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응급실 방문일

- 연도(08년) 및 월(03월)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을 모를 경우 “98”을 기입하여
⇒ “080398”
- 3월 3일인지 4일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급실 이용 일수로 맞추어서 3일 또는 4일로 기입

3. 의료기관 이름

- “입원서비스 이용”의 경우와 동일

4. 교통수단

- 소방 구급차 이외에 병원 구급차, 사단법인 구급차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구급차 이용료가 있으므로 추후 수납금액 질문시 반드시 재확인

5. 병원지정여부

- 00병원으로 지정하였으나 00병원에 가지 않고 응급차 마음대로 간 경우에는 “아니오”로

6. 소요시간

- 응급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응급실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 예, 불광병원 응급실에서 잠시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나리 병원 응급실로 이송한 경우에는 “응급실 ⇔ 응급실”간에 걸린 시간 기입
- 예, 애가 5시간째 열이 나서 급히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결정한 후 응급실에 갔다면, 결정 후 응급실까지 걸린 소요시간 30분을 기입

7. 방문이유

- 응급상황은 아니었으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간 경우에도 “질병 또는 사고”의 해당하는 번호 기재

10. 서비스

- 응급실에서의 주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당 번호 기입
- 예를 들어,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에 응급실에 x-ray만 찍은 경우는 “검사만”에 해당
- 예를 들어, 눈에 이물질이 들어 간 후 응급실에 안과검사만 한 경우는 “검사만”에 해당

11. 수납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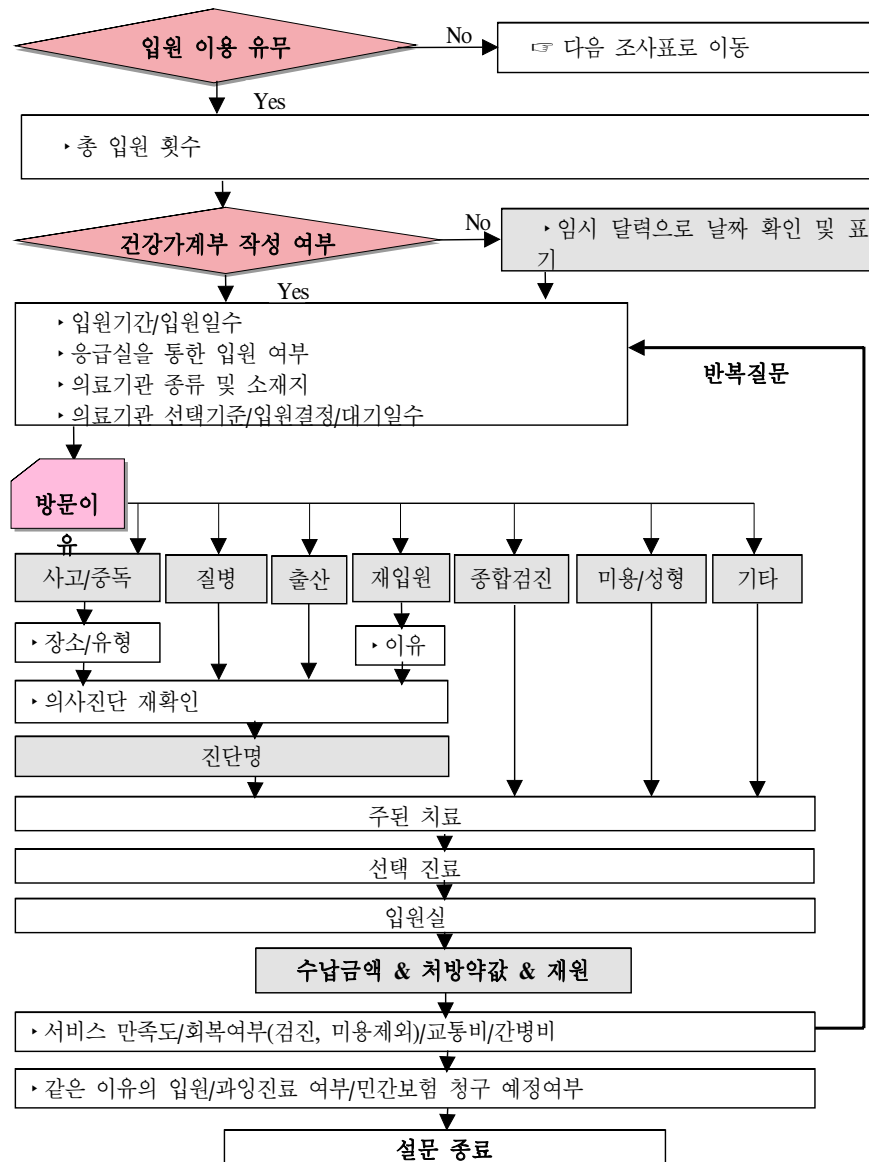
- 사단법인 구급차 또는 병원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수납금액에 합산
- ‘91’ 무료
- ‘94’ 응급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입원비용 정산시 포함하였을 경우
- ‘96’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처리
- ‘97’ 산재처리

15. 서비스 만족도

- 조사 당시에 환자가 있다면 환자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물어보며, 대리응답여부에 “환자본인”으로 기입

아. 입원서비스 이용

1) 조사 흐름도



☞ 가구원별로 답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만성질환으로 다녀오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만성질환부터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입원횟수

- 가구원 중 입원하신 분이 있다면, 지난 (조사원의) 방문 이후 입원한 횟수를 기입함.

⇒ 영수증 보관 여부

- 응답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보관”에
- 카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영수증 보관”에
-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가계부에 수납금액을 기록한 경우에는 “가계부기록”에
- 가계부에 수납 금액 없이 날짜만 기입하거나 아무 것도 기입해 둔 것이 없다면 “기억의존”으로
-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입원기간

- 연도(08년) 및 월(03월)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을 모를 경우 “98”을 기입하여
⇒ “080398”
- 3월 3일인지 4일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일수로 맞추어서 3일 또는 4일로 기입

2-2. 입원일수

-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일수를 계산하여 조사원이 직접기입

3. 응급시작

- 입원당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임

4. 의료기관 이름을 기재하고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는 () 시도 () 구시군을 기입함.

- “행정동코드”를 확인하여 반드시 코드 8자리 중에 앞에서 5자리 수 입력
- “의료기관 분류 코드”를 확인하여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을 구분
- “요양기관코드”를 확인하여 “국공립”과 “사립” 구분
- 해당의료기관의 “요양기관코드” 8자리 입력

5. 의료기관 선택기준

- 입원하게 된 의료기관을 선택한 가장 주된 이유 한 가지를 기입
- 만약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좋은 병원이라 추천했다”고 응답할 경우에는 추천한 이유가 의료진에 있는지 의료장비에 있는지를 다시 캐어 물어 ①번 또는 ②번의 해당번호에 기입
- 응급실을 통하여 바로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1) 첫째, 응급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선택이유(① ~ ⑧)를 기입
 - 2) 둘째, 응급실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0. 선택안함”으로 기입

6. 입원결정

- 특정의료기관의 선택(예, 서울대병원에 갈지 서울아산병원에 갈지)이 아니라 입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통원치료로 대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기입

7. 대기여부

- 병원을 방문한 당일에 입원을 빨리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병실이 없다든가 수술실 예약이 밀려있어서 며칠간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
- 대기하였다면 며칠을 기다렸는지 일수 기입

8. 입원이유

- 입원이유는 크게 “①~⑦”으로 구분됨
- 사고를 당해서 입원한 경우라면 “사고/중독에
- 속이 쓰려서 입원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질병”에
- 출산을 위해 입원한 경우라면 “출산”에
- 임신중독증이 심하여 입원한 경우라면 “질병”에
- 1개월 이내 동일질환으로 재입원한 경우(다른 병원의 입원도 포함)라면 “재입원”에
 - 퇴원한지 1개월 이내에 동일질환으로 입원한 경우에 해당
 - 다른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동일질환일 경우에는 포함
- 만약 비만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미용/성형/비만”에
- 이외에 달리 아프지 않지만 잠시 병원에서 쉬는 경우는 “기타”로 표기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9. 사고/중독 장소

- 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교육시설”로
- 일반인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레저활동지”로
- 직장인이 특정 교육기관에서 연수받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 교사가 학교에서 사고 난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 직장인이 직장 등반대회에 갔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레저활동지”로 기재

10. 재입원 이유

- 1개월 이내에 수술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수술하지 않았지만 증상이 다시 악화 되는 경우를 보고자 함
- 백내장의 경우 왼쪽을 수술하고 1개월 이내에 오른쪽을 수술할 경우에는 “계획된 주기적 치료”에 해당

11. 의사진단 신뢰/재확인

- 입원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이 정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또는 상담을 해 본 적인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입원하신 병원에 권유 또는 의뢰, 이송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불광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불광병원 이전에 새싹병원과 개나리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하였다면 재확인 횟수는 “2회”가 됨.

12. 진단명

- “진단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진단명과 진단코드 입력
- 예, “혈압”이 아니라 “고혈압”으로 정확히 기재
- 출산의 경우에도 해당 코드가 있으니 꼭 기입

13. 주된 치료

- 수술인지 수술이 아닌 치료인지, 또는 검사만 하고 나온 경우인지를 구분

14. 선택진료 권유 유무

- 선택진료를 의료기관 측에서 권유한 적이 있는지 기입
- 만약에 입원시 외래의 담당의사가 자동으로 보게 되어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권유는 받지 않았지만 선택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므로 “② ⇒

①”로 기재

15. 입원실

- 처음에 입원한 입원실 종류를 기재
- 처음입원실이 2인실이었고 이를 희망하여 입원한 입원실이라면 희망입원실은 “예”로
- 처음입원실에서 이동한 적이 없으면 “0”으로 기재

16. 수납금액

- 퇴원하실 때 수납창구에 직접 지불한 금액을 기재
- ‘91’(2자리): 무료
- ‘94’(2자리): 응급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입원비용 정산시 포함하였을 경우
- ‘96’(2자리):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처리
- ‘97’(2자리): 산재처리

17. 처방약 수령 또는 구매 유무

- 원내외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인지, 퇴원시 퇴원정산 영수증에 약값이 포함되어 약을 병원에서 직접 받은 경우인지를 구분
- 원내외 약국이용 유무가 아니라,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따로 구매하였는지를 캐어 묻기
- 약국이 원내에 있더라도 병원과는 관계없이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으니 구분하여야 함.

18. 원외 약국이나 원내 약국에서 환자(또는 가족)가 돈을 지불하고 약을 구매하였을 경우에 지불한 처방약값을 기입

20. 의료비 재원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주는 요양급여를 제외하고 민간보험사, 산재보험, 비동거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게 지원 또는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
- 지자체의 도움으로 무료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납금액은 “91원”이 되면 의료비 재원에는 “7. 정부/지자체”로 기입

21. 서비스 만족도

- 조사 당시에 입원한 환자가 있다면 환자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물어보며, 대리응

답여부에 “환자본인”으로 기입

22. 회복여부

- 종합건강검진패키지/미용·성형의 경우에는 “⑧ 비해당”

23. 교통수단

- 응급실에 바로 입원한 경우에는 “⑧ 비해당”

23-1. 교통시간

- 발생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병원까지 소요된 시간 기입
- 회사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회사⇔병원” “타병원⇔병원”간 소요시간

23-2. 교통비

- 자가차량(오토바이, 경운기 포함)의 경우에는 “77”기재
- 동반자 포함

24. 간병비

- 친인척이 000원의 돈을 받고 간병하기로 약속한 다음 간병하는 경우는 “유급간병인”으로 처리
- 단, 고마움의 표시로 얼마간 주는 경우에는 간병인을 “친인척”으로 기재
- 실제 지출한 비용이며, tip 지출은 제외

자. 외래서비스 이용

4. 방문유형

구분	예시
첫방문	감기, 급성 복통, 급성피부염, 예방주사, 건강검진,
재방문	2일 후의 감기치료, 검진결과 확인,
정기적 방문	만성질환 관리
첫방문 + 정기적 방문	감기+당뇨병관리,
재방문 + 정기적 방문	2일 후의 감기치료 + 관절염 물리치료
기타	진단서 발급, 행정적 처리, 처방전 대리수령

예) 3월 3일에 감기+당뇨병관리로 방문 ⇒ “첫방문 + 정기적 방문”

3월 5일에 감기 ⇒ “재방문”

3월 7일에 물리치료 ⇒ “정기적 방문”

7. 방문이유

- skip을 잘 따라가 주세요

8. 암검진

-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암검진을 받았다면 구체적인 검사내용 기입
- 복수 응답의 경우

예)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1, 2, 6, 7”로 기입

10. 검사종류

- 내시경 검사
 - 내시경이란 작고 긴 유리관 속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TV화면을 통해 조직이나 장기를 관찰하며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의료 장비.
 - 종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기관지내시경, 방광내시경, 수면내시경 등
 - 필요시 조직 생검(biopsy)도 시행됩니다. 검사 소요 시간은 5-10분이며, 치료를 위한 내시경인 경우에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조직 생검(biopsy)
 -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암세포의 유무를 검사하는 과정.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검사이다.

▶ 초음파(Sonography)검사

- 초음파의 짧은 펄스를 생체 내에 입사시켜 조직의 경계면으로부터 되돌아 오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생체 내부 구조를 영상으로 그려내어 의학적 진단
- 초음파검사시 대상질환
 - ① 간: 간세포암, 전이성간암, 간낭종, 간농양, 혈관종,간혈종,간경변증,지방간, 급.만성간염, 간내담석증, 간내담관확장증 등.
 - ② 담도계: 담석증,담낭염, 담낭폴립, 담낭암, 선천성총담관확장증, 담관암, 과형성성담낭증.
 - ③ 췌장: 급.만성췌장염, 췌장암,췌가성낭종,췌석
 - ④ 비장: 낭종,백혈병,악성임파종
 - ⑤ 신장: 신장결석,수신증,단순성낭종,다발성낭종,신장종양(양성 및 악성),신주위농양, 및 혈종, 신장이식평가.
 - ⑥ 방광: 방광암,방광결석증, 종양 등.
 - ⑦ 전립선: 전립선암, 급.만성전립선염, 전립선결석증,등
 - ⑧ 부인과: 자궁근종,자궁암,난소암,난소낭종,포상기태,태아기형,태아질환등등.
 - ⑨ 갑상선: 갑상선비대, 갑상선종양, 갑상선낭종등
 - ⑩ 기타:소화관질환 및 종양
 - ⑪ 관절: 인대 및 연골손상 등 .

▶ CT검사

- 전산화 단층 촬영(CT)은 검사대(Gantry)안에 회전하는 X-선관과 검출기를 이용하여 인체내부를 단면으로 잘라내어 영상화 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CT 영상은 일반 방사선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연부조직(혈관, 뇌척수액, 종양.. 등)의 작은 차이도 표현할 수 있으며, 또 얻어진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3차원 영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 검사에 따라서 조영제라는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검사시간 6시간 전에 금식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하시기 전 가스(발포제) 및 물을 드시고 검사하기도 합니다.

▶ MRI검사

- MRI(자기공명영상촬영)는 자석과 수소가 핵심이다. CT가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강력한 자기장과 전기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거대한 자석 안에 사람이 누우면 고주파가 나온다. 그러면 몸속의 수소분자들은 나란히 줄을 선다. 이처럼 자석의 힘에 따라 이쪽저쪽 돌아다니며 분주히 줄을 서는 수소의 움직임으로 질

병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MRI 검사의 원리인 것이다.

- 횡단면, 종단면으로 세세하게 잘라보지 않고는 발견하기 힘든 뇌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허리 뼈마디를 매우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 연골, 인대, 혈관 및 신경 등의 연부조직 또한 매우 뚜렷하게 촬영할 수 있다.
- 급성 뇌경색유방암, 간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 연부조직 암의 범위를 파악하는데에도 널리 활용

• PET검사

-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에 암이 있는지를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검사입니다.
- PET를 이용하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수 mm 크기의 미세 암세포나 종양 조직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의 전이와 재발 여부, 항암제 투여 효과 등을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PET 검사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의약품 (FDG 등등..)을 체내에 주사하면 주변전자와 만나서 180 도 반대방향을 가진 두개의 감마선을 체외로 방출시키게 되는데 이 두개의 감마선을 PET의 원형 검출기에서 동시 인식하여 컴퓨터를 통해 영상화하는것을 말합니다.
- CT나 MRI는 종양의 크기나 모양을 보지만 PET검사는 모양보다는 암세포의 특성을 영상화하기 때문에 양성과 악성종양을 정확히 감별할수 있습니다.

• 뇌파검사

- 뇌질환자의 뇌세포활동을 보기위한 검사 또는 치료에 활용

11. 치료내용

- 자폐아 치료, 음악/미술치료를 할 경우에 약물치료와 병행하면 “약물치료”로, 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치료 이외의 정신요법”으로

12. 충치치료 재료

- 레진: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로서 손상된 치아부위가 비교적 크지 않거나 잘보이는 부위여서 미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치아 색과 동일)

영수증 보는 방법

※ 실제 병의원 수납처에 지불한 금액을 기입

- 만약 이미 납부한 금액(예약금)이 있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00월 00일에 병원에서 수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진료내역		요양급여(①+②)	비급여 ③	금액산정내역	
필수항목	진찰료			진료비총액 ④(①+②+③)	
	입원료				
	식대				
	투약및조제료			환자부담총액 ⑤(①+③)	
	주사료				
	마취료			이미 납부한 금액 ⑥	
	처치및수술료 (시술 및 처치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예: X-레이 등)			기타(할인)	
	방사선치료료 (예: 항암치료)				
	치료재료대			수납금액⑦(⑤-⑥)	수납금액
	한방물리요법료				

선택항목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 T 진단료				
	M R I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수혈료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제증명료 등				
	계				
본인 부담금 ①					
보험자부담금 ②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제비	
조제일자	월 일
약국이름	약국
약국주소	()구/군 ()동/읍/면
투약일수	일
약제비총액 (①+②+③)	원
본인부담금①	원
보험자부담금②	원
비급여및전액본인부담③	원
약국에 지불한 수납금액 (①+③)	원

←

처방약 수납금액

차. 출산

☞ 지난 1년간(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입니다.

※ 2008년 2월에 출산하셨다면 이는 올해가 아닌 2009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정기 산전 진찰

- “규칙적”: 예약날짜에 꼭 맞춰서 가지 않더라도 정기 진찰을 모두 받은 경우
- “가끔씩”: 정기 진찰 횟수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몇 차례 진찰을 받지 않은 경우

3. 출산형태

- 제왕절개(응급): 조산기가 있어서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왕절개한 경우

6. 모성합병증

- 출산 시 임신부(어머니)가 경험한 증상

7. 신생아합병증

- 출산 시 태어난 아기(신생아)가 경험한 증상

8. 선천성 기형

- 태어난 아기(신생아)의 팔, 다리, 혹은 입술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9. 신생아가 선천성 대사이상

- 선천성 대사이상이란 효소(또는 단백질)가 선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생기는 유전성 질환

11-2.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의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불하신 금액을 말함
- 가정에서 도우미를 고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카. 민간의료보험

1.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 회사 목록

생명보험사명(23개사)	손해보험사명(27개사)	유사보험사명(33개사)
대한생명보험(주)	메리츠화재	농업협동조합
삼성생명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수산업협동조합
흥국생명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	새마을금고
교보생명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신용협동조합
녹십자생명보험(주)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주)	우체국보험
신한생명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한교원공제
LIG생명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한의사협회공제
금호생명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학교재해복구공제
미래에셋생명보험(주)	LIG손해보험(주)	한국지방재정공제
케이비생명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한국해운공제
동부생명보험(주)	아메리칸홀어슈어런스컴파니 한국지점	한국선주상호보험
동양생명보험(주)	웰튼재보험(주)한국지점	전국택시공제
ING생명보험(주)	뮌헨재보험(주)한국지점	전국버스공제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	스위스재보험(주)한국지점	전국개인택시공제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임플로이언스 리인슈어런스 코퍼레이션 한국지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
하나생명보험(주)	동경해상화재보험(주)서울지점	전국전세버스공제
알리안츠생명보험(주)	스코 리인슈어런스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 한국지점	조선공업협동조합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서울보증보험(주)	건설공제
PCA생명보험(주)	코리안리재보험(주)	전문건설공제
뉴욕생명보험(주)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	부동산중개업협회
라이나생명보험(주)	페더럴인슈어런스컴퍼니 한국지점	소프트웨어공제
AIG생명보험(주)	로얄앤드선얼라이언스인슈어런스(주) 한국지점	엔지니어링공제
카디프생명보험(주)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	기계공제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정보통신공제
	교보자동차보험(주)	전기공사공제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	군인공제
	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주)	대한소방공제
		대한지방행정공제
		세우회
		경찰공제
		철도청공제
		담배인삼공제
		관우회

2. 주계약 보험형태별 사례

1) 질병보험

암보험	급여내용
암진단자금	책임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지급
암입원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계속 입원시, 일정기간 초과 1일당 입원비 지급
암수술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수술비를 각각 지급
암요양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계속 입원비 생존하여 퇴원한 경우 요양비 지급
암통원 치료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 통원치료비 지급
기타	

※ 보장 만기일을 정해 놓고 있음(70세까지 보장, 80세까지 보장 등)

2) 특정 질병보험(예: 뇌졸중, 심근경색, 3대 질병보장: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질환, 7대 질병보장: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

특정 질병보험	급여내용
질병 진단자금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시 각 질병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 지급
입원비	주요 질병으로 일정기간 이상 계속 입원시, 일정기간 초과 1일당 입원비 지급
수술비	주요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수술비 각각 지급
기타	

※ 주계약이외에 특약상품을 추가로 선택

특약형태: 진단생활비 특약, 장기간호 특약, 질병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특약, 사망보장 등

※ 치명적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CI): 암,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이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일정금액을 생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망시 지급하는 상품

3) 실손보장형 질병보험

실손보장형 질병보험	급여내용
입원의료비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치료금액의 일부를 부담 예) 진찰료, 상급병실이용료, 식대, 검사료, 특진료, MRI, 수술비 등
통원치료비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을 통원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치료금액의 일부를 부담 예) 진찰료, 검사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통원수술비 등
기타	

- ※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 특약가입가능
- ※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며,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이 있음

4) 상해보험

상해보험	급여내용
상해사망금	상해로 사망 또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후유장애금	상해로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 지급
상해의료비	상해로 인해 치료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180일) 이내 소요된 의료실비 보상
골절수술비	골절로 수술받는 경우
화상수술비	화상으로 수술받는 경우
기타	

5) 간병보험

- ※ 일부회사에서 장기 간병 상품(예, 대한생명의 무배당대한장기간병보험, 교보생명의 무배당사랑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약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 ※ 주계약이 질병보험이고 특약으로 간병비가 부가된 경우, 예를 들어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180일 이상 ‘치매상태’가 지속될 경우 치매간병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6) 생보사와 손보사의 주계약 보험 유형 비교

구분		유형 및 내용
생명보험	질병보험	유형: 의료비보험 내용: 특정 질병에 대한 진단급여금, 입원급여금, 건강생활자금, 수술급여금 등 정액지급
	상해보험	유형: 의료비용보험과 소득보상보험의 혼합형태 내용: 재해로 인한 사망, 장애시 고액을 보장, 수술비, 입원비, 생활보조금 등 각종 특약부가
	장기간병보험	유형: 재해장해연금보험 내용: 간병일수 180일 이상일 때 간병급여금, 간병연금, 재해연금급여. 단, 피보험자가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진단 받을 때는 보험계약 소멸

구분		유형 및 내용
손해 보험	상해손해 보험	유형:일반상해보험(의료비), 여행비, 학생안전보험, 건강생활보험 등 내용:상해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통원비, 요양비 지급,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해시 소득 보상금 지급
	장기손해 보험	유형:상해보험(의료비), 질병손해보험, 상해 및 질병손해보험, 비용손해 보험 내용:상해로 인한 각종 의료비 및 소득보상금 지급, 만기환급금은 장기손 해보험의 특징

3. 손보사 및 생보사의 보장범위

구분	손보사	생보사
보장대상 질환	- 거의 모든질환(정신과, 치과제외)	- 주요질환 수술비, 입원비 -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특정질환
보상금액	- 실제 진료비용 보상(보상한도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법 정본인부담금도 지급	- 명시된 금액 지급(약관명시기준) - 정액지급(정액보장)
장점	- 넓은 보장범위(거의 모든질환) - 비교적충분한 의료비 지급(질병입원비)	- 특정질환 고액 보장 - 진단, 입원, 수술 중점 보장
단점	- 실손보장한도가 낮은 경우 보장수준 이 떨어짐 - 까다로운 가입조건 - 5년마다 보험료 재산정	- 특정질환 한정된 보장 - 통원시 의료비 보장 안되는 경우 많음

구분	손해보험사 상품	생명보험사 상품
기본 원칙	위험에 대한 실손보상	생명, 신체의 고위험 정액 보장
사망	상해 사망 위주, 최대한도 낮은편	일반사망도 고액 보장가능
상해	가입금액×지급율로 보장하며 3%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은경우)이상 보장가능	1~14급까지 분류되며 1~6급 중증장애 보장
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보장	8~20가지 주요질병 보장
입원	입원(4일미만 포함)치료시 일정한도 이내의 실제본인부담금 지급 (1회당 180일 한도) (입원실료, 식대, 각종 검사비 등 포함)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정액 지급 (1 ~ 10만원, 1회당 120일 한도)
수술	실제본인부담금 지급	주요질병, 1종, 2종, 3종 수술로 나뉘어 정액지급
치료방법	고가의 의료기술도 보장	주로 수술에 대해 보장
보장기간	단기 (15년 이내)	최고 80세까지
보험료의 구성	보장보험료(소멸) + 적립보험료	주계약(순수, 환급) + 특약보험료(소멸)
만기환급금	적립보험료를 약정된 비율로 부리하여 지급	주계약보험료

4. 생·손보 민간의료보험의 정액형 vs. 실손형

		생 명 보 험		손 해 보 험	
기 본 계 약	사망·후유 장애(상해·질병)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애	
	입원일당(정액)	일반질병		입원일당(정액)	상해 질병
특정질병			입원의료비(실손)		상해 질병
입원급여금(정액)		기타			통원의료비(실손)
	상해		간병비(정액)	소득보상(정액)	
선 택 계 약	질병			특정질병 수술비(정액)	질병사망(정액)
		상해			
	수술급여금(정액)	상해			
		질병			
	진단자금(정액)				
간병비(정액)					

5. 판매중이 민간의료보험 사례

보험사	상품명	보험기간 (가입연령)	계약내용(의료비보장내용 요약정리)
AIG 생명 (생명보험)	(무) AIG 꼭하나 의료보험	80세만기 (15-60세)	○주계약내용(예시: 10구좌 가입시)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초과 1일당 1,2만원) -10대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4일이상 입원시(3일초과 1일당 2,4만원) *10대주요질환: 뇌혈관질환, 특정심장질환, 신부전증, 간질환, 결핵,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갑상샘장애, 위/십이지장장애 -10대 주요질환 수술급여금(수술 1회당 100,200만원) -생활질환입원급여금(3일초과 1,2만원) *생활질환: 백내장, 중이염, 충수염, 관절관련 특정질환, 비뇨기계질환(남성), 부인과질환(여성) -생활질환수술급여금(수술1회당 25,50만원) -수술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의 종류 및 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수술1회당, 1종:30만원, 2종:70만원, 3종:100만원) -건강관리자금: 60,70,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각 100만원씩 지급 ○선택특약내용(13개 특약) -재해상해보장특약: 2,000만원×장해지급률 -재해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재해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2만원 -3대질환입원급여금: 3일초과 2,4만원 *3대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간경화 -중대한 수술보장특약(최초1회한) *중대한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2대질환진단치료급여금: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진단시 각각 최초1회한 -암진단특약(최초1회한) -암사망특약 -재해골절특약 -치매보장특약(최초1회한) -선진의료특약: 관상동맥성형수술(PTCA)(최초1회한), 특정인공 재료수술 *특정인공의재료수술: 인공수정체삽입술, 영구형인공심박조율기거치술, 인공관절치환술, 인공골두삽입술 -조혈모세포이식보장특약(최초1회한)

보험사	상품명	보험기간 (가입연령)	계약내용(의료비보장내용 요약정리)
동부생명 (생명보험)	HappyPlan오래오래건강보험	90세만기 (15-60세)	○주계약내용(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대질병진단자금(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각1회한 1,000만원 -4대주요질병수술급여금(수술1회당 300만원) * 4대주요질병: 뇌혈관질환,특정심장질환, 신부전증, 간질환 -7대성인질환수술급여금(수술1회당 100만원) * 7대성인질환: 결핵, 고혈압성질환,당뇨병, 폐렴, 만성호흡기질환, 갑상샘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4대생활질환수술급여금: 1회당 50만원 * 4대생활질환: 특정관절염,녹내장,백내장,치매 -4대주요질병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10만원 -7대성인질환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5만원 -4대생활질환입원급여금: 3일초과 1일당 3만 ○선택특약내용(12개 특약) -입원특약 -수술특약 -정기특약 -암다보장특약 -질병입원특약 -재해입원특약 -통원특약 -5대질병진단특약(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간질환,말기폐질환,말기신부전) -성별질환특약 -성별질환특약(남성: 비뇨기과, 여성:부인과질환) -재해골절특약 -뉴-자녀종합보장특약

보 험 사	상 품 명	보 험 기 간 (가 입 연 령)	계 약 내 용 (의 료 비 보 장 내 용 만 요 약 정 리)
메리츠 화재 (손해 보험)	(무)Ready 라이프케어 보험0604	80세만기 (15-60세)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가입금액한도, 최고 2억 -만기환급금: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험계약대출이율 2%로 부리 적립한금액 ○선택특약내용(24개 특약)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 분의 100%(단, 상급병실차액은 50%지급, 통원은 365일 한도) -일반상해사망 및 80%이상후유장애보장: 가입금액 최고 1억원 -질병사망보장: 가입금액 최고 2억원 -상해입원의료비보장: 3,000만원 한도 -질병입원의료비보장: 3,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보장: 5천원 공제, 일당 10만원 한도 -질병통원의료비보장: 5천원 공제, 일당 10만원 한도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가입금액한도, 최고 1천만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상해입원일당(61일이상) -질병입원일당(61일이상) -암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뇌졸중진단비 -말기폐질환진단비 -말기간경화진단비 -고액암진단비 -개호간병비 -암입원일당 -암사망 -중대상해수술비 -5대장기이식수술비 -골절 및 화상수술비, 골절 및 화상진단비

보험사	상품명	보험기간 (가입연령)	계약내용(의료비보장내용만 요약정리)
삼성 화재 (손 해보 험)	올라이 프 의료보 험	5/10/15년 만기 (15-60세)	○기본계약 -사망·고도후유장해: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가입금액의 80% 한도 -상해소득보상금: 5년간 매년 가입금액 ○선택특약내용(15개 특약)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의 100%(단, 상급병실차액은 2인실기준 50%지급, 통원은 365일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발생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제외 -상해입원의료비보장: 3,000만원 한도 -질병입원의료비보장: 3,000만원 한도 -상해통원의료비보장: 5천원 공제, 통원 일당 10만원한도 -질병통원의료비보장: 5천원 공제, 통원 일당 10만원한도 -뇌·내장손상 수술비: 최초1회한 가입금액 -중대화상·부식진단비: 최초1회한 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20만원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4일이상,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4일이상, 운전자용, 비운전자용, 가입금액 -암진단비:최초1회한, 가입금액 -뇌출혈진단비: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가입금액 -5대장기이식수술비: 가입금액 -암입원일당: 4일이상, 일당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4일이상, 일당 가입금액

보험사	상품명	보험기간 (가입연령)	계약내용(의료비보장내용만 요약정리)
우체국 (유사보험)	하이커 버건강보험	80세만기 (15-60세)	○주계약내용(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치료보험금: 중대질병으로 진단시 최초1회한(1년미만 300만원, 2년미만 7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중대질병: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중증간경화,중증신부전증,중증폐질환) -입원급부금: 중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입원1일당 6천,1만4천원,2만원) -수술급부금: 중대질병 치료목적으로 최초 수술시 1회한(60만원,140만원,200만원) -만기급부금: 보험기간 끝날때까지 살아있을 때(만기환급형) ○선택특약내용(1개 특약) 질병입원수술특약 -입원급부금: 질병 입원시(입원일수1일당 1만원, 120일한도) -수술급부금: 질병 수술시(수술1회당 1종 30만원,2종 50만원,3종 100만원)

6. 상품분석: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보장보험”을 사례를 중심으로

1) 상품 개요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보장하며,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 입원일당진료비를 정액으로 보장하는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이 혼합된 민간의료보험 상품

2) 상품 특징

- 상해사망·후유장애비, 뇌·내장손상 수술비 99세까지 보장
- 질병관련 특약<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질병 입·통원의료비, 질병가족생활지원금, 질병입원일당(1일/4일이상)>은 “질병사망담보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선택특약이면서 의무가입 특약

구 분	가입 가능한 특약
‘질병사망 담보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한 특약	암·뇌출혈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질병 가족생활지원금, 질병입원일당(1일·4일이상), 질병 입·통원의료비, 질병사망 추가 담보 특약
‘질병 입·통원의료비 담보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한 특약	상해 입·통원의료비 담보 특약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담보 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한 특약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1일·4일이상), 골절진단비(치아과절제외) 담보 특약, 상해 입·통원의료비

-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질병 입·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일당 등 질병관련 계약은 3년 만기로 80세까지 갱신, 78세이상 갱신시 1~2년 만기
- ※ 갱신시 연령의 증가, 적용요율(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등)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됨

○ 갱신계약의 거절 사례

구 분	사 유
상해입원일당(1일·4일이상) 담보 특약 질병입원일당(1일·4일이상) 담보 특약	최초 가입후 상해입원일당(1일·4일이상), 질병입원일당(1일·4일이상)보험금을 합산, 누적하여 1,00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상해 입·통원의료비 담보 특약 질병 입·통원의료비 담보 특약	최초 가입후 상해 입·통원의료비, 질병 입·통원의료비 보험금을 합산, 누적하여 1억원 이상 지급한 경우

○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특별 약관

-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 부위·질병에 발생한 질병만을 제외한 기타 질병을 보상

○ 감액지급 담보 및 면책 기간

담보명		최초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시 50%삭감 지급
질병사망		x	○
질병사망 추가		x	○
암진단비	일반암	90일	○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x	○
	뇌출혈진단비	x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x	○

주)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갑상샘암·피내암·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실손보상 급부의 비례보상

- 실손을 담보하는 「다수 보험계약」¹⁰⁾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사고시 각각의 보험계약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가입보험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함

(예시) A, B, C사에 동일한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 중복 가입한 경우로 계약보험가입금액은 각각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이고 입원의료비가 500만원 발생한 경우

구 분	가입 금액	발생 입원의료비	보상책임한도	지급보험금
A 사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B 사	300만원		300만원	150만원
C 사	1,000만원		500만원	250만원

10)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 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함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 담보 운영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담보 특약의 경우 보험기간은 80세 만기로 하며, 질병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하고,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③ 보장종류 및 종류별 보장내용

보장종류	보장내용	
실속형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뇌·내장손상수술비 1,000만원
	선택계약	■ 질병 입/통원 의료비(입원의료비 3,000만원, 통원의료비 10만원) ■ 상해 입/통원 의료비 (입원의료비 3,000만원, 통원의료비 10만원) ■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1,000만원, 질병사망 3,000만원 ■ 상해입원일당(1일당) 2만원, 질병입원일당(1일당) 1만원
표준형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뇌·내장손상수술비 1,000만원
	선택계약	■ 실속형의 선택계약 + 암진단비 1,000만원, 뇌출혈진단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000만원
고급형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뇌·내장손상수술비 1,000만원
	선택계약	■ 표준형의 선택계약 + 형사합의지원금 2,000만원, 벌금 2,000만원, 방어비용 5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200만원, 가족일상생활중 대인·대물배상책임 1억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 20만원)

④ 보험기간 및 가입연령

구 분		보험기간	가입연령
기본 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뇌·내장손상수술비	99세 만기	
선택 계약	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 담보 특약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약 질병사망 담보 특약 질병사망 추가 담보 특약	80세 만기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담보 특약	60세, 80세 만기 선택	만15~55세 * 60세 만기 선택시 가입 령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만15~40, 45, 55세
	암진단비 담보 특약 뇌출혈 진단비 담보 특약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담보 특약 상해 입원일당(1일, 4일 이상) 담보 특약 질병 입원일당(1일, 4일 이상) 담보 특약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담보 특약 상해 입·통원의료비 담보 특약 질병 입·통원의료비 담보 특약	3년 만기 (80세까지 자동갱신 ^{주)}) * 78세 이상 갱신 시 1~2년 만기	

주: 갱신대상 계약에 대하여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에 해당 피보험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통보함

⑤ 보장범위

○ 입원의료비 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보상

- | |
|--|
|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대
④ 병실료차액 : 실제사용병실(다만,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할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함)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전액(병실료 차액은 50%)을 1사고(질병)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 단,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1사고(질병)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사고(질병)로 인한 입원의료비 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하며, 입원 중 보험기간 만료 시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 다수의 보험계약¹¹⁾이 체결되어 있을 때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 회사별 책임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

○ 통원의료비 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제외)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의료비를 보상

- | |
|--|
| <p>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캐스트료, 지정진료비</p> <p>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p> <p>③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p> |
|--|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통원비용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회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단,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에는 통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최고 10만원을 한도로 보상
- 하나의 사고(질병)로 인한 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발병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 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
- 통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발병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 이전의 기간 동안 발생한 통산통원일수 30일을 한도로 보상
- 동일질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 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 통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
-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 회사별 책임액을 기준으로 비례보상

11) 다수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함

- 입원의료비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 계약자의 고의
 - 한약제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 제왕절개수술, 의치, 의족, 안경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제 증명료 등)
 -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등

○ 세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별첨 1 참조)

[6] 보험설계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설계
 - 가입기준

- 남자, 42세, 상해 1급, 월납, 20년납 99세만기
- 기본계약 : 상해 사망 · 후유장해 5,000만원, 뇌 · 내장손상수술비 1,000만원
- 선택계약 : 교통상해 사망 · 후유장해 담보특약 5,000만원, 질병사망 담보특약 3,000만원
- 갱신계약 : 암진단 담보특약 2,000만원, 뇌출혈 진단비 담보특약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담보특약 1,000만원, 상해 ·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담보특약 3만원, 상해 입 · 통원의료비 담보특약, 질병 입 · 통원의료비 담보특약

○ 보험료 산출(총 보험료 : 87,060원)

구분	보장명		보장금액			보험료(월납)
기본 계약	상해	사망	5,000만원			8,180원
		고도후유장해				
		일반후유장해	4,000만원 한도			
	뇌·내장손상 수술비(최초 1회한)		1,000만원			680원
	교통	사망·고도후유장해	5,000만원			5,150원
	상해	일반후유장해	4,000만원 한도			
	질병사망		3,000만원			42,600원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1,000만원			6,200원
	선택 계약	암 진단비 (최초 1회한) (3년만기 갱신)	암	구분	최초계약	갱신계약
가입후				500만원	1,000만원	
1년미만						
가입후				1,000만원		
1년이상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구분	최초계약	갱신계약	
			가입후	500만원	1,000만원	
			1년미만			
			가입후	1,000만원		
			1년이상			
뇌출혈 진단비 (최초 1회한) (3년만기 갱신)		구분	최초계약	갱신계약	560원	
		가입후	500만원	1,000만원		
		1년미만				
		가입후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최초 1회한) (3년만기 갱신)		구분	최초계약		갱신계약	400원
	가입후	1,000만원	2,000만원			
	1년미만					
	가입후	2,000만원				
상해입·통원 의료비(3년만기 갱신)	상해입원의료비	3,000만원 한도			3,910원	
	상해통원의료비	1일당 10만원 한도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5,000원)			520원	
질병입·통원 의료비(3년만기 갱신)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원 한도			9,830원	
	질병통원의료비	1일당 10만원 한도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5,000원)			2,710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3년만기 갱신)		3만원			2,850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3년만기 갱신)		1만원			1,230원	

○ 보험료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만원
		일반후유장해	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0만원 한도
	뇌·내장손상수술비		상해사고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약관에 정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수술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지급)	가입금액
선택계약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일반후유장해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의 80%한도
	상해가족생활지원금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년간 매월 가입금액의 10%
	질병사망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 후 1년 미만 50% 감액지급	3,000만원
	암진단비		보장개시일 이후 발병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보험가입 후 1년미만 50% 감액지급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가입금액 ※단,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가입금액의 10%
	뇌출혈 진단비		보험가입후 발병한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보험가입후 1년미만 50% 감액지급	1,000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험가입 후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지급) ※ 보험가입후 1년미만 50% 감액지급	1,000만원

- 12)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현재 가입시점의 적용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이며 향후 갱신시점의 적용요율 변동에 따라 4차년도 이후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선택계약	상해입원일당 (1일 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상해입원일당 (4일 이상)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4일 이상 1일당)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 이내 입원에 한하여 입원1일당 일당지급)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 (4일 이상)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을 한도로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일당지급)	(4일 이상 1일당) 가입금액
	상해입원의료비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사고일로부터 365일 이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 지급) ※ 상급병실이용료 : 병실차액의 50% 지급(단, 1인실 또는 특실 사용시 2인실 기준 적용)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발생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상 ※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제외	3,000만원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선택계약	상해통원 의료비	상해사고로 병·의원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사고일부터 365일 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에는 통원 1일당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상 ※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되며,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제외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5천원)
	질병입원 의료비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 지급) ※ 상급병실이용료 : 병실차액의 50% 지급(단, 1인실 또는 특실 사용시 2인실 기준 적용)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발생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상 ※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제외	3,000만원 한도
	질병통원 의료비	보험가입 후 발병한 질병으로 병·의원 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사고당 발병일부터 365일 이내 통산 통원일수 30일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실비 지급)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에는 통원 1일당 발생 통원의료비 총액에 대하여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10만원 한도로 보상 ※ 한방병원, 한의원은 제외되며,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시 제외	통원 1일당 10만원 한도 (통원 1일당 자기부담금 5천원)

타. 생활비 지출

구분		구매품 항목 예시
약국	일반 의약품 (양약)	○ 감기약/ 위장약/ 소독약/피부연고/영양제/ 수면제/ 안약/ 약용치약(예, 파라돈탁스)/ 모발약/ 피로회복제/ 피임약/ 멸미약 등
	한약 (첩약)	○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약사/한약사가 조제하여 만든 첩약 ※ 한의원/한방병원에서 구매한 것은 제외
	의약 외품	○ 마스크/ 안대/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콘택트렌즈세척액/ 식염수/ 금연보조제/ 소독제/ 아기용 분/ 주사기/ 콘돔/ 임신테스트 시약/ 생리대 및 기저귀류등 ※ 모든 의약외품은 포장에 '의약외품'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상점 마트 시장	안경	○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시력 보호용 선글라스 ※ 미용용 안경(선글라스 등), 수영안경(도수 없음)은 제외
	의료기기	○ 혈압계, 체온계, 혈당측정기, 휠체어, 주사기, 보청기, 침, 부항기, 온구기, 모유착유기 등 ※ 육체미 운동기구(헬스기구)와 옥돌 베개 등은 제외
	인삼, 홍삼 건재	○ 수삼, 인삼, 미삼(인삼잔뿌리), 홍삼 등 ※ 인삼차분말, 인삼넥타, 인삼 가공식품은 제외 ○ 녹용, 녹각, 당귀, 구기자, 감초 등
	건강 기능 식품	○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감셀·분말·과립·액상·환 등 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 인삼가공제품, 홍삼가공제품(사탕, 차, 엑기스 등), 영양보충용제품, 로얄젤리제품, 효모제품, 스쿠알렌제품, 효소제품, 버섯제품, 클로렐라제품, 키토산함유제품, 알로에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유산균함유제품, 배아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등

〈부록 6: 조사진행 관련 자료〉

부록 6-1: 진단코드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101 콜레라	1117 광견병
1102 장티푸스 및 파라장티푸스	1118 바이러스 뇌염
1103 장관 감염성 질환(감염성 설사 및 위장염)(식중독포함)	1119 황열
1104 결핵	1120 기타 절지동물 매개체 바이러스열 및 바이러스 출혈열 (유행성출혈열 등 포함)
1105 페스트	1121 수두 및 대상포진
1106 파상풍(신생아 파상풍, 기타 파상풍)	1122 홍역
1107 디프테리아	1123 풍진
1108 백일해	1124 급성 B형 간염
1109 수막구균 감염	1125 기타 바이러스 간염(급성 A형·C형 간염, 만성B형·C형간염 포함)
1110 패혈증	1126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1111 기타 세균성 질환(브루셀라증, 나병 등)(성홍열 포함)	1127 볼거리
1112 매독	1128 진균증(무좀 등 포함)
1113 임균감염(임질)	1129 말라리아
1114 기타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1130 결핵, 회백수염, 나병의 후유증
1115 발진티푸스(쯔쯔가무시병 포함)	1131 기생충성 질환
1116 급성 회백수염(소아마비)	1132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신생물	
120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1220 방광의 악성신생물
1202 식도의 악성신생물	1221 기타 요도의 악성신생물
1203 위의 악성신생물	1222 눈 및 눈 부속기의 악성신생물
1204 결장의 악성신생물	1223 뇌의 악성신생물
1205 직장S장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	1224 기타 중추신경계의 악성신생물
1206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1225 기타, 부위불명, 속발성, 상세불명, 다발성 부위의 악성
1207 췌장의 악성신생물	1226 호지킨병
1208 기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1227 비호지킨 림프종
1209 후두의 악성신생물	1228 백혈병
1210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1229 기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1211 기타 호흡기와 흉곽 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1230 자궁경관의 상피내암종
1212 뼈와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1231 피부의 양성신생물
1213 피부의 악성신생물 (피부의 악성흑색종)	1232 유방의 양성신생물
1214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1233 자궁의 평활근종
1215 유방의 악성신생물	1234 난소의 양성신생물
1216 자궁 또는 자궁부위의 악성신생물	1235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1217 기타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1236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의 양성신생물
1218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1237 기타 상피내, 양성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미상의 신생물
1219 기타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혈액, 조혈기관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1301 빈혈	1303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1302 출혈성 병태와 혈액의 조혈기관의 기타 질환 (응고결함, 자색반증 및 기타 출혈성 병태, 혈소판감소증, 혈우병과 비장질환, 호산구증다증 포함)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401 갑상선 장애	1405 영양실조 및 기타 영양결핍증의 후유증
1402 당뇨병	1406 비만
1403 영양실조	1407 용적체액 상실
1404 비타민 결핍증(구루병 포함)	1408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등)(포도당 조절 및 췌장(이자)성 내분비의 기타 장애, 국한성 지방축적, 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등 포함)
정신 및 행동 장애	
1501 치매(노망,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1505 기분(정동성)장애(우울증 등 포함)
1502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1506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화병, 불안증, 강박증, 위장성/심장성 신경증, 설사 및 소화불량의 심인성 형태, 불안상태, 신경쇠약증 등 포함)
1503 기타 정신활성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	1507 정신발육 지체(정신박약 등 포함)
1504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정신병)	1508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기억력 감퇴 등의 경도인식 장애, 거식증/대식증 등의 섭식장애, 불면증 등 포함)
신경계통의 질환	
1601 수막염 등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수막염, 뇌염 등 포함)	1606 편두통 및 기타 두통 증후군
1602 파킨슨병	1607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1603 알츠하이머병	1608 신경, 신경근(뿌리) 및 신경총 장애(얼굴마비, 삼차신경통, 팔목터널 증후군 포함)
1604 다발성 경화증(뇌와 척수를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	1609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편마비, 대마비 및 사지마비 포함)
1605 간질	1610 기타 신경계의 질환(불면증, 다발성 말초신경염, 운동장애, 혈관성 척수병증, 얼굴신경 장애, 뇌수종 등 포함)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1701 안검(눈꺼풀)의 염증(다래끼, 맥립종 및 산립종 포함)	1706 녹내장
1702 결막염 및 기타 결막의 장애	1707 사시
1703 각막염 및 각막과 공막의 기타 장애	1708 굴절 및 조절 장애(원시, 근시, 난시 등 포함)
1704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1709 실명 및 저시력
1705 망막박리와 망막의 결함	1710 기타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약시, 색약, 눈통증, 안구건조, 눈물관 협착, 눈떨림, 망막장애,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시각장애, 눈물흘림 등 포함)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1801 중이염과 중이(가운데 귀) 및 유양돌기 장애	1803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이명, 바깥귀의 질환, 외이도염, 평형기능(전정기능)의 장애 포함)
1802 청력상실(난청)	

순환기계통의 질환

1901 급성 류마티스열	1910 뇌내출혈(뇌졸중, 중풍, 거미막밑(지주막하)출혈 포함)
19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1911 뇌경색증
1903 고혈압	1912 기타 뇌혈관질환(출혈/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졸중)
1904 급성 심근경색증	1913 동맥경화증(죽상 경화증)
1905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장병 포함)	1914 기타 동맥, 모세혈관의 질환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1906 폐색전증	1915 정맥염, 혈전정맥염, 정맥색전증 및 혈전증
1907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부정맥, 빠른 맥 등 포함)	1916 하지의 정맥류(다리의 정맥류)
1908 심부전(심장기능상실)	1917 치핵(치질)
1909 기타 심장질환	1918 기타 순환기계 질환(손, 발, 사지저림, 저혈압, 비특정 림프절 등 포함)

호흡기계통의 질환	
2001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2009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
2002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2010 기타 상기도의 질환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지염, 성대 및 후두의 용종 포함)
2003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포함)	2011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2004 인플루엔자	2012 천식
2005 폐렴	2013 기관지확장증
2006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2014 진폐증 (석면증,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2007 축농증(만성 부비동염)	2015 기타 호흡기계 질환(주로 사이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가슴막의 기타 질환, 흉막염, 기흉, 폐부종, 무기폐, 농양 등 포함)
2008 기타 코 및 코얼굴(비동)의 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비용종 포함)	

소화기계통의 질환	
2100 유치(젖니) 발치	2109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및 궤양성 대장염(큰창자염)
2101 치아우식증(충치)	2110 탈장(헤르니아)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관폐쇄
2102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풍치, 잇몸질환, 치주질환, 치아의 마모증,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 등 포함)	2111 장의 게실성 질환 (창자의 결주머니)
2103 기타 구강, 타액선 및 턱의 질환 (혀, 입술, 침샘의 질환, 구내염 등 포함)	2112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변비, 설사,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장염), 기타 기능적 장 장애, 항문 및 직장의 질환(항문 폴립, 직장폴립), 복막염 포함)
2104 위 및 십이지장궤양	2113 알콜성 간질환(알콜성 지방간 포함)
2105 위염 및 십이지장염	2114 기타 간질환(독성 간질환, 염증성 간질환, 간경화, 간의 고름집(농양), 지방간 포함)
2106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식도염, 식도역류, 소화불량, 위하수(위저짐), 위 및 십이지장의 폴립 등 포함)	2115 담석 등 및 담낭(쓸개)
2107 충수의 질환(맹장염)	2116 급성 췌장염(이자염) 및 기타 췌장(이자)의 질환
2108 탈장(서혜 헤르니아, 기타 헤르니아)	2117 기타 소화기계통의 질환 (쓸개(담낭, 담도의 기타 질환, 창자 흡수장애 포함)
피부 및 피부 밀조직의 질환	
2201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피부 및 피부밀조직의 감염) (연조직염(봉와직염), 피부성 고름집, 종기(얼굴제외), 급성림프절염 포함)	2203 (여드름, 기미, 버짐, 지루성 피부병, 가려움, 소양증, 습진, 탈모증, 욕창,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유건선, 피부 건조증, 후천성 손, 발바닥 각화증, 일광화상, 손발톱 장애(내향성 손발톱), 티눈 및 굳은 살, 피부의 위축성 장애 등 포함)
2202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기타 피부 및 피부밀조직의 감염)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	
2301 류마티스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청소년성 관절염, 통풍 포함)	2307 기타 배병증 (배통, 허리통증, 옆구리 통증, 좌골 신경통, 척추협착, 척추분리증, 척추 옆굽음증(척추측만증) 포함)
2302 관절증(관절염)	2308 연부조직(근육, 인대, 지방, 섬유조직, 신경혈관)장애 (신경통, 근육통, 척추증, 건초염, 근막, 활막염, 어깨 병소, 오십견, 사십견 등 포함)
2303 사지의 후천성 변형 (손가락,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2309 뼈밀도 및 구조장애
2304 관절의 기타 장애 (감염성 관절변증, 무릎뼈의 장애, 무릎의 내 이상, 인대이관 등 포함)	2310 골수염
2305 전신성 결합조직의 장애 (베체트병, 가와사키병, 전신 홍반성 루푸스 등 포함)	2311 기타 근육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기타 장애(연골병증, 뼈 발달 및 성장의 기타 장애 포함)
2306 요추 및 추간판장애(디스크 포함)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2401 급성 신염증후군	2412 난관염 및 난소염
2402 기타 사구체 질환(혈뇨, 기타 신염증후군)	2413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2403 신세뇨관-사이질성 질환(신우신염)	2414 기타 여성 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자궁염, 질염 등 포함)
2404 신부전증	2415 자궁내막증
2405 요로결석증(신장, 요관, 요로 결석)	2416 여성생식기 탈출
2406 방광염	2417 난소, 난관 및 광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2407 기타 비뇨기계통의 질환(요도염, 후천성 남성 신장, 요도협착, 요실금 등 포함)	2418 월경장애
2408 전립선의 비대	2419 폐경기 및 기타 폐경기 전후 장애
2409 전립선의 기타 장애	2420 여성불임증
2410 남성생식기관의 질환(음낭수류 및 정액류, 과장포피, 포경 및 감돈 포경, 고환염, 부고환염, 남성 불임증 등 포함)	2421 기타 비뇨생식기로의 장애(자궁의 위치 이상, 생리통 등 포함)
2411 유방의 장애	
임신, 출산 및 산후기	
2501 자연유산	2507 난산
2502 의학적 유산	2508 분만 후 출혈
2503 기타 유산된 임신(자궁외 임신, 시도된 유산의 실패 등 포함)	2509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임신 중 과다 구토, 조기 분만, 지연 산통, 제왕절개 등의 보조단일 분만 포함)
2504 임신, 출산 및 산욕의부증, 단백뇨, 고혈압성 장애	2510 단일 자연분만
2505 전치태반, 태반 조기박리 및 분만 전 출혈	25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욕기관 관련 합병증, 기타 산과적 병태(출산과 관련된 유방염, 산후기 감염, 산과적 사망 포함)
2506 기타 태아와 양막강,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 산모관리(다태 임신, 산모관리 관련 질환 등 포함)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2601 모성요인, 임신, 출산, 분만의 합병증에 의한 태아 및 신생아	2606 선천성 감염 및 기생충성 질환(선천 바이러스 질환, 신생아의 세균성 패혈증)
2602 태아 발육지연, 태아 영양실조, 단기임신, 저체중 출산관련장애	2607 주산기에 특이한 기타 감염
2603 출산 외상	2608 태아 및 신생아의 용혈성 질환
2604 자궁내 저산소증 및 출산 질식	2609 기타 주산기에 기원한 병태(장기 임신 및 고체중 출산과 관련한 장애,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심장 질환 장애, 신생아 출혈, 신생아 황달, 태아 및 신생아 대사장애, 소화기계통 장애,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신생아 경련, 사산 등 포함)
2605 주산기에 기원한 기타 호흡기 장애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2701 이분척추증	2706 비뇨생식기계의 선천성 기형(정류고환, 요도하열, 만성 콩팥병 등 포함)
2702 기타 신경계의 선천성 기형(소두증 포함)	2707 근골격계의 선천성 기형 및 변형(고관절의 선천성 변형, 엉덩관절의 선천 변형, 발의 선천성 변형등 포함)
2703 순환기계의 선천성 기형	2708 기타 선천성 기형(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 기형, 호흡기계통의 선천 기형 등 포함)
2704 토순 및 구개열(입술갈림증 및 입천장갈림증)	27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다운 증후군 등)
2705 소화기계의 선천성 기형(작은창자의 결여, 폐쇄 및 협착, 혀, 입, 침샘, 또는 관 및 인두, 식도, 상부 소화관, 창자, 쓸개, 간의 기타 선천 기형 등 포함)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3001	복부 및 골반 동통	3018	빈뇨(다뇨증, 야뇨증)
3002	원인미상 열	3019	오줌소태
3003	노쇠	3020	배뇨곤란증
3004	기침	3021	피부/피부 밑 조직의 국한적 큰 종 기, 덩이, 혹
3005	호흡이상	3022	흔미 및 혼수
3006	재채기	3023	현기 및 어지러움
3007	코골기	3024	건망증
3008	코피	3025	다한증
3009	코막힘	3026	후각 및 미각의 장애
3010	무호흡	3027	정서상태에 관한 증상 및 징후
3011	구역 및 구토	3028	음성장애
3012	속쓰림	3029	권태감 및 피로감
3013	피부감각장애	3030	국한부종
3014	수전증	3031	전신부종
3015	두근거림	3032	실신
3016	상세불명의 황달	3033	만성피로
3017	무릎시림	3039	기타 증상

손상, 중독 및 외인	
400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4011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4002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4012 자연개구를 통해 들어온 이물의 효과
4003 대퇴골의 골절	4013 화상 및 부식
4004 기타 사지뼈의 골절	4014 약물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4005 다발성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골절	4015 주로 비의약품 물질의 중독작용 (알코올의 중독작용, 고엽제, 하우스병 포함)
4006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뼈거나 인대 늘어남 등 포함)	4016 학대 증후군
4007 눈 및 안와의 손상	4017 기타 및 상세불명 외인의 영향 (벌미, 동상, 일사병, 열사병 등 포함)
4008 두개내 손상	40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상의 특정 조기 합병증과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4009 기타 내부장기의 손상	4019 손상, 중독 및 외인의 기타 결과의 후유증(화상 후 후유증 등 포함)
4010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압궤손상, 외상성 절단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5001 검사, 조사를 위해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5008 특수처치, 건강보호로 보건서비스와 접하는 사람 (예방적 수술 등 포함)
5002 무증상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 상태	5009 기타 이유로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인공수정, 시험관 수정, 고관절 교체 등 포함)
5003 기타 전염성 질환 관련 건강위험 가능성 있는 사람	5010 예방접종
5004 피임관리	5011 건강검진
5005 출산전 선별검사 및 기타 임신의 관리	5012 진단서발급
5006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아	5013 보약 등
5007 분만후 간호 및 검사	

부록 6-2: 2008년 상반기 조사의 조사원 및 조사지도원 최종 명단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 명단	조사지역
김인숙*, 김길자, 황원경, 송미숙, (김희선)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북, 전남, 전북, 강원, 충북, 대구, 울산, 광주
김계영*, 우명숙, 송현규, 심용숙, (유소영)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대구
이인화*, 최순덕, 김혜숙, 이미선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제주, 대구, 대전
김정숙*, 고해숙, 김숙경, 김한옥, (김정옥)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충북, 강원, 대전, 대구, 울산
남길녀*, 유미의, 이정화, 채명숙, (정은선*)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경남, 충남, 전남, 전북, 대구, 광주
김인자*, 김은자, 김분이, 김희선	서울, 경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광주
송춘금*, 백채우, 신유주, 조영순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대전
도인숙*, 노은영, 김정순, 정종숙	서울,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전북, 울산
전명숙, 김춘성	부산, 경남
홍은희, 이은주	서울, 경기, 인천

부록 6-3: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요도

[illegible]

[illegible]

부록 6-5: 한국의료패널 명부

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 명부(조사구별 작성)

행정코드 (7자리)						행정구역 (주소지명)	시도	구시군	동읍면	조사구 번호					지난 조사일	년 월 일	
행정동 코드						대상가구수	이탈가구수	완료가구수	조사 완료일	년 월 일	작성자						
구분 번호	가구 ID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거처별)	지난 방문시 주소 (동·리·반·번지, 아파트 동·호)	조사완료여부 완료=1 미완=0	미완 사유	조사표 일련 번호	만성 질환	3개월 의약품	응급 입원	외래 출산	가구주 성명	응답자 성명	가구원 수	상품권 지급 (__장)	패널 유지/ 이탈	현재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만 기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패널 유지 총계					가구		상품권 총계	정		

① 장기출타 ② 늦은귀가 ③부재중(원인미파악) ④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이사(주소추적불가) ⑦사망으로 가구소실

2008년 1차 한국의료패널 명부(조사원용)

[illegible]

① 장기출타 ② 늦은귀가 ③부재중(원인미파악) ④일부문항 미완 ⑤ 조사거부 ⑥이사(주소추적불가) ⑦사망으로 가구소실

부록 6-6: 한국의료패널 안내문

한국의료패널 안내문

안녕하세요.

<2008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일부터 월 일 사이 지난 조사시 방문하셨던 담당자 분께서 건강가계부와 관련하여 귀댁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됨을 알려드리며, 가내 평안과 하시는 일의 만사형통을 기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80-380-8210, 02-380-8247
(보건의료패널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부록 6-6: 한국의료패널 명절 답례품 및 감사의 글

감사의 글

2008년에도 가내 두루 평안하십니까?

건강가계부를 부탁드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사드립니다.
'한국의료패널 1차 조사' 참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택 가정에 기쁨
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보건의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
드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꾸준한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
4월부터 '한국의료패널 2차 조사'로 다시 찾아뵙고 있사오니, 문의하
실 사항이 있으시면 ☎ 080-380-8210으로 전화주십시오.

감사의 표시로 작은 정성을 담아 보내드리오니 부디 받아주시고,
동봉하는 가계부 다이어리는 조사원선생님께서 방문하실 때까지 보
관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의료패널조사'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8. 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패널팀 올림



부록 6-7: 한국의료패널 소식지

한국의료패널소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 9월 첫번째 소식

전국을 밟으며 1탄: 김인숙 조사지도원의 편지

우리 모두의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지루한 장마와 폭염도 자연의 순리대로 다가오는 또 하나의 계절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제는 제법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함께하는 이 계절에 "한국의료패널" 조사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소식을 발간하게 된 것을 보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생소한 조사라는 것에서 오는 부담감도 컸지만 무엇보다 패널가구로 선정된 가구에서 모든 가구원이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정리해야 하고 더욱이 건강가계부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할 때 이 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의료패널 조사가 성공적으로 첫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많은 패널가구에서 보내준 값진 수고와 적극적인 협조가 만들어낸 밑거름이 있었

기 때문입니다.

회귀난치성 질환으로 매달 지방과 서울을 왕래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 서툰 한글로 빠짐없이 가계부에 기재하여 주신 팔순의 어르신 내외 분, 이사를 하는 번거로운 중에도 영수증과 건강가계부를 잊지 않고 챙겨두셨다가 연락해 주신 분, 의료기관까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교통편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재방문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시간을 내어 영수증 발급에 도움을 주신 의료기관의 관계자분들을 비롯한 패널가구의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의료패널" 조사가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조사원들이 여러분 땀을 방문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큰 힘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귀댁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김인숙 조사지도원 드림

소식지 목차

전국을 밟으며_1	1p
조사대장정 안내	1p
한국의료패널조사 소개	2p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p
건강한 지식	3p
이달의 좋은 글	3p
연구원 이야기	4p



*김인숙 조사지도원

조사지도원은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조사원선생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조사 전반을 지도하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돕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상의 오류들을 확인하여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조사 대장정 : 강원에서 제주까지

어느새 황금빛 들녘을 이루는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인사를 전합니다.

9월에서 10월에는 북쪽 강원에서부터 전국을 거쳐 제주도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예정일이 적힌 안내엽서도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곧 만나 뵙길 기대하며 미리 인사 드립니다.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를 맞으시길 바라며 가족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한국의료패널 조사 이모저모

한국의료패널은 의료비와 의료이용에 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조체계를 이루어 진행하고 있는 연구조사사업입니다. 객관적인 자료생산을 위해 통계청의 승인하

에 9,000여 가구를 방문하였으며, 제주도를 포함함으로써 전국적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가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 규모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이

외에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상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각 가정의 의료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장 조사원 방문시에 응답해주시고 기재해주신 의료이용 및 관련 사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료의 근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재해주신 건강가계부와 응답자료들이 연구원에 쌓여갈 때마다 연구진 또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구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소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이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질환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

청하신 분에게는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3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은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상담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남
(예: 거의 누워지낸, 혼자 식사 불가)

2등급: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남

3등급: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예: 보행기 이용 시 이동 가능한 경우)

서비스 이용 절차

신청 ▶ ▶ ▶ ▶ ▶ ▶ ▶ ▶ 방문조사 ▶ ▶ ▶ ▶ ▶ ▶ ▶ ▶ 등급판정 ▶ ▶ ▶ ▶ ▶ ▶ ▶ ▶ 결과통지 ▶ ▶ ▶ ▶ ▶ ▶ ▶ ▶ 서비스 이용
공단지사, 읍·면사무소, 주민자치 센터 등에 신청서 제출 직원이 건강상태, 희망급여 조사 장기요양등급 결정(1~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발부 (서비스, 본인 부담률 등 안내) 재가, 시설, 특별현금서비스 등 선택 이용

건강한 지식 — 한국의료패널소식

첫 번째, 처방전은 “두 장”입니다

– 처방약 바로 알기

“처방전을 한 장 더 발부받는 값으로 50원을 이미 내고 있다”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병원에서 처방전을 두 장 발부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자가 내는 돈에는 처방전을 한 장 더 발부하는 값으로 50원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청구됩니다. 처방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료를 받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감기에 감기약을 지어 준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소화제를 지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스온라인(kimsonline.co.kr)을 비롯한 인터넷사이트에서 처방의약품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금기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낯선 의학용어가 많아서 봐도 모른다며 덮어두는 것 보다는 5분만 시간을 내서 자신이 먹는 약, 가족이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확인해 보는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한번, 처방전을 꺼내서 약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건강을 알뜰하게 지키는 방법

– 영수증 보관!

“영수증을 통한 의료비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의료기관이용 영수증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 방문시에 내는 의료비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료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진료비 하위청구 등 불합리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모으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가 과다 청구된 것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및 심사를 요청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심사신청서만 있으면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영수증은 5년 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발부요청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및 관련 진료기록의 발부는 모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알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수증 및 관련 기록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것 또한 건강관리의 중요한 과점임을 기억하십시오. (<http://www.hira.or.kr>, 전화 1644-2000)

패널가구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패널로 참여하게 되면서 겪었던 사연이나 소식들, 혹은 기분좋은 추억이나 불편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보내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연구진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즐거이 받겠습니다.

E-mail: khp@kihasa.re.kr

우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패널팀

패널가구를 위한 좋은 글 소개

대한민국 병원사용설명서_저자:강주성



평범한 가장이었던 저자가 백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게 되면서 익힌 병원 및 의료이용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차게 담아 둔 책입니다. 전문적인 기계를 사용할 때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병원에 가기 전 우리가 어떻게 병원을 바라보고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누구나 한번쯤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만 의료비가 어떻게 부과되고 진료가 이행되는지,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무척 드뭅니다. 단순히 의료패널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기에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연구진도 영수증과 처방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원 이야기_한국의료패널소식

* 한국의료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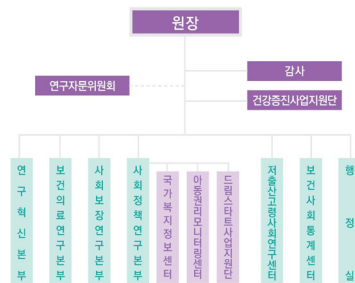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폐널팀

보건의료패널팀 문의전화
☎ 080-380-8210
☎ 02-380-3828(팩스)

전자메일
: khp@kihasa.re.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의료비분석팀
☎ 02-3270-9849, 98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으로, 사회보험,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으로,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패널팀은 보건의료연구본부 소속으로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 본인부담액에 관한 통계 생산을 주요 목적으로 한 한국의료패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연구진 및 조사원 소개

*현장조사원

현장에서 한국의료폐널조사를 위해 애쓰시는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 분들을 소개합니다.

- 현장조사원은 지도원과 팀을 이루어 활동합니다.

*연구진

조사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을 소개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이 자문으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조사지원원	조사원
김민숙	김길자, 황원경, 송미숙
김계영	우명숙, 송헌구, 심용숙
이인화	최순덕, 김혜숙, 이미선
김정숙	고해숙, 김숙경, 김한옥
남길녀	유미의, 이정화, 채영숙
송춘금	백채우, 신유주, 조영순
도인숙	노은영, 송석란, 정종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패널팀	
팀장	정영호
팀원	고숙자, 이은실, 이진혜, 강나현, 정재숙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국민의료비 통계센터	
팀장	이용갑
팀원	서남규, 김영숙, 태윤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www.kihasa.re.kr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ww.nhic.or.kr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미정
연구 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미정
연구 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연구 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미정
연구 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미정
연구 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미정
연구 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미정
연구 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미정
연구 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미정
연구 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신현웅	미정
연구 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미정
연구 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미정
연구 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미정
연구 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미정
연구 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식	7,000
연구 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미정
연구 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미정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08-23-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미정
연구 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미정
연구 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미정
연구 08-24-1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미정
연구 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미정
연구 08-24-5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미정
연구 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대민	8,000
연구 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미정
연구 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미정
연구 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미정
연구 07-01	한미 FTA 협상과 의약품 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박실비아	8,000
연구 07-02	보건의료 인력자원의 지역별 분포의 적정성과 정책과제	오영호	9,000
연구 07-03	근거기반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활성화 전략	최은진	7,000
연구 07-04	고령사회에 대비한 국가영양관리 발전전략 모색	김혜련	10,000
연구 07-05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허순임	8,000
연구 07-07	국민연금운용시스템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원종욱	7,000
연구 07-08	근로빈곤층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실태와 정책을 중심으로	노대명	6,000
연구 07-09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여유진	7,000
연구 07-10	사회재정지출 성과관리 및 효과분석 방안	최성은	8,000
연구 07-1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II)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김승권	12,000
연구 07-12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	강혜규	10,000
연구 07-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7,000
연구 07-14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 복지지표 개발연구	변용찬	7,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07-15	유비쿼터스 기반의 e-Welfare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정영철	7,000
연구 07-16	한국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장영식	6,000
연구 07-17-1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 - 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이태진	13,000
연구 07-17-2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효과분석	신영석	6,000
연구 07-17-3	2007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07-17-4	기초생활보장제도 효과성에 관한 연구	노대명	5,000
연구 07-17-5	미국 Medicaid의 각주별 모니터링 체계 비교 연구	신영석	7,000
연구 07-17-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07-17-7	저소득층 의료육구 측정에 관한 연구	신현웅	6,000
연구 07-17-8	사회정책의 진단과 동향	이태진	16,000
연구 07-18-1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the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UK, US and Korea	강혜규	5,000
연구 07-18-2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정책 연구	홍석표	5,000
연구 07-19-1	국제결혼가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안	이삼식	6,000
연구 07-19-2	양육 지원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신윤정	7,000
연구 07-19-3	200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정경희	7,000
연구 07-19-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전략 개발 연구	선우덕	9,000
연구 07-19-6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조남훈	9,000
연구 07-19-7	사회교육기관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교육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 공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오영희	6,000
연구 07-19-8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 07-19-9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강유구	7,000
연구 07-20	2006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김미곤	7,000
연구 07-21	2007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2,000
연구 07-22-2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 구축에 관한 연구(일차년도)-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07-22-3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한 건강투자자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07-22-4	사회예산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8,000
연구 07-22-6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 방안	최성은	6,000
연구 07-23	2007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9,000
연구 07-24	의료이용 및 의료비패널 구축을 위한 1차 예비조사	정영호	9,000